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2021년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업무편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21년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업무편람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발행부서 건축주택국 총괄건축기획과

발행일자 2020년 12월 일

기 획 건 축 주 택 국 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도 시 건 축 팀 장 강현영

(박문교, 김효신, 이환)

자 문 임성훈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2020,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 본 업무편람은 발주기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자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서울시 건축 설계공모 표준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부산시 여건에 맞게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01. 공공건축 설계공모 개요

-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작성 방향 8
- 2.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구성 12
- 3.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추진절차 14
- 4.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 요약 22

02.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 1. 용어의 정의 40
- 2. 적용 범위 42
- 3. 운영 및 관련조직 43
 - 3.1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주체 43
- 4.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결정 절차 52
- 5. 설계공모 일반사항 65
 - 5.1 공모의 명칭 65
 - 5.2 공식 언어 66
 - 5.3 공모 일정 66
 - 5.4 참가자격 70
 - 5.5 사전준비 71
 - 5.6 설계지침서의 작성 및 제공 정보 74
 - 5.7 공모의 공고 및 등록 79
 - 5.8 현장설명회 84
 - 5.9 질의응답 86
 - 5.10 공모안의 접수 87
 - 5.11 공모안의 심사 91
 - 5.12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97

03.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별 세부 운영절차

1. 2단계 설계공모 운영절차	102
2. 제안 설계공모 운영절차	106
3. 제한 설계공모 운영절차	112
4. 지명 설계공모 운영절차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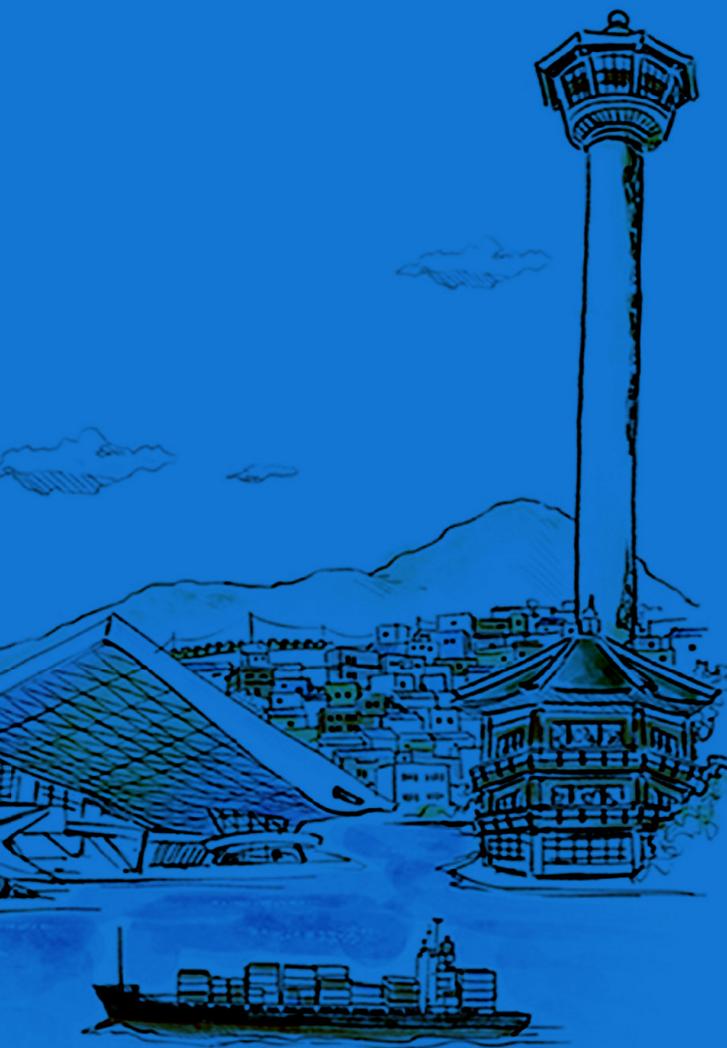
04. 부록

부록 1 건축 설계공모 체크리스트	130
부록 2 관련 서식 목록표	131
[서식 1] 참가등록신청서	132
[서식 1-1] 서약서	133
[서식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34
[서식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135
[서식 1-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36
[서식 1-5] 공동응모 협정서	137
[서식 1-6] 대표건축사 선임계	139
[서식 1-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40
[서식 1-8] 사용인감계 신고서	141
[서식 1-9] 보안각서	142
[서식 1-10] 청렴서약서	143
[서식 2] 질의서	144
[서식 3]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145
[서식 3-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146
[서식 3-2] 건축개요	147
[서식 3-3] 층별 면적표	148
[서식 3-4] 공간별 면적표	149
[서식 3-5] 주요 법규 검토서	150
[서식 3-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151
[서식 3-7]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152
[서식 3-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53
[서식 4] 기술검토서	154
[서식 5]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56

[서식 5-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57
[서식 5-3] 심사위원회 의결서2	158
[서식 5-3] 작품 심사의견서(1차심사용)	159
[서식 5-4] 심사위원 투표(1차심사용)	160
[서식 5-5]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심사용)	161
[서식 5-6] 2차 심사대상 선정(1차심사용)	162
[서식 5-7]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163
[서식 5-8]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164
[서식 5-9]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165
[서식 5-10] 최종 심사 결과표	166
[서식 5-11] 최종 심사평가서	167
[서식 5-12]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168
[서식 6]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169
[서식 6-1]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170
[서식 6-2] 심사(운영)위원회 의결서	171
[서식 6-3] 작품 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천결과서	172
[서식 6-4] 참가의향서 접수증	173
[서식 6-5] 참가확약서	174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75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93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196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기준	230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견본)	255

시
축
모
무
람
역
건
공
업
광
공
계
준
산
공
설
표
편
부
공
실
표
편





01

공공건축 설계공모 개요

1.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작성 방향
2.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구성
3.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추진절차
4.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 요약

01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작성 방향

1) 제도적 환경변화의 대응

- 「건축기본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음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기본법 제24조는 우수한 설계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함.
-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2018년 12월 18일 법령 개정 및 2019년 12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용도와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발주 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시 제2019-196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를 시행함. 기타 관련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이 있으며, 부산시는 2020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 범위 명확화, 심사과정 내실화, 소규모 공모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 제한·지명 공모 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역금액 3.1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국제 입찰 대상으로 분류됨.
- 위와 같은 국가차원에서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 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부산시의 설계공모 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음.

2)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의 제정

①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그 동안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였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른 부산시에 맞는 조례 및 운영기준 마련 필요

② 부산시 도시의 품격향상과 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운영 기준 제시

- 건축 설계공모의 적용 및 운영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운영기준이 요구됨.
-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 업무편람은 행정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고, 시간별 흐름에 따른 업무 단계별 명료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부산형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 업무 기준 요구

- 설계공모 활성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편람 필요
- 부산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다양한 업무 수행기관에서 설계공모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방안 요구
- 점차 고도화, 다양화 되어 가는 공모방식에 부합하는 세밀한 운영기준 필요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정에 따른 부산형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준 업무편람 필요

4) 주요 사항

① 업무절차 및 담당 주체의 명료화

- 공공건축 설계공모 사업 흐름도를 작성하여 사업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

- 공공건축 설계공모 세부 추진절차를 작성하여 단계별 업무의 내용, 담당부서 및 규정 및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공모 운영 조직도를 작성하여 각 담당 주체들의 관계 및 역할 시각화
- ② 설계공모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종류 및 담당업무 체계화
- 설계공모 운영의 주체는 부산시(총괄건축기획과) 또는 구·군 등으로 분류
 -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명료화
 -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설계공모 운영 및 사전기술 검토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책임감 부여
- ③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결정 절차 체계화 및 세부사례 제공
- 공모방식 결정기준을 세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공모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각 공모 방식별 운영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설계공모 운영 시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공모방식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인 공모의 일정 및 공모운영 비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제시
- ④ 심사 및 평가방식의 개선
- 부산시의 평가방식으로 채점제는 배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 간 토론을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제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의결(투표)을 통해 결정하며, 심사의 진행 과정에서 심사위원 간의 집중토론이 가능함을 명문화
 -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응모작품이 5작품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제외함.
 - 2차 심사는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설계자에 의한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형식적 익명성을 지양하고 원활한 질의응답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모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⑤ 부산시의 행정 조직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침서 작성 및 설계공모 운영 방안을 결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설계공모 운영
- 운영위원회에 건축사가 참여하여 해당 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 추후 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지침서 작성 및 기술검토 진행

⑥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반 확보

- 심사과정의 모든 결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하되,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통해 각 심사위원의 의견과 관점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 추천을 바탕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결정하여 심사위원 결정의 권한을 분리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⑦ 공공건축 건립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과정 도입

-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며, 운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운영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여러 민간참여 위원회를 통해 설계공모 운영의 전반을 재확인함으로써 균형있는 운영기반 확보
-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립의 준비단계인 설계공모에서 검토과정을 확대하여 건립까지의 소요되는 총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줄여감으로써 효율성 증대 기대

⑧ 개방적인 설계공모 운영을 통한 시민사회 협력

- 부산시의 건축관련 단체와의 공청회를 통한 설계공모 운영 피드백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설계공모 과정의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화 및 시민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분쟁 감소

⑨ 표준 서식 마련

- 각 단계별 필요 서식을 제시하여 공모운영의 표준화 방안 제시

02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의 구성

1) 편람의 구성과 특징

- 본 편람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공모 운영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음.
-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사례와 서울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 사례 및 외국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설계공모 업무수행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내용 구성

- PART 01 / 공공건축 설계공모 편람의 개요, 설계공모 업무 전반의 흐름, 요약
 - 설계공모 편람 방향과 설계공모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과 세부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편람 전체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수록하여 관련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PART 02 / 운영조직,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결정절차, 설계공모 일반사항(공통)
 - 설계공모 운영 시 필요한 조직에 대한 역할, 활동, 구성절차 등을 정리하였음.
 -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담당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기준과 절차를 수록하였음.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일반사항 및 운영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음
- PART 03 /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별 세부 운영절차
 - 설계공모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2단계/제안/제한/지명공모에 대하여 일반사항/일정/제출물/평가방법/공모의 보상 등 상세 운영방법을 다루고 있음.

• 부록

- 설계공모 운영 시 누락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음.
- 설계공모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들을 작성하여 운영절차에 따라 정리하였음.
- 편람 작성의 근거가 되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편람 내 표기 특성

• 관련 법규 표기

- 편람 내용과 관련된 근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형태로 표기함.

(사례) • 발주기관 등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8호)

• 세부설명 표기

- 세부설명은 글상자 안에 넣어 정리함.

(사례) • 사전기술 검토시 다음 사안을 토대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참고사항 표기

- 참고사항은 글상자 안에 넣어 정리하였으며 체크 표시를 추가 표기함.

√ 모형 또는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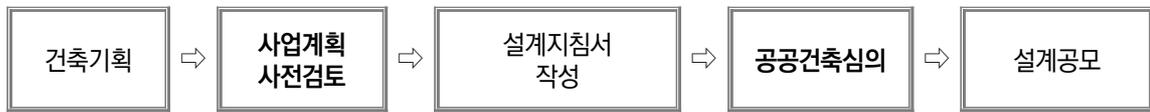
- 모형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조감도, 투시도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 표현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에 따라 규격 및 스케일, 재료, 색 등을 규정할 수 있음

03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 규모별 추진절차

■ 공공건축 사업 업무 절차

① 공공건축 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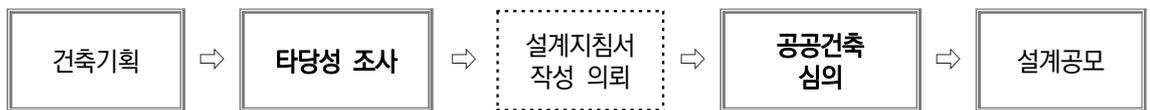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비 1억이상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된 초안 작성	설계비 0.5억이상	설계비 1억이상
수행 주체	주관부서	주관부서 ⇒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주관(발주)부서 ⇒ 공모부서	주관부서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모부서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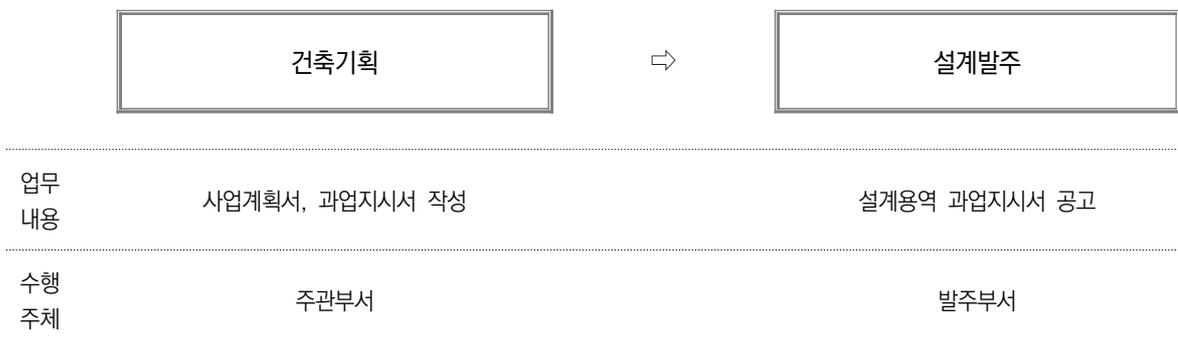
업무 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타당성 조사 수행	타당성 조사 의견서 반영된 초안 작성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심의	설계공모 작품선정 (설계비 1억이상)
수행 주체	주관부서	KDI, KRILA(LIMAC) 등	주관(발주)부서 ⇒ 공모부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모부서

③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1억원)



④ 공공건축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단,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 추진절차 (소요기간은 변경 가능)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건축기획 주관부서 ↓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추진계획 및 사업 방침 등 수립 ○ 사전절차이행,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영 제19조의2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주관부서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 및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제26호 및 제28호 제외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자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영 제20조,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
자문위원 선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자문위원 선정(3인 이내), 외부전문가 활용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자료 통지 ○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검토
현장확인 (1차 협의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9~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부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 현장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관련 질의응답 ※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요청
2차 협의회 (검토 의견서 확정) 자문위원 등 ↓	8~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별 사전검토서 의견서 작성 ○ 사전검토(안) 의견협의(확정)
사전검토 결과통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주관부서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의견서 및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신청 주관(발주)부서 ⇒ 공모부서 ↓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지침서 초안 작성후 운영위원회에 설계지침서 확정 요청
건축정책실현분과 소위원회 개최 공모부서 ↓	3~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전문위원3~4, 행정위원 3~4)
운영위원회 운영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30~4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의견서 검토 및 현장답사 등 ○ 설계지침서 작성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설계공모 지침서 송부 공모부서 ⇒ 주관(발주)부서 ↓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공공건축심의용) 송부
공공건축 심의신청 주관부서 ⇒ 심의부서 ↓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사전검토의견서,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지침서 등
심의위원 검토 심의부서 ⇒ 심의위원 ↓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신청 자료 사전배부, 검토 (전자메일 발송, 심의위원 검토기간 10일)
검토의견 통보 심의부서 ⇒ 주관부서 ↓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의견 제출 (심의위원 → 심의부서) ○ 심의위원 검토의견 취합 후 통보 (심의부서 → 주관부서)
공공건축심의 심의위원회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사전검토에 대한 주관부서 조치계획 작성·제출 (주관부서→심의부서) * 관련부서(기관)의견 포함(미반영 사유 포함)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질의응답: 주관(사업)부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자
심의결과 통보 심의부서 ⇒ 주관부서 ↓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설계공모 요청 발주부서 ⇒ 공모부서 ↓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심의결과서 ○ 설계공모지침서 등
운영위원회 개최 공모부서 ↓	10~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확정(운영위원장⇒공모부서) ○ 설계공모 추진일정 확정(운영위원장⇒공모부서)
일상감사 (발주계획 등) 공모부서 ⇒ 감사위원회 ↓	3~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 대상: 2억원 이상 - 시기: 공모시행 전 - 내용: 발주계획,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건축정책실현 분과소위원회 개최 공모부서 ↓	7~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 -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위원(5~9인) 예비위원(심사위원 20% 이내)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 심사위원 위촉동의 및 서약서 작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제12조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설계공모 시행계획 및 시행공고 공모부서 ⇒ 주관(발주)부서 ↓	3~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공모 공고 [공모부서⇒발주부서(회계팀)] ○ 공고일로부터 공모등록(최소 7일 이상) ○ 공고일로부터 작품제출(최소 90일 이상)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
설계공모 등록 및 현장설명회 개최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공고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등록(홈페이지 등) ○ 현장설명회(참가등록 당일)⇒운영위원장 진행 ○ 자료준비⇒운영위원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
설계공모 심사관련 사전회의 개최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사방법 논의 등 -운영위원회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현장확인
질의서 접수 및 응답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현설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서 서면(홈페이지) 접수 ○ 운영위원회 개최(답변서 작성) - 주관부서, 발주부서 의견 수렴 ○ 답변서 게재 및 통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8조
작품접수 및 기술(사전)검토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공고후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개최 - 기술(사전)검토 ○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사방안 수립 ○ 감점(실점) 내용 참가업체 확인 ○ 심사위원회 자료 제공(심사 5일전) - 설계공모지침서, 질의응답서, 심사작품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제13조
심사위원회 개최 공모부서(심사위원회) ↓	접수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위원회(비공개) - 현장답사 - 운영위원회(장) 참석: 심사방안 등 보고 - 5작품 이하 선정(자유토론) - 심사위원 사전접촉금지서 및 확인서 제출 ○ 2차 심사위원회(공개) - 5작품 제출업체 PT 등(자유토론)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평가사유서 작성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공모부서 ↓	심사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홈페이지) -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심사결과, 입상작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시상 및 작품반환 공모부서 ↓	발표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시상일은 별도 공지 ○ 작품반환: 심사결과 후 7일 이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설계공모 결과 통보 공모부서 ⇒ 주관(발주)부서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결과 통보

■ 부산시 공공건축 사업 추진절차 (구·군, 유관기관)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건축기획 구·군 ↓	— 1~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추진계획 및 사업 방침 등 수립 ○ 사전절차이행, 관련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영 제19조의2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구·군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 및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제26호 및 제28호 제외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자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영 제20조,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
자문위원 선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 2~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자문위원 선정(3인 이내), 외부전문가 활용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자료 통지 ○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검토
현장확인 (1차 협의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 9~1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부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위원 현장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관련 질의응답 ※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요청
2차 협의회 (검토 의견서 확정) 자문위원 ↓	— 8~1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별 사전검토서 의견서 작성 ○ 사전검토(안) 의견협의(확정)
사전검토 결과통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 구·군 ↓	— 1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의견서 및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신청 구·군 ⇒ 부산시(공모부서) ↓	— 1~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지침서 초안 작성후 부산시에 확정 요청 ※ 설계공모 요청(구·군⇒부산시)대상 사업에 한함
건축정책실현분과 소위원회 개최 공모부서 ↓	— 5~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구성(전문위원3~4, 행정위원 3~4)
운영위원회 운영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 20~ 3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 ○ 사전검토의견서 검토 및 현장답사 등 ○ 설계지침서 작성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p>설계공모 지침서 송부</p> <p>공모부서 ⇒ 구·군 ↓</p>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공공건축심의용) 송부
<p>공공건축 심의신청</p> <p>구·군 ⇒ 부산시(심의부서) ↓</p>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7조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사전검토의견서,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지침서 등 ※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p>심의위원 검토</p> <p>심의부서 ⇒ 심의위원 ↓</p>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신청 자료 사전배부, 검토 (전자메일 발송, 심의위원 검토기간 10일)
<p>검토의견 통보</p> <p>심의부서 ⇒ 구·군 ↓</p>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안전에 대한 심사위원 검토의견 제출 (심의위원 → 심의부서) ○ 심의위원 검토의견 취합 후 통보 (심의부서 → 구·군)
<p>공공건축심의</p> <p>심의위원회 ↓</p>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구·군 조치계획 작성·제출 * 관련부서(기관) 의견 포함(미반영 사유 포함)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질의응답: 구·군 건축기획 업무 수행자
<p>심의결과 통보</p> <p>심의부서 ⇒ 구·군 ↓</p>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p>설계공모 요청</p> <p>구·군 ⇒ 공모부서 ↓</p>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감사등 사전절차 이행(區) ○ 공공건축심의결과서, 설계공모지침서 등
<p>운영위원회 개최</p> <p>공모부서 ↓</p>	10~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확정(운영위원장⇒공모부서) ○ 설계공모 추진일정 확정(운영위원장⇒공모부서)
<p>건축정책실현 분과 소위원회 개최</p> <p>공모부서 ↓</p>	7~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위원(5~9인) 예비위원 (심사위원 20% 이내)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 심사위원 위촉동의 및 서약서 작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제12조

구 분	소요 기간	내용 및 근거
설계공모 시행계획 및 시행공고 요청 공모부서 ⇒ 구·군 ↓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등 공모 공고 요청 [공모부서⇒구·군] ○ 공고일로부터 공모등록(최소 7일 이상) ○ 공고일로부터 작품제출(최소 90일 이상)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
설계공모 등록 및 현장설명회 개최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공고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등록(홈페이지 등) ○ 현장설명회(참가등록 당일)⇒운영위원장 진행 ○ 자료준비⇒ 운영위원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
질의서 접수 및 답변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현설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서 서면(홈페이지) 접수 ○ 운영위원회 개최(답변서 작성) - 구·군 의견 수렴 ○ 답변서 게재 및 통보 ○ 심사위원 자료 제공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8조
설계공모 심사관련 사전회의 개최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사방법 논의 등 - 운영위원회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현장확인
작품접수 및 기술(사전)검토 공모부서(운영위원회) ↓	공고후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개최 - 기술(사전)검토 ○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사방안 수립 ○ 감점(실점) 내용 참가업체 확인 ○ 심사위원회 자료 제공(심사 5일전) - 설계공모지침서, 질의응답서, 심사작품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제13조
심사위원회 개최 공모부서(심사위원회) ↓	접수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위원회(비공개) - 현장답사 - 운영위원회(장) 참석: 심사방안 등 보고 - 5작품 이하 선정(자유토론) - 심사위원 사전접촉금지서 및 확인서 제출 ○ 2차 심사위원회(공개) - 5작품 제출업체 PT 등(자유토론)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평가사유서 작성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공모부서 ↓	심사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홈페이지) -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심사결과, 입상작 등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시상 및 작품반환 공모부서 ↓	발표후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시상일은 별도 공지 ○ 작품반환: 심사결과 후 7일 이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설계공모 결과 통보 공모부서⇒ 구·군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결과 통보

04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편람 요약

1)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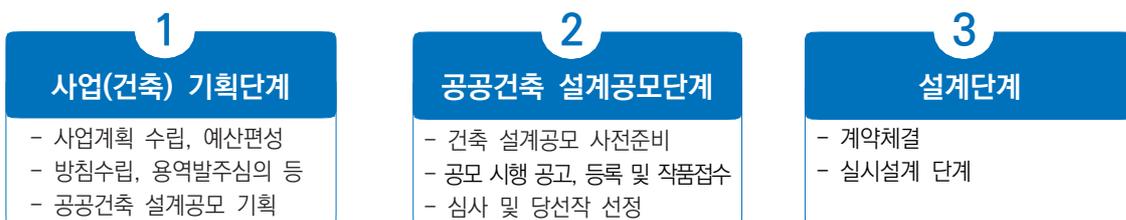
-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위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확산에 기여
- 개정된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대응하는 부산시 설계공모 통합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업무 표준화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혼동되는 운영조직 및 용어 정리

2) 적용 대상 및 관련규정

- 본 편람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자치구·군, 산하기관은 의무사항 아님)에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 적용됨.
- 본 편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짐.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또는 본 편람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 할 수 있음.

3)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절차

- 공공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사업(건축) 기획단계, 공공건축 설계공모단계, 설계단계의 3단계로 구분됨.



- 본 편람에서는 사업(건축)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를 제외한 건축 설계공모 단계로 범위를 한정하여 다루고 있음.
-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은 공모 공고 이전의 사전준비 단계와 공모 공고 이후의 공모운영 단계로 구분되며 세부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음.



4) 운영 및 관련 조직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조직은 공모부서(공모 주최자),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 할 수 있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조직도, 각 운영주체별 역할 및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 부산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주체 및 상세 내용

주 체		구 분	상 세 내 용
1	공모부서	역할	- 건축 설계공모 주최자 - 기획, 행정, 재정, 기타 공모 전반에 걸친 업무 총괄
2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역할	- 건축 설계공모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장 추천, 심사위원회 선정

주 체		구 분	상 세 내 용
3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역할	- 설계공모 운영 전 과정에 참여, 기술검토작성 등
		선정절차	-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발주기관 위촉 -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2~3인 추천, 발주기관 위촉
4	심사위원회	역할	- 공모안 심사
		선정 절차	-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 2~3배수 추천 - 건축정책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발주기관 위촉

5) 사전준비

①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

- 역할 : 설계공모의 사전준비, 지침서 작성, 질의응답, 기술검토서 작성 등 전반적인 설계공모 운영, 관리 수행

1. 설계공모 방식, 참가자격 등 검토
2. 설계지침서 검토 및 작성 및 제공자료 준비
3. 심사위원회 2~3배수 추천
4. 설계공모 기간(일정) 수립
5. 현장설명회 진행 및 질의응답
6. 기술검토서 작성, 심사운영기준 마련 등

- 선정방법: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추천, 발주기관 위촉,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2~3인 추천, 발주기관 위촉

분 류	내 용
구성주체	-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추천, 발주기관에서 위촉 -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2~3인 추천, 발주기관에서 위촉

분 류	내 용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3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 - 8~10팀으로 상설팀 구성, 임기는 1년, 연임가능 - 주관부서, 사업부서, 공모부서 업무 담당자는 행정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업무 협조 등 - 공모부서 담당팀장은 간사로써 운영위원회 회의 조정 및 운영에 참여
자 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 부산시 공공건축가 -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심사위원회

- 역할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술검토서 및 심사방안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담당하며 평가방법, 작품심사 및 실격, 입상작 등을 결정함.
- 자격 :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과 같음

분 류	내 용
자 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 부산시 공공건축가 -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심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 제척: 발주기관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행위
- 기피: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척 원인이 있는 심사위원이 제척되지 않거나, 제척 원인이 없더라도 불공평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 업무로부터 배제되도록 발주기관 등에 신청하는 행위
- 회피: 심사위원이 심사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발주기관 등에 신청하여 스스로 심사업무를 피하는 행위

■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되어야 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심사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
6.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기타 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 구성: 심사위원은 설계공모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2~3배수를 추천하면 건축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발주기관의 위촉을 통해 구성됨

분 류	내 용
구성 주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의 2~3배수 추천 - 건축정책실현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2~3배수 내에서 심사위원 선정 - 발주기관의 임명 또는 위촉
구 성	-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비하여 20% 내외의 예비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음

② 건축 설계공모 방식 결정

• 건축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

- 설계공모 방식은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설계공모, 지명 설계공모, 제한 설계공모 5가지로 구분되며 총 3번의 분류과정을 거쳐 결정됨.

■ 결과물 선정 내용에 따른 특성

일반 설계 공모	- 다수의 공모안 평가 가능
제안 설계공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경험 많은 설계자 선정 가능 - 설계자의 능력과 설계안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평가 - 공모절차의 간소화로 긴급 사업에 적합(짧은 일정 및 적은 예산)

■ 참가 자격에 따른 특성

공개 설계공모	-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참여 차원에서는 효과가 높지만 비용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제한 설계공모	-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충실한 응모 유도 가능 - 지역건축사, 신진건축사, 여성건축사 등 특정 설계인력 육성 효과 기대
지명 설계공모	- 역량있고 지명도가 높은 참가자들의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높은 수준의 작품 접수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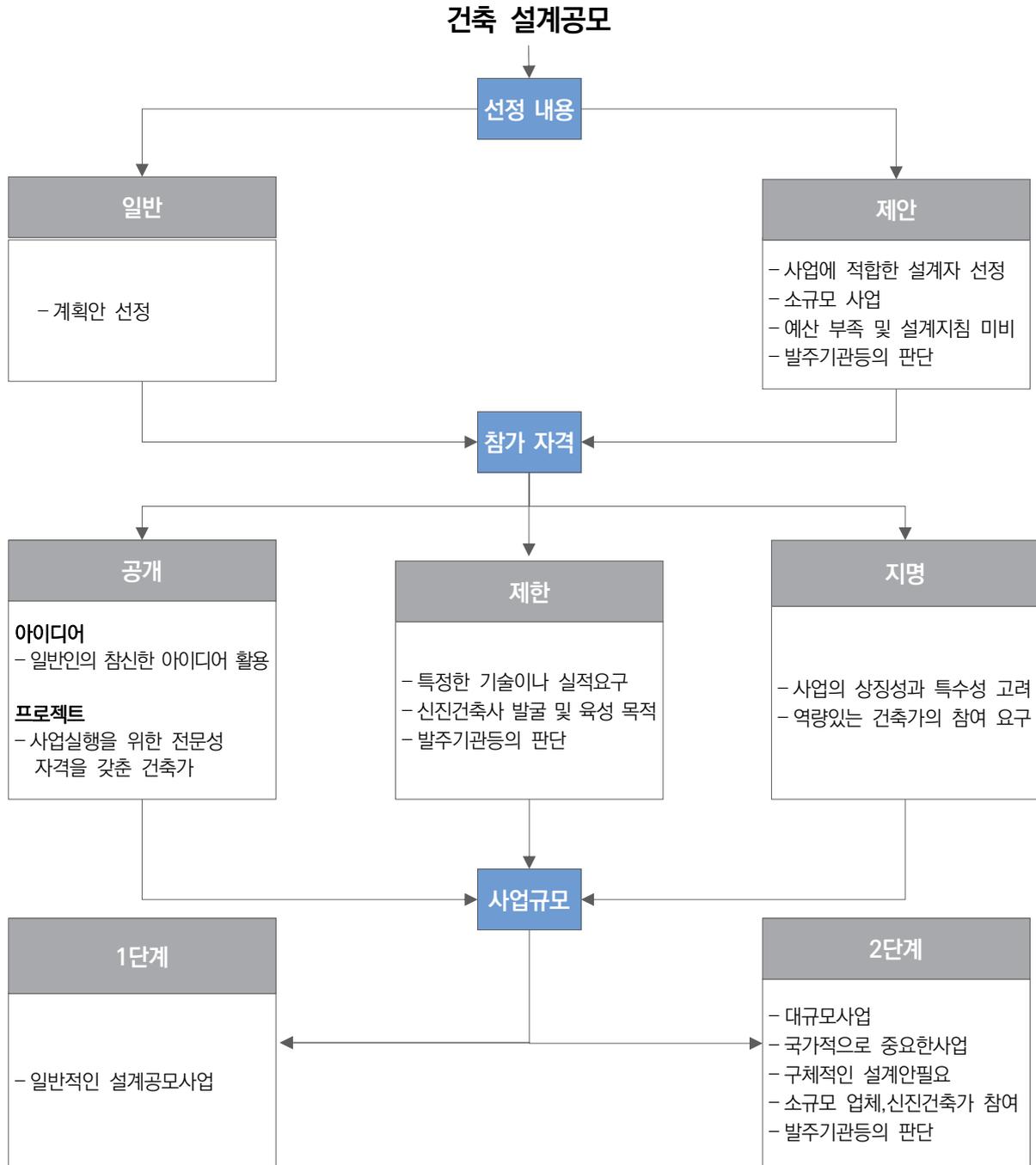
■ 설계공모 단계에 따른 특성

1단계 설계공모	- 소규모 사업에 적당 - 공모 추진단계 및 절차 간소화
2단계 설계공모	- 1단계 공모를 통한 사전 아이디어 도출 가능 -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 가능 - 소규모 업체 및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공모기간이 길어 긴급 사업에 부적합

• 건축 설계공모 방식 결정기준

- 발주기관 내 주관부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설계공모 사전준비 단계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설계공모의 목적, 결과물의 선정내용, 참가자격,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설계공모 방식 결정 흐름도 및 단계별 선택기준



- 공모 일정

- 설계공모 전체 일정은 설계공모 사전준비 기간, 설계공모 기간, 설계공모 사후기간으로 구분됨

■ 설계공모 전체일정(부산시 공공건축 추진절차 참고)

설계공모 사전준비기간		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 사후기간	
사전준비기간	사업별 상이	- 참가등록기간	사업별상이	- 전시기간	약7일
		- 설계공모기간	사업별상이	- 계약기간	약10일
		- 심사기간	약 15일	- 후속작업기간	약60~일

- 부산시의 일반 설계공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전 준비기간 약 30~40일, 설계공모 기간 약 45~90, 기술검토와 심사준비 및 심사결과 발표까지 약 10~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설계공모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응모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약 9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함.
-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공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설계공모 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 예시

절차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한공모
설계공모 공고 준비 기간	30일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상
등록마감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20일 이상)	20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의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2차 공모안의 접수	/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의 전시	7일	7일	7일
총 설계공모기간	142일 이상 (최소 97일 이상)	157일 이상 (최소 117일 이상)	72일 이상

※ 지명, 제한공모의 일정은 일반 설계공모를 준용함

• 참가 자격

- 공모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일반인, 학생의 구분 없이 모든 개인과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참가를 부분적으로 제한함.
- 참가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설계공모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③ 소요자원 검토

- 설계공모 소요비용은 공모방식, 상금 규모, 제공 자료의 작성 수준, 홍보 수준등의 내용과 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주관부서는 기존의 유형별 사례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설계공모시행 관련 공통된 소요예산 검토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1. 인건비, 여비(국내, 국외), 회의비(일반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2. 조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전산비, 연구재료비, 번역 비용)
3. 공공요금(교통, 통신비 등)
4. 홍보비(대외홍보비, 홍보물제작, 기념품 및 작품집)
5.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6. 심사비(심사위원비, 기술검토 위원비 등), 상금, 시상식 비용
7. 전시회비(사이버 및 순회 전시)

④ 설계지침서 작성 및 제공 정보

• 일반사항

- 공모의 목적에 부합함과 동시에 참가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작성
- 설계공모 참가자가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
- 설계지침서는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가 아님을 이해하고 작성
- 제안공모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설계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방향’ ‘제안요청 과제’ 등을 제시

● 설계지침서 내용

-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목차	주요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공식언어
	설계공모의 단계 및 일정
	주최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 방법, 장소
	심사 일시, 방법, 장소
	결과발표 일시, 방법
설계지침	설계 기본방향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관련 법규 적용기준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감점기준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수상 및 사후 활용 등 관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실적인정기준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당선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
	기타 특별한 사항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 제공 자료
 -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에 한해 설계공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자료를 교부하여야 함.
 - 대상지에 대한 제공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
2. 도면 (국제공모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이미지파일로 제공할 수 있음)
3. 그 외 참고자료(대상지 현황자료, 지장물현황, 지반관련보고서, 기타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

⑤ 홈페이지 활용

- 일반사항
 -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mpe>)활용
 - 부산시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2020.12.)예정
- 목적
 - 설계공모 정보관리 기능 강화 및 중복예산 지출 방지
 - 일원화된 설계공모 접수창구 및 운영공간 마련
- 기능
 - 부산시 공공프로젝트 및 설계공모 소식 알림
 - 진행중인 부산시 설계공모 정보 제공
 - 인터넷을 통한 공모전 참가접수 및 작품등록, 질의응답
 - 설계공모 담당자 공모전 등록 및 운영관리 지원(공모운영, 사업완공까지)

6) 설계공모 운영

① 공모의 공고

- 일반사항
 - 참고자료 및 설계공모 관련 정보들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필수적으로 게재되어야 하며,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mpe>) 및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cloud.eais.go.kr>)에도 등록하여야 함.

• **공고 내용**

1. 공모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등)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3.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4.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
5.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6.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7. 질의응답의 기간, 절차 및 그 공개방법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9.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등
10. 배점기준
11. 실격 및 감점기준
12. 공모작품 접수방식
13. 입상의 종류 및 권리, 보상 내용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15.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의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16.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가등록**

• **참가등록 접수**

- 설계공모 참가희망자는 발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참가등록
- 무료 혹은 일정 금액의 참가등록 비용 청구 가능
- 설계공모 참가희망자는 공고 시 안내된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ompe>)를 통해 참가등록

• **참가등록자 분류 및 분석**

- 등록시 제출한 서류 자료를 통하여 참가등록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운영현황 파악 및 추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시 참고자료로 사용

③ **현장설명회**

• **일반사항**

- 설계공모에 대한 설명과 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 현장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일정, 대상지 현황, 설계지침,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
- 현장설명회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질의응답 시 답변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이는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④ 질의응답

- 일반사항
 - 질의접수 및 응답기간은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 설계공모 공고 이후 또는 주최측이 정한 기간에 실시
 - 질의접수 기간 내에 받은 질의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답변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

⑤ 공모안 접수

- 일반사항
 -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제출 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와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제출도서 및 구비서류를 일정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공모안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모 실시 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 적용 가능
- 공모별 제출도서
 -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제출도서의 종류와 규격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설명서 제출
 - 운영위원회는 조감도 및 투시도(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의 제출 요구 가능
 - 설계지침서(공모 공고 시)에 제출도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심사 발표까지 제출도서의 익명성 유지
- 공모안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부산시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2020.12.월 구축 예정)를 통해 공모안 제출 가능
 - 현장방문 접수: 공고 또는 설계지침서에 기재된 제출도서와 서류, 참가등록 접수증을 지참하여 발주 기관이 정한 접수처에 직접 방문

⑥ 사전기술검토

- 일반사항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된 공모안이 관계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
 - 사전기술검토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작성(필요시 전문위원회 구성)

- 다음 사안을 토대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

1.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건축규모, 총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사전기술검토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심사 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모안이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⑦ 심사

• 일반사항

- 심사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다시 개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1차심사는 비공개 2차심사는 공개로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을 공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심사절차 및 방법

- 공모안의 심사방법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 혼합방식이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현재 토론을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제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사전기술검토 내용 등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모안의 발표

- 2차 심사는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 2차 발표 심사대상 작품 수는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5인 이내로 선정함.

- 공모안의 발표는 설계자에 의한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와 질의 응답은 각 10분 내외로 제한하며 심사위원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조정 가능
- 발표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함.

⑧ 심사결과 발표

•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심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평가사유서, 최종집계표 등)를 서면이나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mpe>) 및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cloud.eais.go.kr>) 등에 게재하여야 함.

⑨ 계약체결(보상)

• 일반사항

-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의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름.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 제시한 설계용역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

- 설계공모의 상금은 국내 및 해외 설계공모의 사례, 규모, 공모의 위상, 작품 수준을 반영하여 사전에 발주기관 등이 정함.
-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정하며, 지명공모의 경우 당선자 외 참가자를 기타 입상자로 함.
- 발주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설계비의 10%(1억원 범위 내)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당해사업의 특성에 따라 1억원 초과 지급 가능)
- 발주기관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안됨.

⑩ 시상 및 전시

- 일반사항

- 설계공모 입상작에 대한 홍보 및 당선작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시상 및 전시 실시
- 시상식은 권고사항으로 설계공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
- 국제공모의 경우 입상자에 대한 일정 및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⑪ 사후활용

- 일반사항

-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발주기관 등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 예외)
-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수상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주최측에서 사용 가능
-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결과를 작품집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출판, 인쇄, 복사, 전시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작품제출 시 제출하도록 하거나, 설계공모 지침서에 저작권 및 출판 전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정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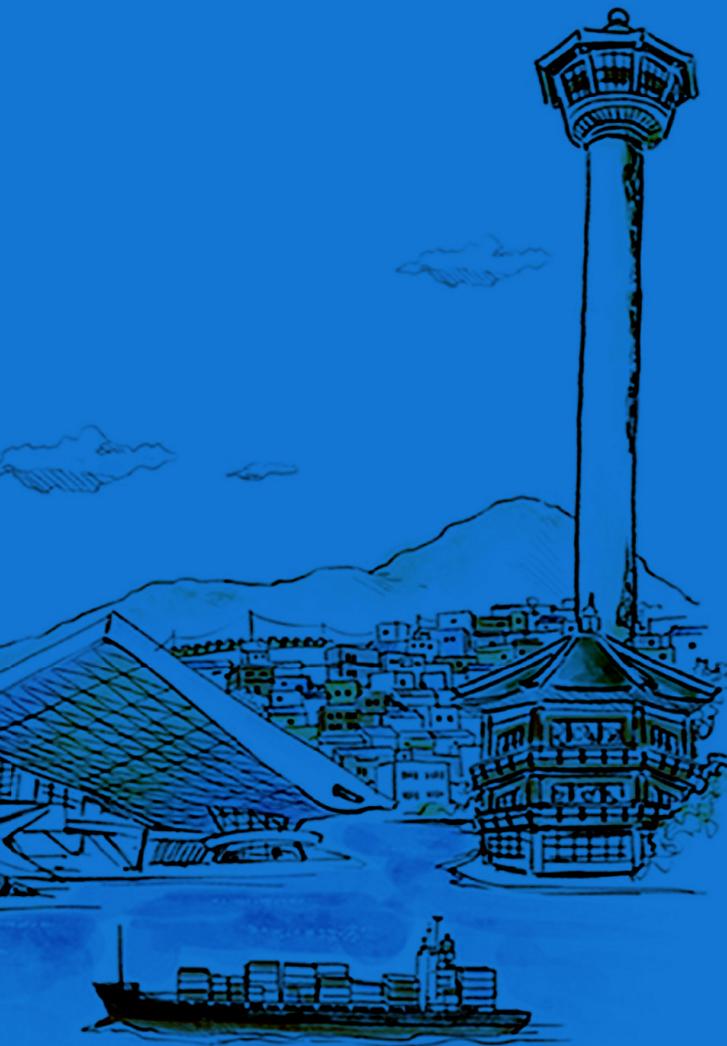
시
축
모
무
람
역
건
공
업
광
공
계
준
산
공
실
표
편
부
공
설
표
편



02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1. 용어의 정의
2. 적용 범위
3. 운영 및 관련조직
 - 3.1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주체
4.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결정 절차
5. 설계공모 일반사항
 - 5.1 공모의 명칭
 - 5.2 공식 언어
 - 5.3 공모 일정
 - 5.4 참가자격
 - 5.5 사전준비
 - 5.6 설계지침서의 작성 및 제공 정보
 - 5.7 공모의 공고 및 등록
 - 5.8 현장설명회
 - 5.9 질의응답
 - 5.10 공모안의 접수
 - 5.11 공모안의 심사
 - 5.12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01 용어의 정의

- ①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
- ②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함.
- ③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④ “발주부서”라 함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사업(용역)발주, 계약, 사업(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함
- ⑤ “주관부서”라 함은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함
- ⑥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은 건축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계공모 전 과정을 운영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함
- ⑦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안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⑧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⑨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⑩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⑪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함.

- ⑫ “공모안”이란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함.
- ⑬ “총 예정사업비” 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함.
- ⑭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 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함.

02 적용 범위

1) 적용대상

- 본 편람은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산하기관은 의무사항 아님)에서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 적용됨.
- 건축 설계공모 적용 대상사업은 사업기획 단계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관련규정

- 본 편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짐.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 또는 본 편람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 할 수 있음.

03 운영 및 관련조직

3.1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주체

1) 발주기관

① 역할 및 의무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의 주최자로 기획, 행정 및 재정, 기타 공모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 시행하며 설계공모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우수한 설계안 선정을 위해 주최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2) 건축정책위원회

① 역할

-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장을 추천하고 새로운 건축 문화형성과 도시공간 구조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간환경 조성사업 관련 각종 설계공모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3배수 후보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① 역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설계공모 전 과정에 걸쳐 공모운영을 진행함.

- 사업추진방향,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 프로그램, 적정 건축규모, 사업비 및 설계공모 방식의 선정 등 검토 및 작성.
 - 설계공모의 방식, 참가자격, 공모기간 검토
 - 설계지침서 검토 및 작성
 - 현장설명회 운영 및 질의응답
 - 사전기술검토, 심사운영 방향 및 심사기준 마련
 - 심사위원 2~3배수 추천

② 구성

- 운영위원회는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8~10인을 추천하고 발주기관이 위촉함.
- 각 운영위원장은 팀별 운영위원 2~3인을 추천하고 발주기관이 위촉함.
-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팀별로 8~10팀을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각 운영위원회는 사업별 순번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모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주관부서, 발주부서, 공모부서 담당 공무원은 운영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위원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기타 주요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함.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구성

분 류	내 용
구성주체	-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추천, 발주기관에서 위촉 -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2~3인 추천, 발주기관에서 위촉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3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 - 8~10팀으로 상설팀 구성, 임기는 1년, 연임가능 - 주관부서, 발주부서, 공모부서 공무원은 행정업무 지원 등 - 공모부서 담당 팀장은 간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조정 및 운영에 참여

③ 자격

- 운영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은 당해 설계공모에 직접 응모할 수 없음.
- 운영위원의 자격은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음.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2. 부산시 공공건축가
3.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4.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활동

- 설계공모의 전과정에 걸쳐 운영
- 운영위원회는 상설 기구로서, 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를 공모부서에서 결정.
- 통상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설계지침서 검토, 설계공모 방식 결정, 현장설명회 및 질의 응답서 작성,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기술검토 등 중요 안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지침서 작성.
- 설계공모 방식, 참가자격, 공모기간 검토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 자격 등 적정성을 검토 및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과 구성을 지원.
-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 검토.
- 응모작품에 대한 기술검토 및 심사방안, 심사기준 작성
-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설계공모의 목적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자문을 통한 심사 지원

⑤ 급여

-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 운영위원 수당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운영위원회 수당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함.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예시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운영위원회	일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1회 지급 - 체재비, 여비 별도 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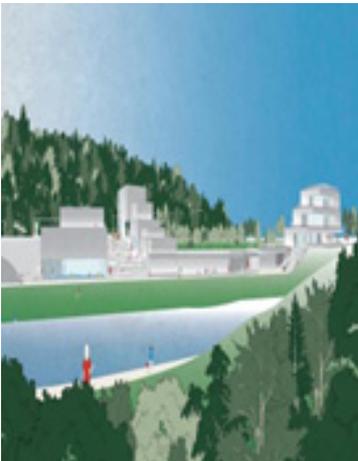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 최대 150,000원/일

(예시) 2시간기준 100,000원 / 4시간기준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위원회 수당이 125,000원 초과시는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후 지급(소득세법 제37조, 제84조)

- 운영위원회의 설계지침서 작성 및 공모안 기술검토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지급 가능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사례- 1 (‘19년 시범사업, 사고이월 사업으로 연내 원인행위를 위한 공모기간 단축사업)

구분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일반 설계공모				
	내역	인원	단가(원)	횟수	금액(원)
	대지면적	5,132㎡			
	예정설계비	585,684,000원			
	예정공사비	12,791,000,000원			
	공모 기간	설계공모 요청, 공고기간, 작품심사, 결과발표 121일			
회의수당	3	70,000~150,000	8	3,193,500	검토비 및 참석비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사례 2 (19년 시범사업, 사고이월 사업으로 연내 원인행위를 위한 공모기간 단축사업)

북구소방서 건립 일반 설계공모						
	대지면적	1,583㎡				
	예정설계비	670,392,000원				
	예정공사비	15,687,000,000원				
	공모 기간	설계공모요청, 공고기간, 작품심사, 발표 124일				
내역	인원	단가(원)	횟수	금액(원)	비고	
회의수당	3	70,000~150,000	12	3,230,000	검토비 및 참석비	

4) 심사위원회

① 역할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된 심사위원들은 설계공모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공모 수준과 참가 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에서의 심사를 담당하며 평가방법, 작품의 심사 및 실격, 입상작 선정 등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제공하는 기술검토보고서 및 심사방안·기준 등을 심사에 반영함
 - 심사방식 결정
 - 1차 심사, 2차 심사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등 선정

② 구성

- 발주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의 2~3배수를 추천하고 건축정책위원회 정책 실현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심사위원중에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발주기관의 위촉을 통해 구성됨.

-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공고 시 공개를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2. 심사위원의 성향을 통해 사업의 특성 및 설계공모 디자인의 방향성 제시

-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20% 내외의 예비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명단 발표 이전에 심사위원회 위촉 동의 및 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함.
- 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함.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격

- 심사위원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아래 각호와 같음.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 심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제척: 발주기관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행위

기피: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척 원인이 있는 심사위원이 제척되지 않거나, 제척 원인이 없더라도 불공평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업무로부터 배제되도록 발주기관에 신청하는 행위

회피: 심사위원이 심사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발주기관에 신청하여 스스로 심사업무를 피하는 행위

-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사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함.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 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음.

④ 심사위원 제척, 기피 및 불공정 행위 신고 관련 업무절차

-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은 공모 공고 이전에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불공정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참가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모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함.

⑤ 활동

- 심사방식 등 결정.
- 운영위원회의 공모안에 대한 위반사항 검토의견 심사에 반영.
- 필요할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 요청.
 - ※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공모안 작성자에 의한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으며 공모안의 설명자료는 제출도서에 한정함.
- 평가사유서 작성 등.
- 심사위원 총평 작성 등.

⑥ 수당 및 여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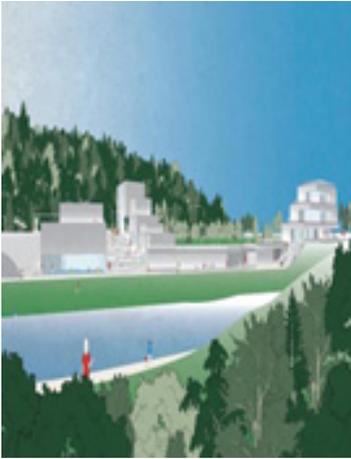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에게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
- 심사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사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 심사위원 수당 지급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함

■ 심사위원 수당 지급기준 예시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심사위원회	일	369,830원	엔지니어링 기술사 1일 노임단가 적용

※ 위원회 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에서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후 지급(소득세법 제37조, 제84조)

■ 심사위원 수당 지급사례 - 1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일반 설계공모					
	대지면적	5,132㎡				
	예정설계비	585,684,000원				
	예정공사비	12,791,000,000원				
	공모 기간	설계공모요청, 공고기간, 작품심사, 발표 121일				
내역	인원	단가(원)	횟수	금액(원)	비고	
회의수당	5	150,000	2	2,096,500	원격지(숙박, 교통비, 일·식비 포함)	

■ 심사위원 수당 지급사례 - 2

	북구소방서 건립 일반 설계공모					
	대지면적	1,583㎡				
	예정설계비	670,392,000원				
	예정공사비	15,687,000,000원				
	공모 기간	설계공모요청, 공고기간, 작품심사, 발표 124일				
내역	인원	단가(원)	횟수	금액(원)	비고	
회의수당	5	150,000	2	2,138,000	원격지(숙박, 교통비, 일·식비 포함)	

04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와 결정 절차

1) 일반사항

-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설계공모, 지명 설계공모, 제한 설계공모 5가지로 구분되며 설계공모 방식은 총 세 번의 분류과정을 거쳐 결정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은 설계공모 사전 준비단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설계공모의 목적 결과물의 선정내용, 참가자격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함.

① 첫 번째 분류

- 결과물의 선정내용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와 제안 설계공모로 구분되며 일반 설계공모의 경우 우수한 공모안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 설계공모의 경우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안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음.

② 두 번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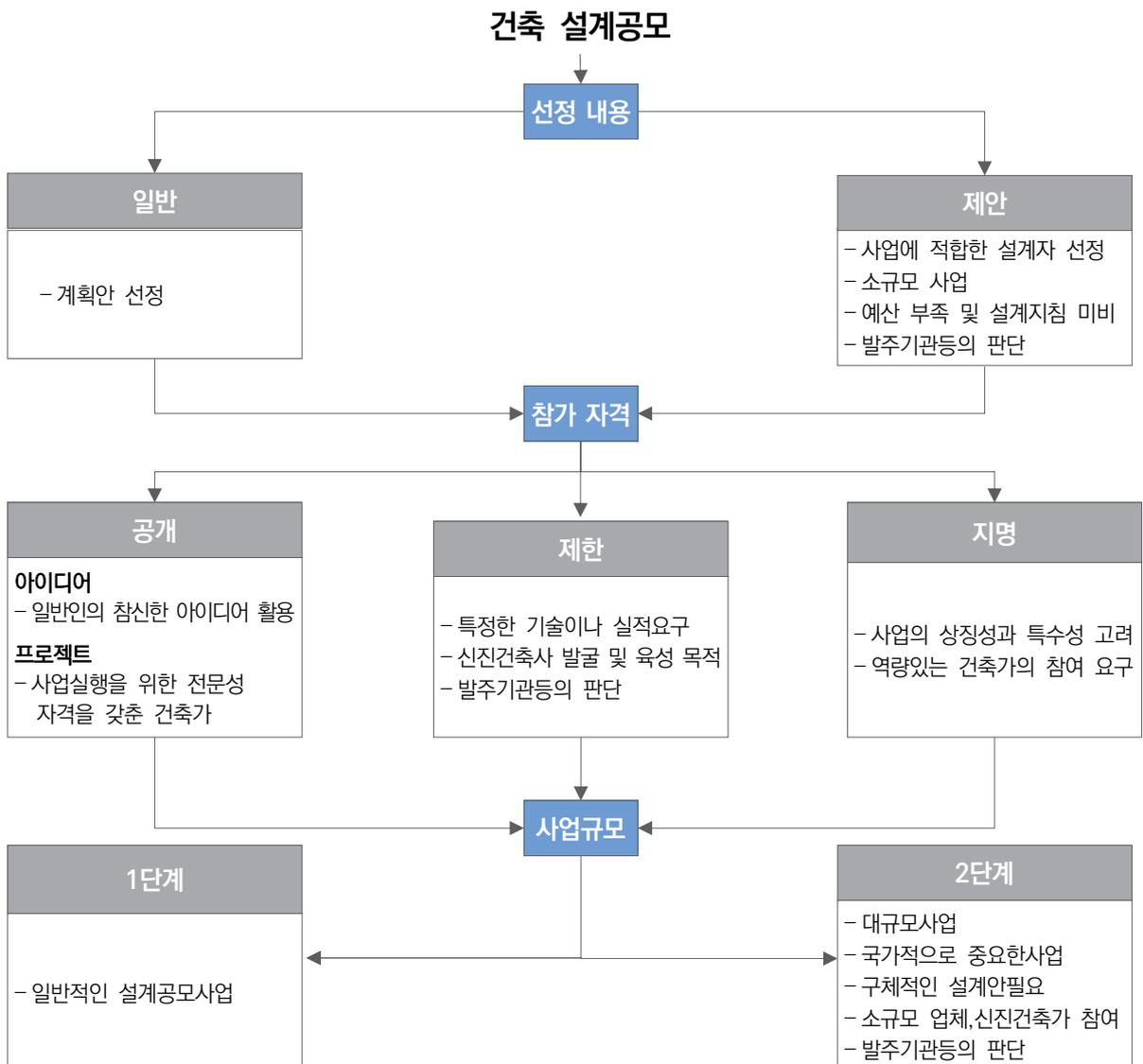
- 참가자격에 따라 공개 설계공모, 제한·지명 설계공모로 구분되며, 공모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개 설계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건축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용도에 대한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신진건축사의 발굴 및 육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한 또는 지명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 할 수 있음.

③ 세 번째 분류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1단계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로 구분됨.

-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1단계 설계공모 방식을 취하며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과 발표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2조)
- 설계공모 방식은 설계목적, 결과물 선정 내용, 참가자격, 단계별 등의 기준에 의해 세부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선택되며, 각 순서별 선택기준과 선택기준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계공모 방식 결정 흐름도 및 단계별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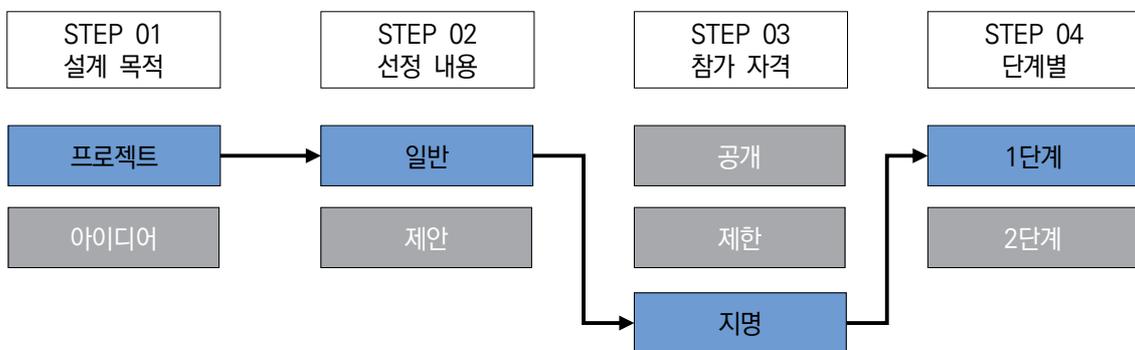


■ 각 공모방식 결정기준 상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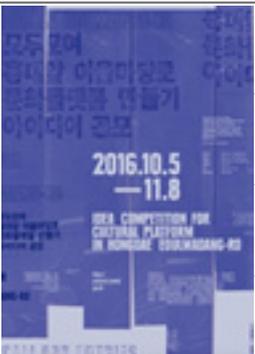
결정 기준		근 거
소규모 사업	- 100억 미만	설계의 타당성 조사 유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대규모 사업	- 500억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유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1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 논의를 거쳐 결정 ① 건축정책위원회 ②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 등	
신진건축사	- 만 50세 미만의 건축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기준 제9조
특정한 용도에 대한 실적	- 시설군 /용도군 건축물기준 대상 공모 건축물과 같은 시설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자 이거나 규모 및 연면적이 유사한 크기의 건축물을 설계하여 본 자	
역량있는 건축가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정부가 발주한 국내 공모전 또는 국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	-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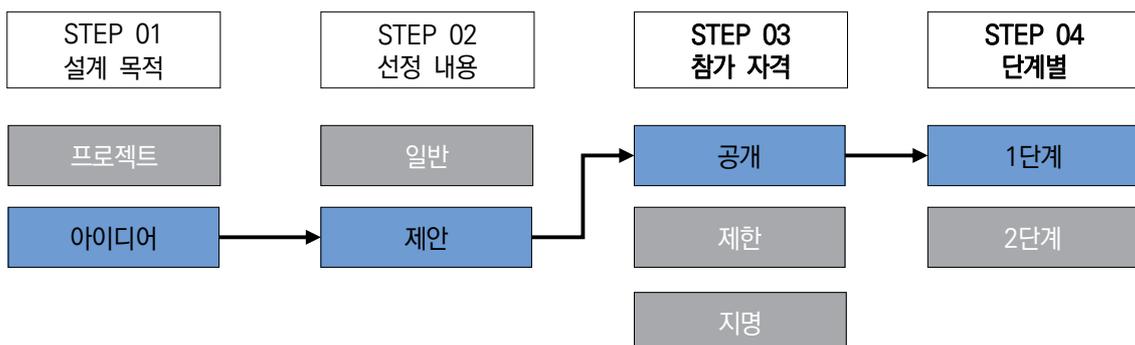
■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 사례 - 1

	공모명칭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현상 설계공모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일대	예정설계비	1,055,000천 원 (VAT포함)
	대지면적	42,100m ²	예정공사비	33,603,000천 원 (VAT포함)
	공모일정	2017.03.20. 공고 ~ 2017.05.31. 당선자발표(73일)		



■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 사례 - 2

	공모명칭	홍대앞 어울마당로 문화플랫폼 만들기 아이디어공모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일대	예정설계비	25,000천 원 (VAT포함)
	대지면적	없음	예정공사비	없음
	공모일정	2016.10.05. 공고 ~ 2016.11.25. 심사결과발표(52일)		



2) 설계방식의 종류

① 결과물 선정내용에 따른 분류

- 일반 설계공모
 - 건축물을 짓거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설계공모 방식을 의미함.
- 제안 설계공모
 - 설계안들을 평가하는 일반 설계공모와 달리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제안과제)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자의 능력과 설계안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평가하여 사업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의미함.
 -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규모, 일정, 배치계획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2조)
 - 통상적으로 제안 설계공모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적용하여야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9조)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적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함(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

■ 결과물 선정내용에 따른 특성

일반 설계공모	- 다수의 공모안 평가 가능
제안 설계공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있고 경험 많은 설계자 선정 가능 - 설계자의 능력과 설계안의 아이디어를 동시에 평가 - 공모절차의 간소화로 긴급사업에 적합(짧은 일정 및 적은 예산) - 공모안의 작품성 보장의 어려움 - 신진건축사 진입의 어려움

■ 결과물 선정내용에 따른 분류 - 일반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제출물
	국내	STEM 빌리지건립 설계공모	국내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연면적 10,858㎡	966,438,000원	250	설계설명서 USB
	국외	Campus Prague (New Headquarters of Ceska sporitelna)	국외 프로젝트 일반공모 (2단계)	연면적 75,000㎡	-	266일	1단계 포스터 소책자 디지털자료 2단계 발표자료 모형 포스터 소책자 디지털자료

■ 결과물 선정내용에 따른 분류 - 제안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제출물
	국내	부산 근현대역사 박물관 조성 설계 제안공모	국내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대지면적 4,984㎡	595,485,000원	20일	제안서 USB
	국내	서울의료원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제안 설계공모	국제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대지면적 99,909㎡	594,482,000원	29일	제안서
	국외	INNATUR 7 COMPETITION	국제 아이디어 제안공모 (1단계)	자유	-	148 일	디지털 패널 2개

② 참가 자격에 따른 분류

- 공개 설계공모
 - 공개 설계공모의 의미와 참가범위는 프로젝트 설계공모와 아이디어 설계공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아이디어 설계공모에서의 공개는 참가자격에 있어 어떠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아이디어 설계공모의 경우 참신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아이디어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일반인, 학생, 법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설계공모의 경우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성이나 설계권한 등의 자격을 필요로함. 따라서 프로젝트 설계공모에서의 공개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건축사법 제23조)
- 제한 설계공모
 - 제한 설계공모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의미함.
 - 통상적으로 제한 설계공모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용할 수 있음.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1. 설계를 수행하는데 특정한 용도에 대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2. 신진건축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제한 설계공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한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음과 같음.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1. 실적에 의한 제한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용도에 대한 실적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자격, 나이에 의한 제한

신진건축사의 발굴 및 육성 등 공모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과 나이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제한공모 방식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특수한 공모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참가자의 국적, 성별, 특별 자격 등으로 공모를 제한할 수 있음.

- 제한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한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함.

● 지명 설계공모

- 제한 설계공모 방식의 한 부분으로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건축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국내외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높은 수준의 설계안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지명 설계공모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용할 수 있음.

1. 사업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건축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 등이 사업의 특성상 지명 설계공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사업의 특수성

1.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특수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이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리노베이션, 2차 사업 등)

√ 역량있는 건축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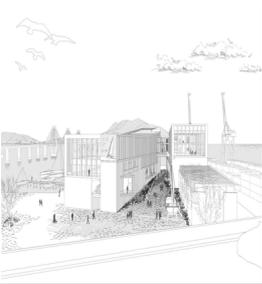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지명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 시 지명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함.

■ 참가 자격에 따른 특성

<p>공개 설계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신진건축사 등의 호응이 좋으며 응모 작품수가 많으므로 홍보효과 좋음 - 참여자원에서는 효과가 높지만 비용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출품작 관리 및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매우 큰 조직운영이 필요 - 해외의 저명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공모전 수준의 저하가 있을 수 있음
<p>제한 설계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충실한 응모 유도 가능 - 지역건축사, 신진건축사, 여성건축사 등 특정 설계인력 육성효과 기대
<p>지명 설계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한 참가자들의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높은 수준의 작품 접수를 기대할수 있음 - 작품수준과 경향을 미리 예측가능 - 지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필요 - 인센티브나 상금의 규모가 비교적 큼

■ 참가 자격에 따른 분류 - 공개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참가 자격
	국내	마리나비즈센터 설계공모	국내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연면적 13,895㎡	1,398,452,000원	76일	건축가
	국내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설계공모	국내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연면적 5,101㎡	752,000,000원	109일	건축가

■ 참가 자격에 따른 분류 - 제한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참가자격
	국내	YoungArchitects competition 2016 박차고 문화공간 만들기	국내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대지면적 3,600㎡	460,000,000원	46일	신진건축가
	국외	난치 안내센터 신축 지명설계 공모	국제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연면적 566㎡	79,948,000원	51일	공공건축가
	국외	UIA HYP CUP 2018 International student competition in architectural design	국제 아이디어 제한공모 (1단계)	자유	-	-	학생

■ 참가 자격에 따른 분류 - 지명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참가자격
	국내	세운상 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현상설계	국제 프로젝트 일반공모 (1단계)	대지면적 42,100㎡	1,055,000,000원	73일	국외3팀 국내4팀 건축가
	국외	QMA, MAD Among 7 Architects Selected in Competition to Redesign Tour Montparnasse	국제 프로젝트 일반공모 (2단계)	대지면적 (No.1) 1,478,000㎡ (No.2) 1,300,000㎡	\$ 330,000,000	-	국외6팀 건축가

③ 설계공모 단계에 따른 분류

- 1단계 설계공모
 -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단일 단계를 거쳐 제출된 결과물을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함.
 - 공모추진 단계 및 절차의 간소화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함.
 - 설계공모의 특성상 발표심사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 발표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
 - 부산시에서는 1차는 비공개 작품심사를 진행하고 2차는 설계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 2단계 설계공모
 -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공모하기 위하여 설계 부담이 낮은 1단계 아이디어 설계공모를 시행하며 1단계 심사를 통하여 2단계 설계공모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함.
 - 2단계 설계공모에서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며 2단계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의미함.
 - 1단계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와 계획 의도 및 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간단한 스케치 도면 등 최소한의 결과물을 요구하며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위반사항이 서면으로 보고되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2단계에서는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단계 결과물에서 발전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결과물을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설계도면,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추가 자료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5조)
 - 통상적으로 2단계 설계공모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용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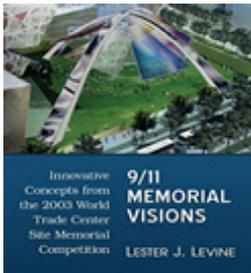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1단계 설계공모에서 선정되어 2단계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에게 제출물 작성 등에 사용된 실비용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함.

■ 설계공모 단계에 따른 특성

1단계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에 적합 - 공모 추진단계 및 절차 간소화
2단계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공모를 통한 사전 아이디어 도출 가능 -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 가능 - 소규모 업체 및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공모기간이 길어 긴급사업에 부적합

■ 설계공모 단계에 따른 분류 - 2단계 공모 예시

이미지	구분	명칭	공모방식	건축규모	예정설계비 (VAT 포함)	공모 기간	비고
	국외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국제 프로젝트 제한공모 (2단계)	건축규모 47069.7㎡		117일	
	국외	World Trade Center Site Memorial Competition	국제 프로젝트 제한공모 (2단계)	대지면적 19,020㎡		261일	

3)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 절차

- 부산시의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에 관여하는 주체는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공모부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설계공모의 기획 및 운영예산 검토, 설계 지침서(초안) 작성, 과업지시서, 제공자료 작성 등 사전준비를 함.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및 공모부서
운영위원회는 건축정책위원회에 의한 추천과 발주기관의 위촉을 통해 구성됨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준비 및 설계공모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 분류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을 결정함.

■ 부산시 설계공모 방식 결정절차



05 설계공모 일반사항

5.1 공모의 명칭

- 설계공모의 명칭은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과 성격이 표현되어야 하며, 대상지, 공모방식 등이 제시되고 주제의 상징성, 인식의 용이성, 홍보효과 등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공모의 명칭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공모가 시작되기 이전인 사업기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주관부서)이 결정하여야 함.
- 공모의 약칭 또한 부르기 쉬우며 내용을 함축하거나 상징성있게 만들어야 함.

■ 서울시 설계공모 명칭 예시

설계공모 명칭	선정내용		참가범위	단계별
	일반	제한	공개 제한 지명	1단계 2단계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 Re - Structuring Seunsangga Citywalk	일반(생략)		공개(생략)	1단계(생략)
Young Architect's competition:2016 박차고 문화공간 만들기 Young Architect's competition:2016 Creating Parking Facility Cultural Space	제안(누락)		제한(누락)	1단계(생략)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설계 제안공모 공식 영어명칭 없음	제안(표기)		공개(생략)	1단계(생략)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설계공모 Seoul Animation Center Design Competition	일반(생략)		공개(생략)	1단계(생략)
창동, 상계 선도사업부지 세대 공유형 창업센터 및 50플러스 캠퍼스 설계공모(2단계) Design Competition For THE Generation-Convergence Start-up Center And The Seoul Northern 50 Plus Campus 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in Changdong and sanggye	일반(생략)		지명(누락)	2단계(표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채소2동 설계 제안공모 Garak Wholesale Market:Vegetables Bldg 2Design Proposal Competition	제안(표기)		공개(생략)	1단계(생략)
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국제 지명 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EOUL STATION OVERPASS	일반(생략)		지명(표기)	1단계(생략)

※ 일반, 공개, 1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략 가능하나 그 외 제안, 제한, 지명 등의 명칭은 공모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5.2 공식 언어

- 공식 언어는 설계지침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홍보물, 질의 및 답변, 제공자료 및 제출도서(설계설명서, USB(휴대용 기억장치 등), 설계공모 응모양식 등)에 모두 적용하여야 함.
- 공식 언어의 사용은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어야 함.
- 국내 설계공모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 설계공모의 경우 공식 언어는 ‘한글’과 ‘영어’로 함.
- 한글자료와 영어자료 사이에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글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하도록 함.

5.3 공모 일정

1) 공모 전체일정 개요

- 부산시 설계공모 전체일정은 설계공모 사전준비기간, 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 사후기간으로 구분됨.

■ 설계공모 전체 일정

설계공모 사전준비기간	설계공모기간 (설계공모 공고 ~ 심사까지)	설계공모 사후기간	
- 사전준비기간 사업별상이	- 참가등록기간 사업별상이 - 설계공모기간 사업별상이 - 심사기간 등 약15일	- 전시기간	약7일
		- 계약기간	약10일

- 일반 설계공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전준비기간 약 60일, 설계공모기간 약 100일, 사후기간 약 15일 (총 175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설계공모 전체 일정 예시 - 북구소방서 건립 설계공모(시범사업, 사고이월 사업으로 긴급 공모)

구분	상세분류	일정	기간	업무
설계 공모 사전 준비 기간	사전준비기간	2019. 7. 18. ~ 2019. 9. 5.	50일	설계공모 방향 설정 설계공모 일정, 지침서 작성 심사위원선정, 대상지 현황 측정 등
설계 공모 기간	참가등록기간	2019. 9. 6. ~ 2019. 9. 16.	11일	설계공모 공고 및 지침서 배포 참가등록
	설계공모기간	2019. 9. 7. ~ 2019. 11. 4.	49일	현장설명회개최, 질의 접수 및 회신 공모안 접수
	심사기간	2019. 11. 5. ~ 2019. 11. 14.	10일	사전기술검토 1·2차 심사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설계 공모 사후 기간	결과발표 및 공개	2019. 11. 18 ~ 2019. 11. 24.	7일	당선작 및 입상작 공개 및 이의제기 접수 등
	시상식 등	2019. 11. 24. ~ 2019. 11. 27.	4일	시상식 준비 및 개최
	심사결과 통보	2019. 11. 18	1일	발주부서 통보
총합			121일	

2) 사전준비 및 홍보기간

- 사전 준비기간은 설계공모 방식의 결정, 설계공모 운영일정 확정, 설계지침서 작성, 심사위원 선정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참가등록 기간

- 참가등록 기간은 사전 준비기간, 실제 설계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등록기간이 길수록 많은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설계공모 기간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기간

- 설계공모 기간이란 공고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응모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90일(약 3개월)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제공해야 함, 이 기간은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기간을 포함함.

-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기간을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 하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현장설명회는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최함.
- 질의응답 기간은 일반적으로 현장설명회 이후에 실시하며 질의접수는 1~5일 정도, 질의 답변기간은 질의 마감 후 7일 정도 내에 시행하고 있음.
- 지명, 제한 공모의 일정은 일반 설계공모를 준용함.

■ 설계 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 예시

절차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설계공모 공고 전	30일 이상	30일 이상	30일 이상
등록마감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20일 이상)	20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의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심사결과 발표			
2차 공모안의 접수	/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
2차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의 전시	7일	7일	7일
총 설계공모기간	142일 이상 (최소 97일 이상)	157일 이상 (최소 117일 이상)	72일 이상

※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에 따른 예시이며, 설계공모방식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일정 예시(서울시 공모 일정)

공모명 주요일정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설계공모	평창동 미술복합공간 설계공모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설계공모
발주공고	2016.08.11	2016.11.04	2016.12.30
응모자등록기간	2016.08.11~2016.10.14	2016.11.04~2017.01.25	2016.12.30~2017.02.10
질의접수	2016.08.25.~2016.08.31	2016.11.21.~2016.11.30.	2017.01.23.~2017.02.03
질의회신	2016.09.09	2016.12.07	2017.02.17
작품점수마감	2016.10.27	2017.02.01	2017.03.23
작품심사	2016.10.31.~2016.11.07	2017.02.07.~2017.02.17	2017.04.03~2017.04.13
당선자 발표	2016.11.11	2017.02.20	2017.04.19
공모기간	93일(약3개월)	109일(약4개월)	111일(약4개월)

5) 심사 기간

- 심사기간은 작품 접수후 사전 기술검토일로부터 당선자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약 15일 정도에 걸쳐 시행함.

6) 공모안의 전시 등

-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에 따라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음.

7) 계약기간 및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5.4 참가자격

1)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은 공모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일반인, 학생의 구분 없이 모든 개인과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참가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르며,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 ※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포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의 경우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실제 설계행위가 아니므로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설계공모 참여가 가능함. 다만,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건축사가 당선된 후에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설계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참가등록 자격제한

- 부산시의 경우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참가제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차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한대상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아래와 같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

-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 운영위원회 등 설계공모와 관련된 위원들
-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 등록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한 참가자격 제한자

5.5 사전준비

1) 건축 설계공모의 기획 (상금과 보상비 등의 소요자원, 일정, 공모방식 등의 검토)

① 소요자원의 검토

-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 방식, 상금 규모, 제공 자료의 작성 수준 등의 내용과 질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예산 담당자는 기존의 유형별 사례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설계공모 시행 관련 공통된 소요예산 검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여비(국내, 국외), 회의비(일반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 조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 전산비, 연구재료비, 번역 비용)
- 공공요금(교통, 통신비 등)
- 홍보비(대외홍보비, 홍보물제작, 기념품 및 작품집)
- 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 심사비(심사위원 등) 상금, 시상식 비용
- 전시회비(사이버 및 순회 전시)

- √ UIA 규정에서의 소요비용 고려사항
- 상금
- 전문위원 및 기술위원의 사례비
- 위원회 비용
- 현장조사비
- UIA에 의하여 실시된 광고 이외의 대외홍보비
- 현장설계 관련자료(지형도, 사진 등)의 인쇄비
- 참가자 작품접수 비용
- 모든 출품작에 대한 심사 및 전시용 건물 임차비
- 설계경기 기간 중 보관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보험료
- 참가작품의 반환 및 모델의 의무적 반송비용
- 실제경기 참가자 카탈로그
- 비서 비용(통역, 번역, 통신비 등)

2) 설계공모 시행계획 수립

-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이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공모부서의 '설계공모 추진계획(안)' 수립 필요
-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작성
- 설계공모 방식이 지명공모, 2단계 공모로 결정된 경우 필수 추가 사항 : 추진근거, 해외 심사위원 초청 여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지명 초청비 지출계획, 지명후보자 선정 방식등
- 설계공모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 사항

-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 사업 개요(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
- 설계공모 개요(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
- 공모 추진계획(설계공모 범위, 설계공모 방식, 공모의 내용, 인센티브 등)
- 설계자의 설계권, 설계비, 보상비(시상 내용)
- 위원회 운영계획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소요 예산, 관련부서 협조사항, 예산 집행 방법 등)

3)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활용

- 부산시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예정 (2020.12월 예정)

① 목적

- 설계공모 정보관리 기능 강화 및 중복예산 지출 방지
- 일원화된 설계공모 접수창구 및 운영공간 마련
- 정보공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명성 강화
- 설계공모 정보 교류 공간 마련

② 기능

- 공공건축 설계공모 활성화
 - 통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부터 준공까지 실시간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자료 구축으로 부산시 건축정책 홍보 및 안내
 - 사이버 전시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
- 설계공모 운영관리
 - 진행중인 부산시 설계공모 전부 제공
 - 인터넷을 통한 공모전 참가접수 및 질의응답
- 홍보
 - 부산시 공공프로젝트 및 설계공모 소식 알림
- 설계공모 정보관리
 - 설계공모 담당자 공모전 등록 및 운영관리 지원
 - 완료된 설계공모 제출 작품의 설계도서부터 완공까지의 자료관리 지원

③ 활용방법

- 공모전 정보관리 기능
 - 공모담당자는 기존에 축적된 공모전 자료에 접근하여 개요, 운영방식, 일정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진행하고자 하는 공모전에 참고할 수 있음.
 - 입력정보 내용: 공모전 분류, 개요, 포스터, 공모일정, 심사위원, 수상정보, 설계설명서 작성, 공모전 첨부 자료 등록 등
- 공모전 운영관리 기능
 - 공모담당자는 부산시 지정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접수, 작품접수, 당선작 선정, 시행(공사자료/완공자료),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을 실시, 관리 할 수 있음

4) 기타 사전 준비시 유의사항

- 설계공모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가능여부, 법령이 정한 사전 절차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여야 함.

- 국내외 역량 있는 설계자들의 높은 참여율은 설계공모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 유도방안(예시) : 상금, 설계권, 초청 또는 지명 설계, 참가자 기념품, 작품집 배부 등
- 설계공모 홍보의 예산을 검토 할 때는 공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외에 사이버홍보 (홈페이지 제작, 배너광고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일간지 광고, 기념품, 작품집 제작 등 각종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공모 홍보의 예산을 검토하여야 함.
- 방침결정이나 위원회 운영 시에는 대상자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고 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5.6 설계지침서의 작성 및 제공 정보

1) 지침서 작성 목적

-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설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공모의 질을 높이고 공모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성 있고 우수한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발주기관은 공모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공하여야 함.
- 설계지침서는 발주기관과 설계공모 참가등록자간의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계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됨.

2) 지침서 내용

- 설계지침서는 공모의 목적에 부합함과 동시에 참가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설계지침서는 사업개요,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공모규정, 설계의 방향과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설계지침, 수상 및 사후 활용사항, 제공자료로 구성됨. 또한 참고자료로서 부록을 제공하기도 하며, 부록에는 일부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 각종 서식 등이 포함됨.

- 발주기관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조건을 설정하지 않게 하여야 함.
- 설계지침서는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아님.
- 제안공모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설계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계방향’, 제안요청 과제’등을 제시하여야 함.

■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공식언어
	설계공모의 단계 및 일정
	공고 일시
설계공모 주요일정	등록 일시, 방법, 장소
	설명회 일시, 방법, 장소
	질의응답 기간, 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 방법, 장소
	심사 일시, 방법, 장소
	결과발표 일시, 방법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설계지침	설계기본방향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관련 법규 적용기준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감점기준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수상 및 사후 활용 등 관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실적인정 기준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당선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
	기타 특별한 사항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 제안공모의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설계방향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과제, 수행계획 등)에 관한 작성 요령 등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도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요청 과제

3) 지침서 작성방안

- 지침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 경우에 따라 공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침에 대한 해석과 기술적 검토의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음.

4) 제공자료

① 목적

- 발주기관은 참가등록자에 대하여 설계공모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교부하여야 함.

② 제공자료 내용

- 대상지 자료는 참가자들이 대상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와 면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내외 설계공모의 사례를 보았을 때 대상지 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
 - 도면(국제공모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이미지 파일로 제공할 수 있음)
 - 그 외 참고자료(대상지 현황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장물현황, 기타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

-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는 전반적인 대상지 모습, 주요지역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외 참가자의 경우, 현장답사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도면은 대상지에 대한 지형도 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도면 등도 제공할 수 있음, 대상지 도면을 dwg 혹은 dxf 파일 형식의 수치지도로 제공하여야 함. 또한 광역적인 도면은 대상지의 위치와 광역적 관계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수치지도 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제공함.

- 국제공모의 경우 국가정보의 보안을 이유로 설계공모 대상지에 대한 디지털 자료 (dwg 혹은 dxf 파일 형식의 수치지도 등)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지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토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분석 자료는 참가자에게 대상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적절한 수준과 내용의 자료로 제공되어야 함.
- 제공자료는 발주기관의 설계공모 성격과 특성에 맞게 그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제작하고 배포하여야 함.
- 제공자료는 참가등록을 완료한 참가자에 한해 제공하여야 함.
- 질의를 통한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가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제공자료 내용

제공자료	관련사항
수치지형도	- CAD자료, GIS자료 등
이미지 자료	- 항공사진, 위성사진, 주요시점 현장사진, 대상지 관련지도, 모형사진, 기타 관련 사진등
동영상	- 대상지 관련 동영상
대상지 분석자료	- 지역여건,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부산시 관련자료	- 부산시의 특수 배경 및 도시, 건축적 목적 등
제출관련 서식자료	- 작품제출에 필요한 각종서식

■ 제공자료 상세내용

제공자료	상세내용
수치지형도	- 대상지의 크기나 축척에 맞는 수치지형도를 CAD, GIS 파일형식으로 제공
이미지 형태의 지도	- 설계공모의 주변현황 등에 관한 이미지 자료가 필요시 제공(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 설계공모의 대상지의 범위나 크기에 따라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제공
대상지 주요시점 사진	- 경관이나 조망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시 제공
대상지 동영상	- 국제공모의 경우 외국에서 현지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지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제공자료	상세내용
대상지 주요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 : 입지조건, 인접지구, 상위계획 및 주변지구 계획, 접근 및 교통(자동차, 철도, 대중교통, 보행자 동선 등), 주변환경, 기반시설, 경관, 소음, 대기오염 - 자연환경 : 일조, 기상(바람, 기온, 강수량), 수문(하천폭, 하상, 수질), 지질 및 지하수, 지형/지세, 토질/토양 - 인문환경 : 정치, 경제, 사회, 주거 및 생활양식, 토지이용, 기존시설, 인구 및 취락시설물 (주거용건물, 공동건물, 공업용건물, 축사, 공공시설, 집단근린상가, 공동묘지, 양수장, 군사시설, 기타), 병합처리시설(상수병합, 하수처리, 전력), 사적 및 유적지 - 기타요소 : 대상지의 주요 축(녹지 및 경관축등)
제출관련 서식자료	- 설계공모 참가를 위한 관련 서식자료를 제공(예:참가등록서, 각종양식, 질의서 등)
관련법규	- 공모참가자가 알아야 할 대상지내의 법규나 지침, 규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5.7 공모의 공고 및 등록

1) 입찰공고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설계공모 진행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여야 하는 정보들을 공고하여야 함.
- 참고자료 및 설계공모 관련 정보들은 설계공모 운영, 자료 보관, 공모 사후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및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cloud.eais.go.kr>)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① 공고 내용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1호 /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 발주기관이 공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
-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질의응답의 기간, 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배점기준
- 실격 및 감점기준
- 공모작품 접수방식
- 입상의 종류 및 권리, 보상 내용
-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계비는 총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② 온라인 공고처

-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공모 공고문을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cloud.eais.go.kr>)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설계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음.

■ 온라인 공고처 예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부산시	http://www.busan.go.kr/compe
조달청(나라장터)	http://www.g2b.go.kr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cloud.eais.go.kr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ira.or.kr
부산시건축사회	http://bira.kria.or.kr
한국건축가협회	http://www.kia.or.kr
새건축사협의회	http://www.kai2002.org
대한건축학회	http://www.aik.or.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http://www.auri.re.kr
한국도시설계학회	http://www.udik.or.kr
대한여성건축사회	http://www.kifra.or.kr
한국여성건축가협회	http://www.kifaonline.com

2) 참가등록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

- 건축 설계공모 참가 희망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하여야 함.
- 참가 희망자가 참가등록을 하는 행위는 설계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사항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음.
- 발주기관은 등록접수를 통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자 등록현황을 분석할 수 있음.

① 참가등록 접수

- 접수 일정
 - 각 설계공모에 따라 접수기간이 상이하며 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함.
 - 접수 일정은 공모 공고 시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함.

■ 설계공모 참가 접수기간 예시

공모 명칭	공모 방식	참가등록 일수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설계공모	국제 일반 설계공모 (1단계)	65일
부산복합혁신센터 설계공모	일반 설계공모	7일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일반 설계공모	7일
Young Architects' Competition 2016: 박차고 문화공간만들기	국제 제안 설계공모(1단계, 제한)	34일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현상설계 (삼풍상가, 남산순환로 구간)	국제 지명 설계공모(1단계)	12일

- 자료교부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에 한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해야 하며 일정 금액의 참가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음.

• 참가등록비용

- 공고 시 참가비용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불방법을 안내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함.
-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구할 수 있음.

• 참가등록내용 및 제출서류

-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참가자 관련 정보가 기입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등록 시에 건축사 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참가등록 방법

-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설계공모 참가희망자는 건축 설계공모 공고 시 안내된 첨부 양식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여 부산시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2020.12월 구축예정)를 통해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② 참가등록 자격

- 기본적으로 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의 종류에 따라 공고시 명시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전문적인 건축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격을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건축사로 제한하여야 함.
-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③ 참가등록자 분류 및 분석

- 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참가등록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참가등록자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추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시 참고 할 수 있음.
- 참가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현황
- 국내 및 국외 등록자 현황
-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 참가등록자 현황
- 직업별, 연령별 참가등록자 현황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목적에 맞게 분류 및 분석

3) 참가등록 사례

- 부산시 설계공모 참가등록 현황
 - 다음은 부산시 설계공모 참가등록 인원별 통계임.
 - 참가등록 일수는 등록 게시일부터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작품접수 팀은 참가등록 기간 내 공모안 접수를 완료한 팀을 의미함.

■ 부산시 설계공모 참가등록 현황

공모 명칭	참가 등록 일수	참가등록팀 수			작품접수팀 수			작품 접수 비율
		국내	국외	총계	국내	국외	총계	
부산복합혁신센터 일반 설계 공모	7일	24팀		24팀	7팀		7팀	29%
복구소방서 건립 일반 설계 공모	7일	25팀		25팀	9팀		9팀	36%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7일	31팀		31팀	9팀		9팀	29%
신평,장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7일	21팀		21팀	6팀		6팀	28%

5.8 현장설명회

1) 목적

-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에 대한 설명과 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함.
 - ※ 현장설명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니나, 참가자들의 우수한 설계안 도출을 위한 절차로서 부산시에서는 필수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현장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계공모일정
- 대상지 현황
- 설계지침 내용
- 질의응답 등

- 현장설명회 시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이후 질의응답 시의 답변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이는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2) 시행요령

■ 현장설명회 운영 상세 내용

시행구분	상세내용
일정	-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 홈페이지 등에 공지 -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 참가자 등록 이후 실시 - 대상지 답사는 일반적으로 현장설명회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참가자 개인적 답사
참석자	- 참가등록자에 한함
참가비용	- 무상
현장설명회 및 답사 일정 송부	- 설계공모지침서 및 홈페이지 공고 - 세부 일정계획 안내: 장소, 교통편, 출발지, 세부일정, 가이드, 통역 등
기타 고려사항	- 통역, 식사, 교통편, 가이드, 기타 준비물

3) 현장설명회 사례

- 다음은 북구소방서 건립 및 영도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사례임

■ 현장설명회 개요

	북구소방서	영도구 다목적 체육관
일시	2019년9월17일(화) 14:00~15:30	2019년12월26일(목) 15:00~16:30
장소	북부소방서 3층 강당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2층 동백홀
주요사항	설계공모 규정과 지침에 관한 설명 및 설계공모 참여 유도	



4)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 및 대상지 답사는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의 목적,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서나 기타 홍보물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국제공모의 경우, 외국 접수자들의 현장설명회와 답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동영상 및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차별논란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5.9 질의응답(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8조)

- 참가등록자는 설계지침서 등 공고 및 설계지침서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질의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을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이나 발주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함.
- 설계지침서에 질의와 응답에 관한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명시하여야 함.
- 질의접수 및 응답기간은 건축 설계공모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의접수는 건축 설계공모 공고 이후 또는 주최 측이 정한 기간에 가능함. 이 때 적절한 질의접수 기간은 1~5일(부산시 설계공모 평균 질의 접수기간 1일) 정도이며 건축 설계공모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 30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질의접수 기간 내에 받은 유사한 질의 내용들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답변하도록 하며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함.
-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번역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에 대한 응답은 질의접수를 마감하고 최소 5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접수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기관이 질의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응답 일시를 정하여 답변하도록 함.

■ 부산시 질의기간 및 방식 사례

공모사례	질의기간 (답변기간)	질의방식	응답방식
부산복합혁신센터 일반 설계공모 (2019년 시범사업)	1일 (5일)	E-Mail	홈페이지 E-Mail
북구소방서 건립 일반 설계공모 (2019년 시범사업)	1일 (5일)	E-Mail	홈페이지 E-Mail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일반 설계공모 (2019년 시범사업)	1일 (3일)	E-Mail	홈페이지 E-Mail
신평,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일반 설계공모 (2019년 시범사업)	1일 (2일)	E-Mail	홈페이지 E-Mail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소공원)조성	1일 (7일)	E-Mail	홈페이지 E-Mail

5.10 공모안의 접수

1) 공모안 제출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제출 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와 설계지침서에 명시된 작품접수 방법, 제출 일정 등에 따라 요구하는 제출도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공모안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운영위원회) 등은 사전기술검토를 통해 제출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 부산시 설계공모 공모안 접수시 제출도서 및 구비서류 목록 사례

공모 명칭	제출요구자료	
	추가자료	공통자료
부산복합혁신센터 설계공모	-	- 설계설명서 - USB
북구소방서 건립 설계공모	-	- 응모작품 제출서 - 심사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
우암부두 지심산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	-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	-	-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등

① 접수기간

- 공모안 접수 일정은 전체 설계공모의 일정과 제출 장소까지 운송기간, 도착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설계지침서에 공모안 접수기간과 제출 마감일을 명시하여야 함.

② 제출물의 작성기준

- 발주기관은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출도서를 최소한으로 적정수준에서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제출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선택하여 설계지침서에 공지하여야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
-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제출도서의 종류와 규격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스터디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됨. 위 상황을 위반 시에는 심사 시 결격 사유로 작용됨.
- 발주기관은 일반적으로 설계설명서, USB(고화질 이미지 및 디지털자료), 참가등록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지침서(공모 공고시)에 제출도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부산시 설계공모에서 요구하는 제출물 사례

공모사례	요구하는 도서의 종류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15부, USB, 응모작품 제출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참가등록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 등
북구소방서 건립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15부, USB, 응모작품 제출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참가등록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 등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설계설명서 15부, USB, 응모작품 제출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참가등록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 등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소공원)조성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15부, USB, 응모작품 제출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참가등록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 등
신명,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15부, USB, 응모작품 제출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참가등록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 등

③ 제출물의 종류

-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제출물과 제출물에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으며 제출도서의 종류는 설계공모의 목적 및 의도에 따라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

√ 설계도판

- 참가자의 계획안을 심사위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므로 설계공모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내용, 양식, 표현 방식이 제시되어야 함.
- 부산시에서는 현재 설계도판은 제출하지 않음.
- 표현기법(칼라표현, 음영 처리, 기호 사용 등), 표기(실명, 치수, 단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참가등록서

- 참가인증 규정에 대한 서약을 위한 양식으로 참가자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가 명기되어야 함.
- 또한 실적 인정을 위해 팀의 경우에는 팀의 대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과 법인이 참가할 수 있는 총수(인원)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함, 또한 추후 규정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참가등록서에는 설계 공모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포함하고 모든 팀원(혹은 개인)의 서명을 기입하도록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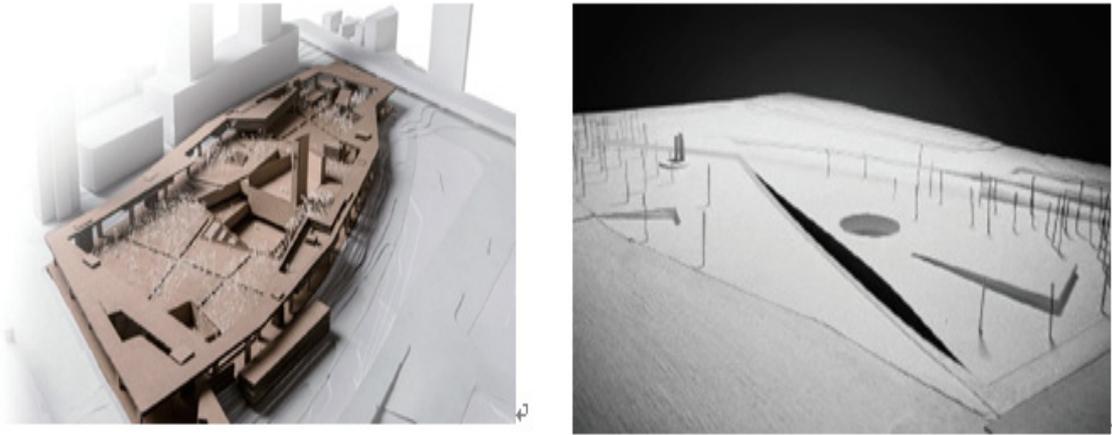
√ 설계설명서

- 설계안에 대한 부가 설명을 담아야 하며, 표지, 도면(설계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도, 다이어그램, 스케치, 기타 표현 등), 텍스트로 구성됨, 이를 통해 계획의도와 배경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규격(A3) 페이지 수, 제출권수, 좌철,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제안 설명서 기준 등을 규제할 수 있음.
- 개략적인 공사비 검토를 위해 시설별 면적을 산출한 면적표와 추정되는 예상 공사비를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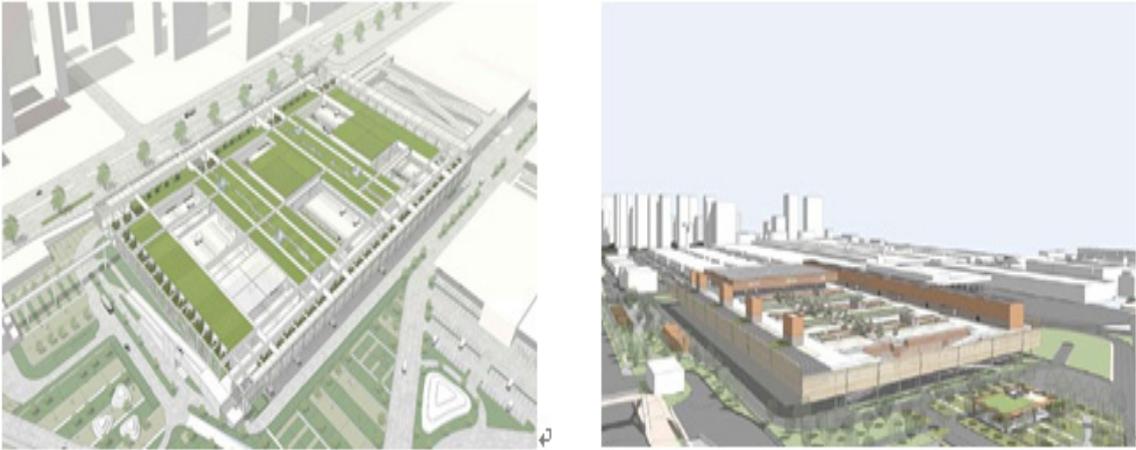
■ 일반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 류	비 고
설계도면	설계설명서에 기입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모형은 제출하지 않음
조감도 및 투시도	필요에 따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예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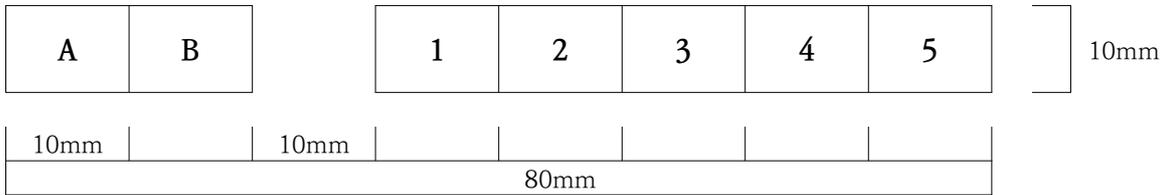


④ 익명성 유지방법

- 고유번호

- 최종심사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모든 작품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공모 참가자들은 참가자가 임의의 알파벳 2자(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제외)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된 PIN번호를 제출도서 중 1부에만 표기하여야 함. 이 PIN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함.
-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PIN번호란, 설계설명서의 표지 좌측 하단 공란, USB메모리의 겉면에 표기하여야 함.
-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이 백색 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바탕체 13p로 한다.

■ 고유번호 예시



- 고유번호의 관리
 - 참가자 등록 서류 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는 규격봉투 등에 넣어져 현상 공모의 심사종료까지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함.
 -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가등록 신청서에 동봉된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봉인봉투의 개봉을 통해서만 가능함.

2) 공모안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방법
 - 현재까지는 직접 접수만 가능함.
 - 전용 홈페이지 구축 후에는 부산시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2020.12월 구축예정)를 통해 작품제출이 가능함.
- 현장방문 제출방법
 - 작품접수 마감일 전에 공고 또는 설계지침서에 기재된 제출도서와 서류, 참가등록 시 배부된 접수확인증을 지참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함.

5.11 공모안의 심사

1)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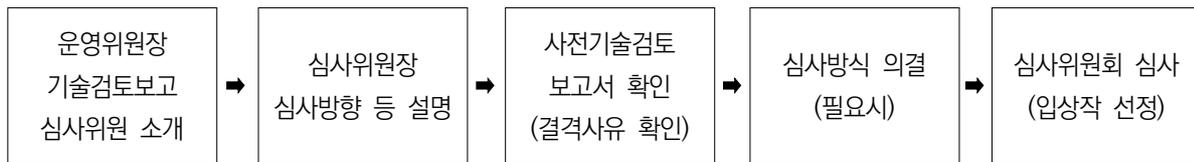
-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는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공모 참가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모의 목적에 부합한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발주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음.

- 심사관련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운영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 사전기술검토 및 본심사 진행을 위한 심사장소 확인
- 심사기준 및 심사방안 (운영위원회)
- 심사위원 서명부, 사전기술검토 체크리스트,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심사방식 의결서, 심사의견서 등 심사시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실시 할 경우 발표를 위한 장비 준비
- 다과 및 필기구 준비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 및 제14조, 제20조를 참고 바람.

■ 심사절차



2) 사전기술검토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 개최 이전에 제출된 공모안이 관계법령 및 설계공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임.
- 사전기술검토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작성
- 사전기술검토 시 다음 사항을 토대로 공모안이 설계공모 규정, 설계지침서, 관련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함.

-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기능별 면적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한 개의 업체가 2개 이상의 팀에 참여한 경우 등

- 작성된 보고서는 심사위원회 제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본 심사 전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에 참고하여야 함.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요 위반사항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건폐율 : 00%이하
	용적률: 000%이하
	건축선 후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대지안의 조경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설계의 경우
	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기타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본방법 미준수
	색채표현
	조감도 표현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호, 슬로건, 닉네임 표기 등)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개최

①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함.
- 발주기관은 접수된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1차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공개심사로 진행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심사 완료 이후에는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응모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줄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 시에 미리 알려야 함.
 - 설명 시간이나 질의 응답시간은 각각 10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따로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별 설계공모 심사평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

② 심사방식의 적용기준

- 심사방식은 1차심사에서는 5작품 이내를 선정하도록함
- 2차심사는 1차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도록함

③ 평가방식

- 평가방식은 자율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제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함
-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과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도록 함.
-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 대상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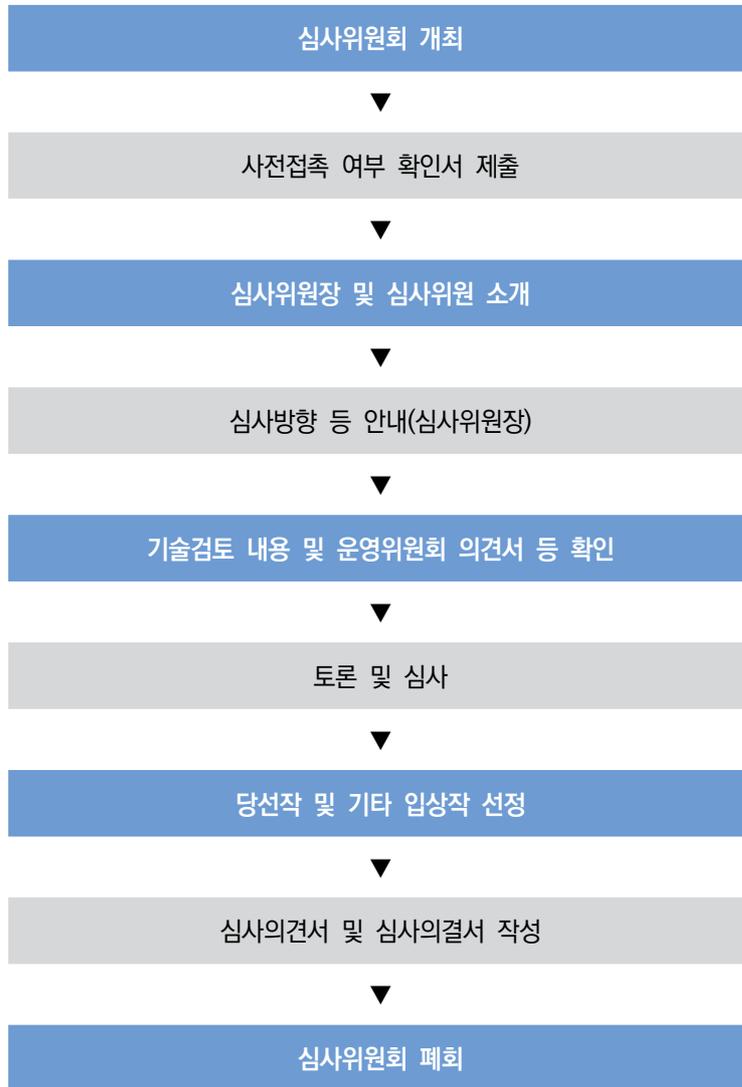
√ 투표제

- 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입상작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심사할 수 있음.

4) 2차 발표심사 운영

-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를 실시할 경우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공모안에 한해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 시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작품의 대표자(대리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음.
- 2차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시 공모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함.
- 공모안의 심사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나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심사위원과 발표자는 대면 할 수 있음.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공모안 당 각각 10분 내외로 제한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5) 심사위원회 진행 절차



6) 입상작 선정

- 심사위원회는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 만을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작품 이내로 함.
(지명공모의 경우 당선자 외 참가자를 기타 입상자로 함)

7)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발주기관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가 게재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 발주기관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 향응 등의 제공, 수수, 담합, 알선, 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음.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5조)

5.12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1) 계약 체결 절차 및 일정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의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설계계약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함.
- 계약 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8호)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설계 계약체결은 당선자와 이루어지며, 당선자는 계약 시 건축분야를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 관계 전문 기술분야의 중간 및 실시 설계를 업무영역에 포함하여 각 분야의 관계 전문 기술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통해 자격 및 면허를 보완하고, 계약상의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이때,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국내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여야 함.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 제시한 설계용역 비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시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보상금 지급

- 발주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건축가의 설계공모 참여환경 조성 및 저변 확대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창작동기 부여와 설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안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기타 입상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 설계공모의 상금은 국내 및 해외 설계공모의 사례, 규모, 공모의 위상, 작품수준을 반영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이 정함.
-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음. 보상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 기타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 1을 지급
- 기타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를 지급
- 기타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 기타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1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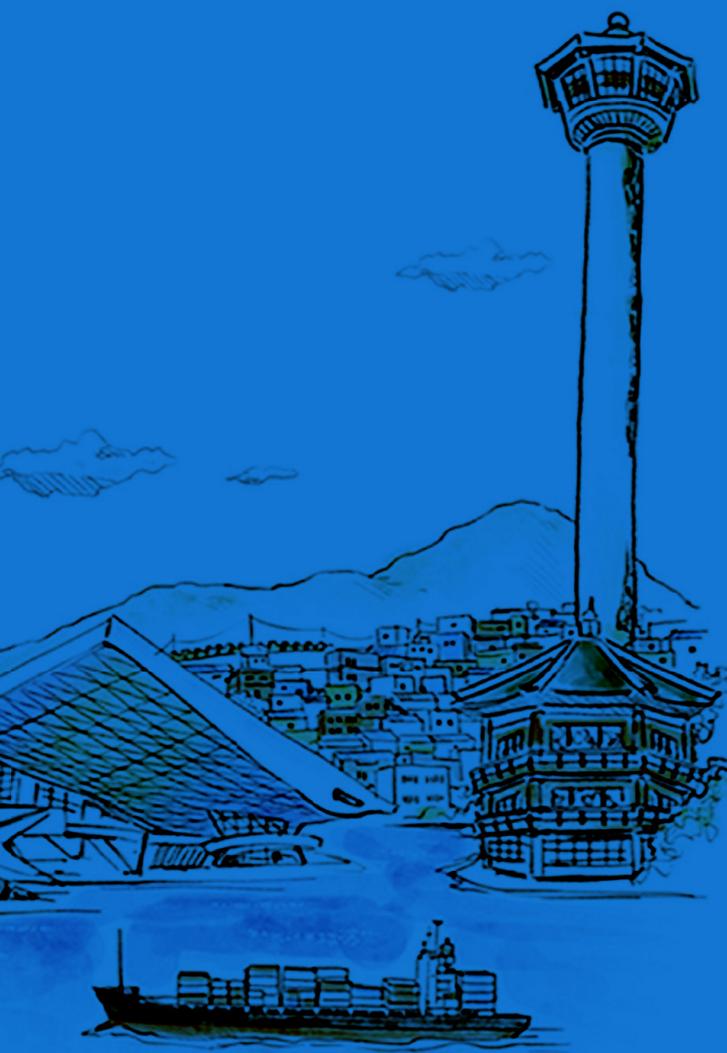
■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예시 (보상금액 1억원)

구분		지급 비율	보상 금액
참가자 수	보상대상 수		
2개 이하	1	보상 예산의 3분의1	33,000,000원
3개	2	보상예산의 10분의 4	4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30,000,000원
4개	3	보상예산의 10분의 4	4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3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2	20,000,000원
5개 이상	4	보상예산의 10분의 4	4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3	3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2	20,000,000원
		보상예산의 10분의 1	10,000,000원

- 발주기관은 공모안 작성 비용의 보상 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 사업계획의 변동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9호)
- 발주기관은 입상자가 확정되면 공모안의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단, 낙찰 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9호)

시
축
모
무
람
역
건
공
업
광
공
계
준
산
공
설
표
편
부





03

공공건축 설계공모 방식별 세부 운영절차

1. 2단계 설계공모 운영절차
2. 제안 설계공모 운영절차
3. 제한 설계공모 운영절차
4. 지명 설계공모 운영절차

01 2단계 설계공모 운영절차

1) 일정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3조)

- 공고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함.
-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음.

■ 2단계 설계공모 일정

2단계 설계공모	
1단계	2단계
30일 이상(최소 20일 이상)	60일 이상(최소 30일 이상)
90일 이상(최소 50일 이상)	

2)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① 1단계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4조)

- 제1단계는 전반적인 접근방법으로서, 1단계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위반사항이 서면으로 보고되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1단계 제출물의 종류 예시

단계	종류	비 고
1단계 공모	제안서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주변 환경 분석, 동선 및 배치개념, 콘셉트 디자인 등 포함

■ 제안서 예시

순 서	항 목	세부 사항	매 수
1	표지		1
2	계획개념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
3		주변환경 분석, 동선 및 배치개념	1
4		콘셉트 디자인, 스케치 등	2
5	기타	추가 제안사항(특화사항)	1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② 2단계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5조)

- 2단계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충분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함.
- 2단계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1단계보다 발전시켜 자세히 표현하거나 상세한 도면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2단계 제출도서는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의 규격을 따름.

■ 2단계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예시

단 계	종 류	비 고
2단계 공모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콘셉트 디자인 등
	모형	추가 요구 시 추가자료 비용 지급
	조감도	

3) 평가

① 1단계 공모의 평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6조)

-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검토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해당사업의 특성과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함.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개념 설정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 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위반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② 2단계 공모의 평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7조)

- 2단계 공모의 평가는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4) 공모비용의 보상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8조)

- 2단계 설계공모의 보상은 일반 설계공모의 보상기준을 준용함.
-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단계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참가자 각각에게는 제출물 작성비용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함. 이 때 추가로 지급되는 사례금 등은 시상되는 상과 별도의 보상임.

02 제안 설계공모 운영절차

- 제안 설계공모의 경우 해당 사업에 적합한 설계자의 능력과 설계안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시 고려하여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라, 제출물의 종류와 형식, 평가 방법 등에서 일반 설계공모와 차이점을 보임.
-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공모 운영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상 및 계약체결 등은 일반 설계공모 운영절차를 따름.
 - ※ 제안 설계공모 운영절차 내용 일부 작성 시 AURI,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 참조함.

1) 일정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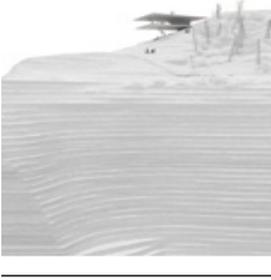
-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함.
- 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함.

2)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① 제안요청 과제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32조)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은 서울시에서 운영한 제안공모의 제안요청 과제 예시임.

■ 제안요청 과제의 예시

공모 명칭	주요 내용
 <p>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설계 제안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대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1: 구)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배치 및 층별 조닝개념, 입면개념, 동선개념 등 제시 - 과제 2: 구)한국은행 부산본부의 특수한 시설을 보존 및 구현하기 위한 기술제안 방안 제시 - 과제 3: 구)한국은행 부산본부와 현)근대역사관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조성 방안 제시 •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발주기관 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등 - 개별실 사용자 등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p>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설계 제안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을 고려한 채소2동 배치 및 부지활용계획을 제시함. 채소2동 건설기간 중 교통, 주차계획을 포함함 • 채소2동 시설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2동의 층별, 용도별 배치계획을 제시함.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시설 면적표의 프로그램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및 재구성이 가능함. 또한, 물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채소2동의 동선계획을 제시함 • 스마트 마켓 구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반입,반출 과정의 스마트마켓을 구현 방안을 제시함 •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장스팬 구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대공간 장스팬 구조를 제안함 • 명소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개방공간에 대해 지역사회와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명소화 가능 방안을 제시함
 <p>항신승인 채석장 전망대 제안 지명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대 입구는 통일동산에서의 진입을 권장하며, 입구로부터 전망대까지의 접근을 위한 보행 접근로 계획을 포함 - 전망시설은 주변 통일 동산과의 이용연계성을 고려하고 인접 낙산배수지로 확장 및 연결을 고려하여야 함 - 낙산배수지의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배수지 외벽으로부터 최소 8m이상 이격하여야 함.(단, 낙산배수지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8m이상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상부 25명 이상이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 및 시설계획을 하여야 함 -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망대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주변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함 - 전망을 위한 시설 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포함하지 않으나 설계자의 의도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들은 공사비와 법규내에서 포함할 수 있음 - 야간이용을 고려한 조명시설계획 포함 - 전망시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 공간 계획 모두 가능함 - 전망시설은 조립식, 가구식 구조를 권장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

② 제안공모 제출도서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33조)

-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작성하게 하도록 하여야 함.
-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안됨
- 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음.
 - 가구 재료의 질감 등 건축물의 장식 표현을 금지하며, 창과 문은 단선으로 개구부 형태만 표시하고 그 외 상세한 표현은 금지하여야 함.
 - 3차원 이미지는 단선으로 매스만을 표현하고 음영처리는 허용, 건축물의 면은 백색만 사용하고 대지, 도로, 옥상녹화 등 건축물 외 객체는 색 사용이 가능함.

■ 제안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 류	비 고
제안서	업무이해도,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 포함
포트폴리오	유사실적, 대표작품 등

■ 제안공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제출도서의 규격	
제안공모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설계자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함)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 제안도서 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독성 있는 글자체 권장

- 발주기관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함.

■ 제안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 (예시)

순서	항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최근 10년간)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하며, 발주기관이 발행하는 수행사실여부 확인서, 계약서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확인 등을 함께 제출)	- (별도제출)
3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업무 추진 전략)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 (사업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과제1, 과제2, 과제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해당 사업의 일정계획, 협업계획, 단계별 업무 수행 전략 및 작업방법 등 사업관리 방안)	1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의 경우, 평가방법(정성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1개 작품을 권장함.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담당건축사의 설계 능력에서부터 시공단계의 의도구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문이므로 가능한 준공 건축물로, 해당 사업과 유사한 건축물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응모자의 사업 및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로 A3 용지 1쪽 내외로 평가하도록 함.
-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히 정리, 정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여야 함.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하여 응모자 나름의 업무수행 목표 및 전략을 차별화하여 제시하도록 함.
- 건축행위별(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로 다른 업무수행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관련 법령 검토, 주요 고려사항 등을 단순하게 요구하면 심사에서 변별력이 없으므로 해당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응모자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조하여야 함.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심사위원의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과제를 A3 용지 5-6쪽 내외로 과제별로 1-2쪽, 3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하게 함.
-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 계획 요소 및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하도록 함.
- 필요시 건축계획 부문 이외에도 마스터플랜, 기계설비, 구조 등 건축관련 부문의 평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 과제 출제 시 일반 설계공모처럼 계획안 도면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계획 제시”라고 과제를 서술하지말고 “~을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개념 제시”라고 과제 결과물의 표현 정도를 한정하여야 함.
 ※ “~을 감안한 건축물의 배치개념 제시” 과제 아래,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언급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수행계획

- 과업 수행일정, 과업 수행체계, 타 전문분야와의 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수행 방식의 제안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 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 단순 스케줄표 나열 및 일정계획에 대한 작성을 요청할 시 심사위원의 변별력 있는 평가가 어려우므로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가 활용계획을 비롯하여 관계자 간 업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전략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에 대한 과제를 요구하여야 함.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절차 시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과 대응전략 등을 A3용지 1쪽 내외로 요구하여야 함.

3) 평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34조)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전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과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함.
-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 가능함.

- 제안공모는 사업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한 후 설계안을 만들어가는 대안적 설계공모 방식이므로 올바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이 필요함.
- 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심사위원을 미리 선정한 후, 과제 출제와 심사기준 및 심사 방식까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기를 권장함.
- 완성된 설계안이 아닌 아이디어와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므로, 과도한 설계안을 제출하는 제출물에 대한 감점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설계자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은 당선작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화의 기준이며, 사업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제안이 적합한 설계안 및 수행방법 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서울시 제안공모 평가의 예시

공모 명칭	평가 항목
서울시 수상레포트 통합센터 제안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모업체가 10개 이하시 채점제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10개 초과시 1차서면 심사 통과후 채점제와 투표제 병행한 2차 발표심사 실시 - 담당건축사의 역량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전평가 후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후 감점요인은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 합당한 점수(100점)에 산술평균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 차점자를 우수작과 가작으로 선정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 표결로 결정,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보상금의 평균 금액으로 지급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2동 제안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서면심사로 설계설명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입상자(팀) 선정 - 이미 제출된 설계설명서만을 이용하여 5팀 작품발표
창신승인 채석장 전망대 제안 지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건축사의 역량 등 정량적 평가(10점)는 사전평가 후 최종평가 점수에 반영 - 정성적 평가(9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후 감점요인은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 합당한 점수(100점)에 산술평균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 차점자 및 차차점자를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위원회 표결로 결정,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보상금의 평균 금액으로 지급

03 제한 설계공모 운영절차

- 제한 설계공모의 경우 신진건축사 및 특정용도에 대한 실적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모방식으로 이에 따라 제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물의 종류와 이를 평가하는 방법 등에서 일반 설계공모와 차이점을 보임.
- 그 외의 보상 및 계약체결 등은 일반 설계공모 운영절차를 따름.

1) 제한공모 참가자격 선정기준 (국토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 발주기관은 국내 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공공건축 설계발주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적극 발굴,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만 50세 미만의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로 시행할 수 있음.
- 자격제한으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국내에 개설등록(신고)한 자로서 만50세 미만의 건축사로 기타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② 특정용도에 대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 병원, 경찰서 등 특정용도의 공모일 경우에 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실적을 지닌 참가자에 한해 설계공모를 시행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제14조 제5항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군과 용도군 건축물 기준 대상 공모 건축물과 같은 시설을 설계경험이 있는자 이거나 공모 내 요구 규모 및 연면적과 유사한 크기의 건축물을 설계해본 자로 제한할 수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13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 제한 할 수 있음.

- √ 역량있는 건축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특정용도 관련 실적제한공모 예시

공모 명칭	요구규모/ 연면적	자격 제한
명일1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500㎡	공고일기준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어린이집 설계공모에서 당선작 1위 또는 우수작(2위)에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재건축공사	15,200㎡	연면적 5,000㎡ 이상의 교육연구 시설로 주용도가 도서관인 건물의 신축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설계	4,350㎡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설계용역규모(증축의 경우 증축된 부분에 한함)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제9호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에서 신/증축 관련건축물의 연면적 4000㎡ 이상의 설계 용역이 있는 업체
주캄보디아 대사관 청사 관전 신축 설계공모	연면적 4,665㎡ 청사 3,624㎡	공고일 현재 대사관을 설계한 실적이 있거나, 캄보디아 내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자

2) 일정

- 제한공모의 경우 일반 설계공모의 일정을 준용함, 단,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공모의 경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축소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계획내용이 복잡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공모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류 및 제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함.

■ 관련증빙서류 예시

구 분	관련증빙 서류
자격제한	- 관련 실적 증명서 - 참가자의 관련 건축물 포트폴리오 - 행정처분 증빙서
나이제한	- 참가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제한공모 제출도서는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의 제출도서의 종류와 기준, 제한 및 지명공모 운영방법의 제출도서를 준용함, 단,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음.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의 경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물을 간소화 할 수 있으며, 건축가의 역량에 변별력을 두기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설계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설계안에 대한 간단한 도면작업과 함께 개략 공사비 산출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제출물 예시

규격 및 구성	비 고
제출물	- 설계설명서에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설계도면과 설계 개념과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칼라표현이 가능함 - 과도한 3D투시도, Photoshop 작업등 금지, 간단한 스케치업(3D프로그램)정도로 표현함 - 필요에 따라 디지털 파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설계권이 부여되는 경우 개략공사비 산출서 제출
증빙서류	- 참가 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해야 함 - 필요에 따라 건축사 면허증 및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 평가

- 제한공모의 평가는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기준을 준용함.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특정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 할 수 있음.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의 경우에는 간소한 제출물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문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5인 정도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 시 질의응답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신진건축사 참여자가 5인 이하인 경우 참가자 전원에게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프레젠테이션 심사 방식 예시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프레젠테이션 심사

- 참가자 소개 5분(신진건축사의 역량 등을 확인)
- 작품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점수방식과 토론 방식 중 토론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공개심사 공고 인 경우 공개심사를 통한 수상작 결정

04 지명 설계공모 운영절차

- 지명 설계공모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건축가의 참여를 위하여 설계자를 지명하는 공모 방식으로 이에 따라, 참가자 선정방식, 운영절차, 일정, 제출물의 종류, 평가, 보상비용 등에서 일반 설계공모와 차이점을 보임.
- 그 외의 보상 및 계약체결 등은 일반 설계공모 운영절차를 따름.

1) 지명자의 선정방식

- 지명공모의 운영에 있어 지명자 선정방식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임.
- 지명자 선정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명자 선정은 추천에 의한 방식과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추천에 의한 지명자 선정 방식

- 운영위원회에서 국내외 전문가(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함.
- 발주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팀)를 검토하여 선정함.
- 지명자 추천은 다음의 기준을 참조함.

■ 서울시 추천에 의한 지명자 선정기준 예시

후보군 선정기준	지명자 선정
서울시 및 국제공모 입상작 이상 건축가	- 서울시 공모 수상실적을 기준으로 입상작이상 수상한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정하는 방법임 - 해당 후보군 내에서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함
공공건축가	- 공공건축가로 등록되어있는 건축가들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정하는 방법임 - 해당 후보군 내에서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함

후보군 선정기준	지명자 선정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들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정하는 방법임 - 해당 후보군 내에서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하여야 함
주요 협회 및 학회 추천	- 대한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등 전문적 협회들에서 해당 공모의 특성에 부합하는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을 추천함
운영위원회의 추천	- 운영위원회는 공모의 성격에 부합하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를 추천하여 추천 후보군에서 위원별로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을 위한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 초청건축가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는 지명자 후보군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천 후보군에서 위원별로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음

② 평가에 의한 지명자 선정방식

- 팀 구성, 참여분야 등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여 추천에 의한 지명 방식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명초청팀을 선정할 수 있음.
- 제출물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제출받는 RFP 방식(Request for Proposal)과 참가의향서를 제출받는 RFQ방식 (Request for Qualification)
- 2단계 설계공모 방식과 유사하나 결과물에 있어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의 경우 평가를 위해 1단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출물을 요구하는 반면, RFP, RFQ 방식의 경우 추가적인 설계공모를 수행할 지명초청팀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운영위원회는 공고를 통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지명자 선정에 활용함.
- 제안요청서 및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설계공모에 참가의향을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철회가 불가하며 참가자의 능동적인 참여로 접수된 제안요청서와 참가의향서만을 심사하므로 추천에 의한 지명 방식에 비해 선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낮음.

2) 지명공모 운영절차

- 지명공모의 경우, 단순 지명 선정방식보다 평가에 의한 지명자 선정방식인 RFP, RFQ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RFP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RFP, RFQ 공모방식 운영절차는 1단계 지명초청팀 선정과 2단계 설계공모 운영으로 구분됨.
- 1단계 지명초청팀 선정의 경우 공개공모를 통해 제안서 또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지명초청팀을 선정함.
- 2단계 설계공모 운영의 경우 1단계에서 선정된 지명초청팀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을 선정함.

■ RFP, RFQ 방식 운영절차



3) 일정

- 지명공모의 일정은 공고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 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참가의향서 모집을 실시할 시, 공고를 실시한 후 제안서 마감일까지 기간은 3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함.

4) 제출물의 종류와 기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19조)

- 지명공모의 제출물을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의 종류와 기준을 준용하는 동시에, 공모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자는 제출도서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지명 설계공모의 제출물 사례

사 례	제 출 물
난지 안내센터 신축 지명설계 공모	공모 참여신청서, 추정예산공사비개략내역서, A1심사용 설계도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설계공모	1단계 : 참가의향서(팀구성, 추진체계, 유사실정 등) 제출 2단계 : A0 가로 4매도판 1식, 설계설명서 A3 50쪽 등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현상 설계	1/300 도면과 3차원 이미지가 담긴 A1사이즈의 가로 6매 세트와 A3 25쪽의 설계설명서, 20분 발표자료 등
California Orange County Great Park	1단계 : 제안서 및 Request for Qualification 제출 2단계 : 디자인 개념과 주제, 통합 마스터 플랜, 교통 체계 및 사인시스템 전략, 단계별 개발 전략 등이 담긴 디자인 보드와 별도요약서, 제안서

5) 평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20조)

- 지명공모의 평가는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기준을 준용함.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특정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 할 수 있음.
- 지명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함.

6) 지명공모 보상금액의 지급

- 발주기관은 지명자에 대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지명공모 보상금액을 지급 하여야함.

- 발주기관은 지명자에 대한 지명공모 보상금액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 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당선자에게는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보상금액에는 현장설명회 참가비용, 제출된 작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세금은 한국의 세법을 적용함.
- 국외 지명자의 경우 항공료 및 체류비를 고려한 금액을 보상금액에 추가 지급함.
- 국외 지명자에게는 지급시점(시상식 이후 30일 이내) 환율로 환산하여 미화(USD)로 지급하며 국내 지명자의 경우 대표자 계좌로 원화로 지급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지명 초청자가 공모안을 제출한 경우에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지명비 산정 시 고려항목

공모 기간	제 출 물				국제/국내
비용 항목	제출물의 종류	사양			소요 비용 항목
인건비	설계도판	A0/A1	칼라/흑백	장수	여비
외주비	설계설명서	A3/A4	칼라/흑백	장수/부수	체류비
경비	설계도면집	A3	칼라/흑백	장수/부수	운송비
일반 관리비	모형	모형 사이즈	스케일	모형재료	기타 비용
기타 비용	3차원 이미지	유/무	칼라/흑백		

■ 지명비 지급 사례

공모명	공사비	지명인원	설계비	공모기간	제출물	지명비
 <p>세운상가 군 재생사업 공공공간 국제지명 현상설계</p>	33,600,000,000원	7팀	1,050,000,000원	90일	설계도판 (A1 6매) 설계설명서 (A3 25쪽, 10부) 심사자료 PPT (필요시 동영상)	국내 1인 30,000,000원 국외 1인 40,000,000원
 <p>서울시네마 테크 건립 국제지명 설계공모</p>	16,000,000,000원	6명	860,000,000원	90일	PT자료 (15분, 자유형식) 모형(자유형식)	1인 30,000,000원
 <p>밤섬 생태관 할 데크 지명 설계공모</p>	9,600,000,000원	4팀	310,000,000원	49일	설계도판 (A1 2매) 설계설명서 (A3 20쪽, 15부)	국내 1인 10,000,000원
 <p>서울역 고가 기본계획 지명 현상설계</p>	32,800,000,000원	7팀	1,372,000,000원	105일	설계도판 (A0 3매) 설계설명서 (A3 20쪽, 15부)	국내 1인 60,000,000원 국외 1인 80,000,000원
 <p>난지 안내센터 신축 지명 설계공모</p>	1,573,000,000원	5팀	79,948,000원	51일	설계도판 (A1 2매)	총액 4,000,000원

√ 제안요청서 모집 방식 (RFP :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서 제출을 통해 해당 공모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검토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출 및 검토절차 추가로 인하여 설계공모 운영기간이 증가됨.
- RFP 접수 시 제안요청서 작성내용
 - 제안요청서의 양식은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정해진 분량과 순서에 따라 A4종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함.

■ 제안요청서 양식 및 내용 예시

양 식	내 용
팀 구성 및 참여사 소개(1매)	- 각 팀 구성원 이름, 참여분야,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하여야 함
유사실적(2매 이내)	- 프로젝트 1개당 하나의 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현된 프로젝트와 공모 수상작만 포함 가능함
해당 사업 과제(기본 아이디어 포함)에 대한 비전 및 접근방향 (6매 이내)	- 모든 제안은 텍스트 및 다이어그램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가능함(색상 및 재료 표현불가) - 필요시 A3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A4 2매로 계산하여야 함
배포, 출판 및 전시에 대한 동의서(1매)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주최 측의 비상업적 용도로 배포, 출판 및 전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제안요청서 모집 방식(RFP) 운영 사례 예시

성취마을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방식	2단계(1단계 제안서 심사+2단계 작품 심사)		
예정설계비	2,022,434,000원		
예정공사비	-		
공모 기간	142일(1단계 37일)		
제출물	제안서(p7) 팀구성 마스터플랜 및 공동주택 설계실적 수행계획, 계획개념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5팀	전원	2단계 지명공모권
2단계	5팀	최우수 1개	설계권
		우수 1개	40,000,000원
		가작 3개	20,000,000원

■ 제안요청서 모집 방식(RFP) 운영 사례 예시 - 2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			
방식	2단계(1단계 제안서 심사+2단계 지명 공모)		
예정설계비	3,000,000,000원		
예정공사비	1,024,104,000,000원		
공모 기간	120일(1단계 26일)		
제출물	제안서(p6) 표지(p1) 팀구성(p1) 마스터플랜 및 공동주택 설계실적등 주요실적(p1) 수행계획(p3)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3팀	전원	2단계 지명공모권
2단계	3팀	전원	50,000,000원

■ 제안요청서 모집 방식(RFP) 운영 사례 예시 - 3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			
방식	2단계(1단계 제안서 심사+2단계 작품심사)		
예정설계비	3,949,946,000원		
예정공사비	260,000,000,000원		
공모 기간	124일		
제출물	참가의향서(p3) 표지(p1) 기본아이디어를포함한 3가지 과제에 대한 비전 및 접근방향(p2) 팀구성, 추진체계 및 유사실적(p3) 팀구성 및 추진체계(p1) 유사실적(p2)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3팀	전원	2단계 국제지명설계공모 지명권
2단계	3팀	전원	2단계 참가자 국내 40,000,000원 국외 50,000,000원 보상비 1~40,000,000원 차등 추가지급(당선자 제외)

※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의 경우 제안요청서 모집방식(RFP)임에도 참가의향서를 받음

■ 제안요청서 모집 방식(RFP) 운영 사례 예시 - 4

Guggenheim Helsinki Design Competition			
	방식	1단계 (제안서 심사)	
	예정설계비	-	
	예정공사비	€ 130,000,000	
	공모 기간	약 366일	
	제출물	제안서 (A1 사이즈 판넬 4장) 개요 및 이미지자료 개념설명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6팀	최우수 1개	
		가작 5개	€ 55,000

√ 참가의향서 모집 방식(RFQ : Request for Qualification)

- 공고를 통해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팀구성, 관련실적, 프로젝트 제안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여 지명초청팀을 선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임.
- 참가의향서 제출 및 검토절차 추가로 인하여 설계공모 운영기간이 증가됨.
- RFQ 접수 시 참가의향서 작성내용
 - 참가의향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해진 분량과 순서에 따라 A4 종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함.

■ 참가의향서 양식 및 내용 예시

양 식	내 용
팀 구성 및 참여사 소개(1매)	- 각 팀 구성원의 이름, 참여분야,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하여야 함
추진체계(2매 이내)	- 대표자를 비롯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 및 협력 체계를 다이어그램 및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함
유사실적(2매 이내)	- 프로젝트 1개당 하나의 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현된 프로젝트와 공모 수상작만 포함 가능함
기본 아이디어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비전 및 접근방향(6매 이내)	- 필요시 A3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A4 2매로 계산하여야 함
배포, 출판 및 전시에 대한 동의서 (1매)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주최 측의 비상업적 용도로 배포, 출판 및 전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참가의향서 모집 방식 (RFQ) 운영사례 예시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명초청팀 선정을 위해 참가의향서 모집 공고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팀을 접수받았으며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능력과 이해도를 평가하여 3-7팀을 선정함.
- California Orange County Great Park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40여개의 팀을 추천하여 지명통보하고 동시에 공고를 오픈하여 모든 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7개 팀을 선정함
- 행복도시 1~4 생활권 (B1, B4~5) 지명공모
참가의향서와 함께 제안서 혹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모전의 성격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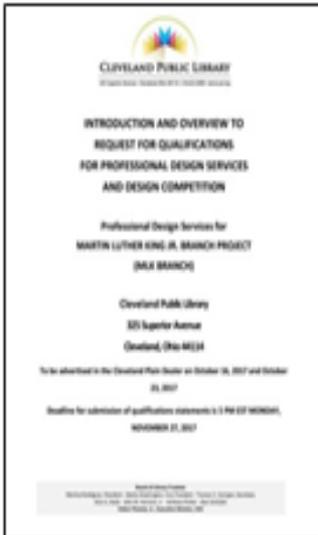
■ 참가의향서 모집 방식 (RFQ) 운영 사례 예시 - 1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방식	2단계(1단계 RFQ를 통한 지명초청자 선정 + 2단계 설계공모)		
		예정설계비	45,000,000,000원		
		예정공사비	1,200,000,000,000 ~ 1,500,000,000,000원		
		공모 기간	119일		
		제출물	참가의향서(p10 이내) 팀구성 및 주요 참가자 소개, 이력(p2) 용산공원의 비전과 목표 구현 계획 및 방향(p2) 참가자의 주요 관련 작품 소개(p6)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8팀	전원	2단계 지명공모권
		2단계	8팀	1등 1개	상패 및 후속 기본설계권
				2등 1개	상패 및 상금 200,000,000원
3등 2개	상패 및 상금 100,000,000원				
가작 4개	각 팀당 상패 및 참가지원금 50,000,000원				

■ 참가의향서 모집 방식 (RFQ) 운영 사례 예시 - 2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설계공모			
	방식	1단계 국내 지명초청 설계공모	
	예정설계비	14,000,000,000원	
	예정공사비	531,000,000,000원	
	공모 기간	112일	
	제출물	참가의향서(p6 이내) 팀구성 및 주요 참가자 소개, 이력(p2)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의 비전(p1) 참가자의 주요 관련 작품 소개(p3)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5팀	1등 1개	상패 및 후속 설계권
		2등 1개	상패 및 상금 100,000,000원
		가작 3개	각 팀당 상패 및 참가지원금 50,000,000원

■ 참가의향서 모집 방식 (RFQ) 운영 사례 예시 - 3

Cleveland Public Library			
	방식	2단계(1단계 RFQ를 통한 지명초청자 선정 + 2단계 설계공모)	
	예정설계비	-	
	예정공사비	총비용 \$10,000,000	
	공모 기간	약 215일	
	제출물	참가의향서 참여사 개요, 보험증서 프로젝트 이해, 자격 경험, 팀구성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사의 장점	
구분			보상내역
단계별 보상	지명수	보상대상 수	
1단계	8팀	전원	2단계 지명공모권
2단계	3팀	1등 1개	\$20,000
		2등 1개	
		3등 1개	

부산건축선언

건축은 시민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 미래성 / 공공성 -

건축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과 장소로 만들어집니다

- 보편성 / 협력성 -

건축은 자연의 풍경과 역사의 이야기를 담으려 합니다

- 지역성 / 지속성 -

건축은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배려합니다

- 안전성 / 일상성 -

건축은 세계 속의 고유한 문화 환경을 창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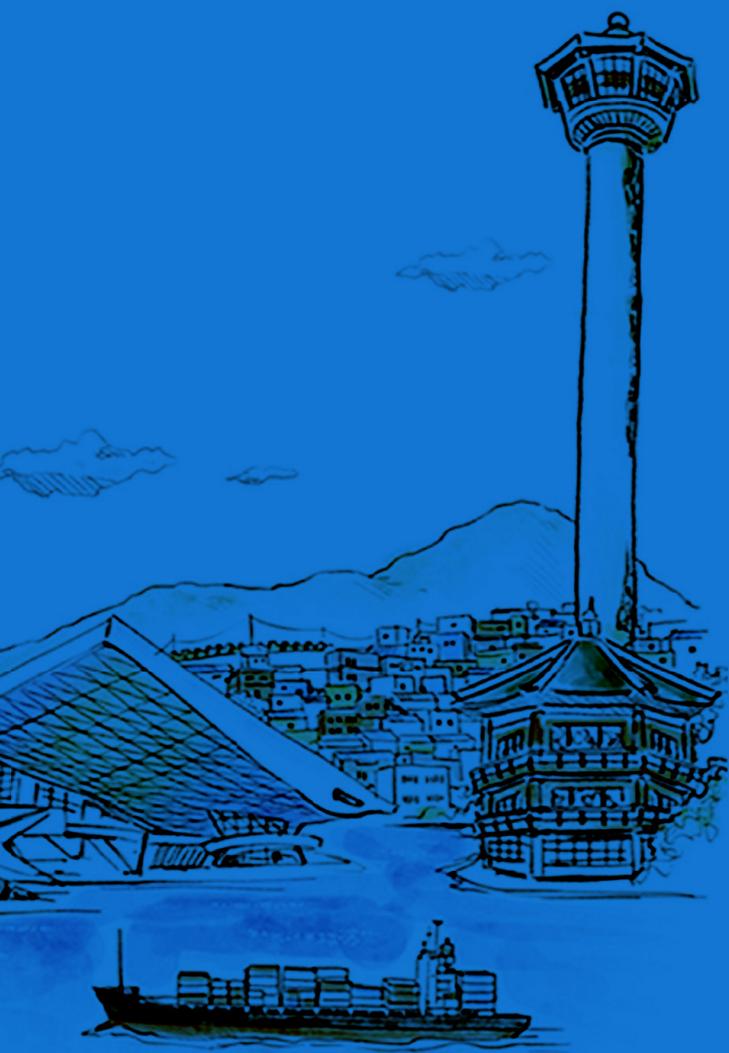
- 국제성 / 창의성 -

이를 위해 부산의 건축은 바다와 산과 강이 도시와 하나가 되는
열림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
축
모
무
람
역
건
공
업
광
공
계
준
산
공
설
표
편
부





04
부 록

건축 설계공모 체크리스트

주요항목		결정			관련서식		
1	공고	공고문	작성확인				
		공고처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조달청(나라장터)				
			기타 ()				
공고기간	00 . . ~ 00 . . (일 동안 공고함)						
2	등록	접수서류 검토	(접수서류 확인 등)			서식 1 ~ 서식10	
		등록명단 작성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 작성)				
3	현장 설명회	장소 대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개소 이상의 장소 대관)				
		발표내용 확인	(추가 제공자료, 발표내용, 발표자 등)				
		참가명단 확인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참가여부 확인함)				
4	질의응답	서면질의서확인	(유사한 질의 등을 분류하여 질의사항 정리)			서식 2	
		답변서 작성	(필요 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함)				
		회신	홈페이지 게시, 개별 발송				
5	공모안의 접수	제출도서				서식 3 ~ 서식 3-8	
		제출도서 확인	USB				
			기타 구비서류				
제출명단 작성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제출여부 확인함)						
6	사전기술 검토	심사위원 제척여부 확인	(기 작성된 제출명단을 확인, 접수번호 및 심사번호는 미노출) 예비심사위원 (심사위원 제척 시)			서식 3-2 ~ 서식 3-6	
		설계지침 위반사항 확인	(법규, 면적표, 주요 설계지침 등 검토)				
		사전검토서 작성	(제출도서 별 1부 작성)				서식 4
		심사시나리오 작성	(필요 시)				
7	심사	평가 방식	투표제	(심사에 필요한 서식 준비)		서식 5-3 ~ 서식 5-9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장소 대관			
				발표자 대기장소 확보			
				진행인원(심사진행, 발표자안내, 심사진행과정 기록등) 확인			
		심사결과 취합			서식 5-10		
		심사결과	심사의결서(심사위원 전원 서명)			서식 6-2	
			심사평가서 확인(심사위원 작성)			서식 5-11	
		기타 서류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5-12	
			사전접촉 해당여부 확인서(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5-1	
			서약서(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6-1	
심사위원 관련 정보 확보 (심사비 지급용으로 이름, 소속, 직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서식 5				
8	결과발표	심사결과 안내	부산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별통보 (공문)				
		상급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심사비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공모작 반환	(요청 시 의무사항 아님)				
		결과 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전시회		

관련 서식 목록표

구분	서식명	대상		
		참가자	심사위원	운영위원
참가등록	1	참가등록신청서	○	
	1-1	서약서	○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1-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1-5	공동응모협정서	○	
	1-6	대표건축사 선임계	○	
	1-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1-8	사용인감계	○	
	1-9	보안각서	○	
질의응답	1-10	청렴서약서	○	
	2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	○	
작품접수	3	응모작품 제출서	○	
	3-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3-2	건축개요	○	
	3-3	층별 면적표	○	
	3-4	공간별 면적표	○	
	3-5	주요 법규 검토서	○	
	3-6	추정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	
	3-7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	
기술검토	3-8	심사위원 기파·회피 신청서	○	
	4	기술검토서		○
심사	5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5-2	심사위원회 의결서(심사제외 작품)	○	
	5-3	작품 심사의견서(1차 심사용)	○	
	5-4	심사위원 투표(1차 심사용)	○	
	5-5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 심사용)	○	
	5-6	2차 심사대상 선정(1차 심사용)	○	
	5-7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	
	5-8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	
	5-9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	
	5-10	최종 심사결과표	○	
	5-11	최종 심사보고서	○	
기타	5-12	제척 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심사위원용)	○	
	6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
	6-1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
	6-2	심사(운영)위원회 의결서		○
	6-3	작품 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첨결과서		○
	6-4	참가의향서 접수증	○	
	6-5	참가확약서	○	

[서식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p>상기인을 당 업체(개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립」 설계공모 응모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업체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부산광역시장 귀하</p>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p>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업체명 : 대표자 : (인)</p>			

-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or위임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위임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개인의 경우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재직기간 등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서식 1-5]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건립" 설계공모를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2.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대표업체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 or 건축사 구성원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 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건립」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8] 사용인감계 신고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부산광역시(총괄건축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2] 건축개요

건축 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개요	건 물 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 도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m ²		
	연 면 적	m ²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m ²		
	건축면적	m ²		
	건 폐 율		%	법정 : % 이하
				법정 : % 이하
	용 적 률		%	법정 : % 이하
				법정 : % 이하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조경면적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주차대수 근거 제시		
오수처리 시설				
주요설비 개요				
기타				

[서식 3-3] 층별 면적표

층별 면적표

	층 별	면 적 (㎡)	주요 공간 또는 실별 면적(㎡)
지 상			
	소계		
지 하			
	소계		
	합계		

※ 계획안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3-5] 주요 법규 검토서

주요 법규 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항 목	법 정 기 준	적법 여부
		설 계 내 용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 항목은 예시이며 응모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서식 3-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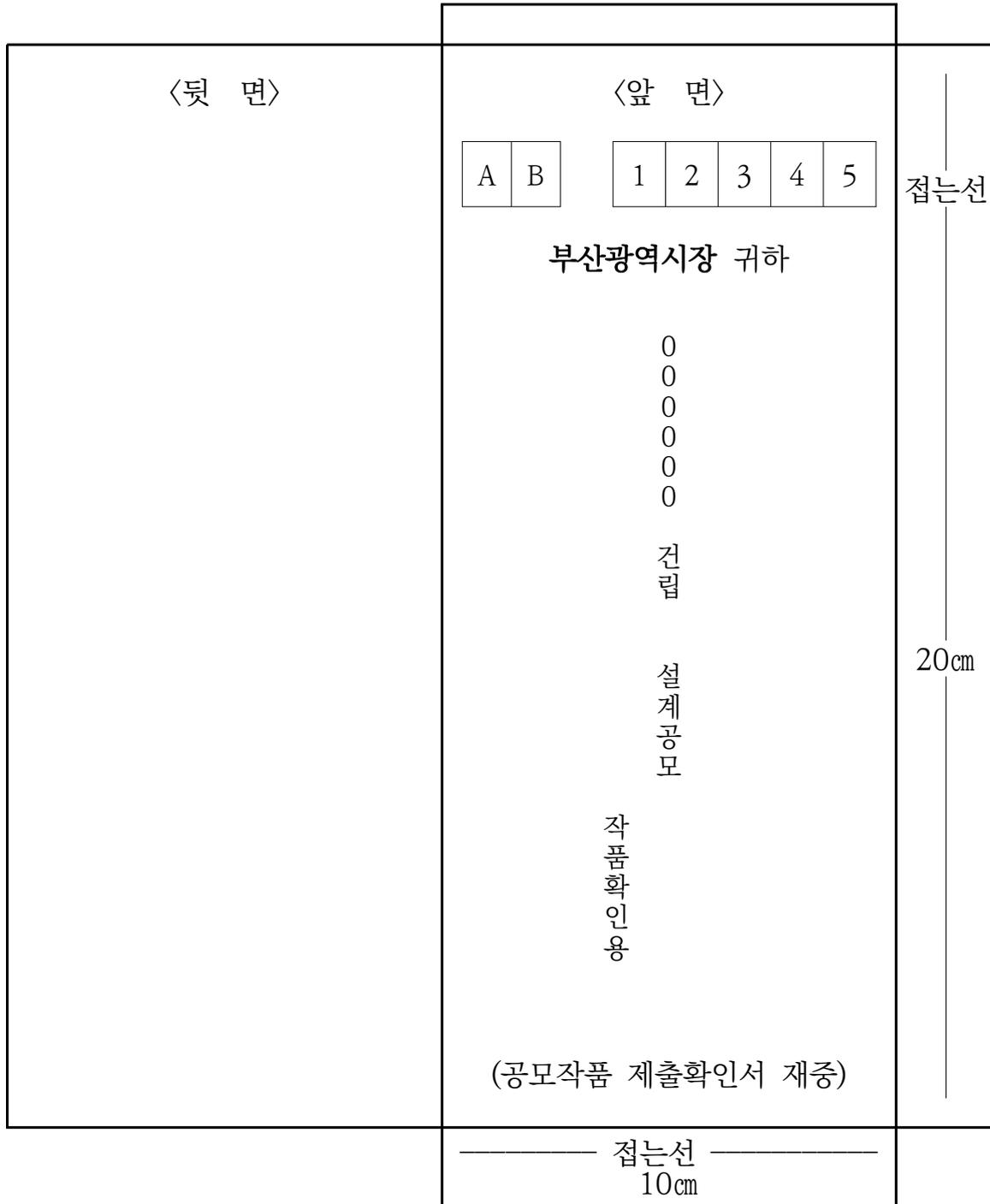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당 금액	구성비 (%)
건축 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부대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경비 (30% 이상)				
부 가 세 (10%)				
총 공사 금액				

[서식 3-7]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건립 설계공모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서식 4] 기술검토서

○○○○○건립 설계공모 기술검토서

심사번호 :

구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공모지침검토	연면적, 층수 허용범위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실별 면적 허용범위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작성기준 검토	제출도서 누락		[]적합 []부적합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여부		[]적합 []부적합	
설계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 []부적합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적합 []부적합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적합 []부적합	
		건축물의 용적률	[]적합 []부적합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적합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부적합		
실격기준 검토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적합 []부적합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법규위반		[]적합 []부적합	
	건축계획의 심각한 과제 누락		[]적합 []부적합	
	대상 부지 경계·면적 초과, 임의 조작		[]적합 []부적합	
	투시도/조감도의 과도한 왜곡 여부		[]적합 []부적합	

기술검토 의 견	
실격의견	
기타사항	

. . .

○○○○○센터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건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서식 5]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수당 지급 및 세무신고 등 과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회의수당 지급 및 세무신고 등 과세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2. 수집 및 이용(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및 수당 지급 자료(개인계좌 정보 등) 등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보유기간

- 국세청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 세무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분쟁대비기간(5년) 동안 이용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관계 등의 확인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함

4. 기타

- 상기 개인정보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식 5-3] 심사위원회 의결서2

심사위원회 의결서[심사제외 작품]

□ 사 업 명 :

심 사 기 호	심사제외 사유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3] 작품 심사의견서(1차심사용)

작품 심사의견서[1차 심사용]

□ 사 업 명 :

심사기호	심사의견	심사기호	심사의견
A		J	
B		K	
C		L	
D		M	
E		N	
F		O	
G		P	
H		Q	
I		R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4] 심사위원 투표(1차심사용)

심사위원 투표[1차 심사용]

□ 사 업 명 :

심사기호	투표	심사기호	투표
A		J	
B		K	
C		L	
D		M	
E		N	
F		O	
G		P	
H		Q	
I		R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5]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심사용)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 심사용]

□ 사 업 명 :

심사기호	결 과	심사기호	결 과
A		J	
B		K	
C		L	
D		M	
E		N	
F		O	
G		P	
H		Q	
I		R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6] 2차 심사대상 선정(1차심사용)

2차 심사대상 선정[1차 심사용]

□ 사 업 명 :

심 사 기 호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7]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 사업명 :

심사기호	투표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8]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 사 업 명 :

심 사 기 호	결 과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9]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 사업명 :

심사기호	
결선작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0] 최종 심사 결과표

최종 심사결과표

□ 사 업 명 :

심사결과	심사기호	편번호	업체명
당선작			
최우수			
우수			
장려			
가작			

○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 인	심사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1] 최종 심사평가서

최종 심사평가서

□ 사 업 명 :

입상작품	심사기호	평가사유서
	고유번호	
	업 체 명	
당 선 작		※ 발주청을 위한 제언
입 상 작 (최우수)		
입 상 작 (우 수)		
입 상 작 (장 려)		
입 상 작 (가 작)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2] 제척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제척 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용)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5항의 제척사유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저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사유)	비 고
없음() / 있음()		

. . .

00000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회 구성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소속	직 위(급)	성명
1	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3	운영위원			
4	운영위원			
5	운영위원			

1.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습득한 공무상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의 운영에 있어 관계업체와의 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의 심사후에도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4. 본인은 보안사항 위반 등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5. 심사보고를 위한 기술검토는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상기사항을 확인하고, 『 건립』 설계공모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2] 심사(운영)위원회 의결서

심사(운영)위원회 의결서

□ 사 업 명 :

의 결 내 용
안전:

○ 심사(운영)위원 서명

심사(운영)위원 성명	날 인	심사(운영)위원 성명	날 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3] 작품 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첨결과서

작품 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첨결과서

□ 사 업 명 :

발 표 순 서	심 사 기 호
1	
2	
3	
4	
5	

년 월 일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6-4] 참가의향서 접수증

참가의향서 접수증				
PIN 번호				
제출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휴대전화:)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접 수 인
<p>○○○ 설계공모</p> <p>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확인증을 교부합니다.</p> <p>년 월 일(요일)</p>		
<p>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직급:</p> <p>성명:</p>		

[서식 6-5] 참가확약서

참 가 확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참가를 확약하며 공동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일)

대표사:

업체명		연 락 처	
주 소			
대표사	(인)		

참여사 명단

분야	회사명/대표자	자격 및 면허사항	연락처

※ 참여하는 각 사의 과련 증빙서류를 주최자가 요구할 시 제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 귀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19.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9.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자. 배점기준
-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파. 실격 및 감점기준
-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 바. 시설별 면적
-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 ⑧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⑩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⑥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심사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⑧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⑨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등은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와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외의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절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①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②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 ②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공모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계획개념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1
3		○ 주변환경 분석 ○ 동선 및 배치개념	1
4		○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2
5	기타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6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별표 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수
1	표지		1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 (별도제출)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 등	1
5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별표 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34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 트폴리오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비고〉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에 관한 평가서류 확인, 평가점수 계산 등 세부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

부산광역시 조례 제6135호 [공포 및 시행 2020.05.27.]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산건축상)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활성화)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 운영조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1.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건축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분야 등 건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9조의3제7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및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재검토
3.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사전검토 후 건축물 등의 착공 전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공고 전에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정 2020. 6.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등) 이 기준은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국토교통부의「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문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설계공모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자치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 ① 신축·증축 및 개축 행위 등
- ②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⑤ “공공건축심의회”란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건축기획 적정성,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여부,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주관부서”란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사업(용역)발주, 계약, 사업(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공모부서”란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를 말한다.

제2장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8~10인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2~3인을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3.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4.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8~10팀별로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④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각 사업별 순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모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 발주부서, 공모부서 담당 공무원은 행정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 및 관리한다.

⑥ 공모부서 담당 팀장은 간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조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설계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설계공모 완료까지 설계공모 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설계공모 완료 후 필요시 임시로 운영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설계공모 추진일정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원활한 사업추진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설계공모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들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지침서, 질의 답변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날인후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기술검토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은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설계지침서 작성
 - 1. 현장조사,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 내용 반영 검토 등
 - 2.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명확한 방향성 등 제시
- ② 설계공모 운영 일정 작성
- ③ 현장설명회 운영 및 질의 답변서 작성 등
- ④ 공모안에 대한 사전(기술)검토
 - 1. 설계지침서, 관련 법규 등 적정 여부 검토 등
 - 2.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참여업체에 메일(유선) 또는 직접 확인
- ⑤ 설계공모 심사기준 등 작성
 - 1. 설계공모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 작성
 - 2.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의제 선정
 - 3.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
- ⑥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① 운영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설계지침서 작성 및 기술(사전)검토에 따른 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설계공모 시행공고

제9조(시행공고)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ompe>)에도 게재한다. 단, 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설계공모를 부산광역시에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시행공고 한다.

제10조(등록)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설계공모 참여설계자 범위)

- ①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자는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것을 인정한다.
- ②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③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계약체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국가 간 상호 FTA 양허 기준에 의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상업적 주재)만이 국내에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계약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면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④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 중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 제4조의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야 하며(공동응모자 포함)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제출도서의 간소화)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설계공모안 제출도서의 범위) 제출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회적 비용의 경감, 지속 가능한 정책 부응 등을 감안하여 설계작품 심사를 위한 최소한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설계지침서에 추가 할 수 있다.

- ① 설계설명서

1. 기본도면 : 조감도 또는 투시도 3컷 이내,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2면 이상, 단면도 2면 이상, 기타 필요한 도면
2. A3(420mm×297mm)크기의 백상지(120g/㎡이하)에 가로로 작성하며, 칼라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불가)
3. 인쇄방법은 전산출력으로 하되 단면으로 인쇄하여 가로 좌철 한다. 제출도서 제본은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4. 전체 매수는 30쪽 내외로 작성하여 총 15부를 제출한다.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함)
5.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표현기법에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허용한다. 단 건축물의 스케일과 비례 등이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재질과 표현 방법이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그리고 제출된 이미지가 제안서의 평면, 입면 단면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리 될 수 있다.

②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격(mm)	수 량	비 고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A4(210×297)	1식	참가등록 시 교부
응모작품 제출서	A4(210×297)	1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210×297)	1식	
설계설명서	A3(420×297)	15부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A4(210×297)	1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A4(210×297)	1식	
USB	-	1식	설계설명서 파일 포함 (PDF 형식으로 포함)

- ③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에 필요할 경우 제출도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출도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설계자간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질의 접수 및 회신)

- ① 참가 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공고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공모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그 답변 내용을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공고시 별도로 통보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질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공모안의 제출)

-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③ 공모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제4장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심사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의 20% 내외의 예비 심사위원을 둔다.
- ②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필요시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은 운영지침 제10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예비위원)의 2~3배수를 추천하고 정책실현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심사위원 및 예비위원을 추천하고 발주기관은 위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3.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4.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제17조(심사위원회 운영)

- ① 공모부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1차심사는 비공개, 2차심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 ③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설계공모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 ① 1차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위원 과반의 의결을 거쳐 심사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자유 토론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2. 운영위원의 심사기준 및 의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3.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② 2차심사는 공모 참여업체 및 일반인에게 공개로 진행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1. 2차심사의 프레젠테이션 설명자료는 설계응모 시 제출한 설계설명서로 제한한다.
 2. 응모업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심사하고 투표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③ 공모부서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역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 회의, 심사, 결정을 한다.

① 심사위원은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 전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기술검토 및 심사방안 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설계공모 작품 심사 및 질의 응답

1. 기술검토의견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 검토 및 심사 반영

2. 토론을 통한 공모안 분석

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심사평가서 등 작성

⑥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⑦ 그 밖에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공모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를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comp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공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심사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 비용을 보상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제23조(세부기준 등) 공모부서는 운영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기타사항 등)

- ①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공모안은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0. 6.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예산확보,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발주부서”란 사업 전체업무 중 사업(용역)발주, 계약, 사업(용역)감독 등 특정한 업무 일부만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의부서”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자문) ①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기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조례 제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 기피 또는 회피하고자 할 경우 심의 개최 전에 [별지 제4, 5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피·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척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기피 : 주관부서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회피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의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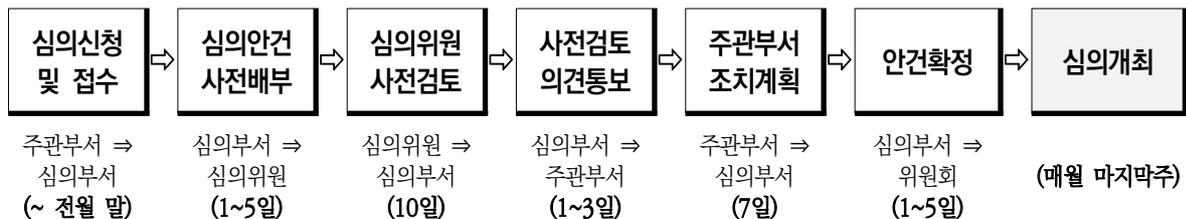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신청 및 절차

제7조(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주관부서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심의부서에 심의 신청하여야 하며, 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반드시 사전검토 완료 후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주관부서는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심의개최 전일까지 심의부서에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
- 심의부서는 신청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안건 사전배부 전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 심의부서는 심의 접수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5조 제3호에 따른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심의부서는 참석 예정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전 심의 자료를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은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한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가 이를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주관부서는 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하여 건축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치계획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해 심의위원은 당초 제출한 사전검토 의견서에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의견을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없다.
7. 심의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도서) 주관부서는 심의신청 시 [별지 제1호]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 설계공모 지침서단, 부산시에 설계 공모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조직에서 작성한 설계공모 지침서를 말한다.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3.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받은 경우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단, 반영여부 및 조치사항 포함)
4.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해당 타당성 조사서 및 결과서
5.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비대상의 경우 : [별지 제4호]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제9조(현지조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는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설계용역 발주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부서의 담당팀장(사무관),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법 제30조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록관리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 일시·안전·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 종류는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 심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 등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부서는 심의(자문)시 부여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의 종류

의결 종류	내 용	비 고
원 안 의 결	상정 안전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권장사항 제시 가능
조건부 의 결	상정 안전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부서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재심의 의 결	상정 안전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부 결	상정 안전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전검토 의견서 (2000년 제00회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안전명 :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기획의 적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의 내용
과업지시서 적정성		
설계지침서 적정성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 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 센터)	법 제23조 제2항에 따 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 우에 한함.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 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시 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 한함.
기 타		

2020. . .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서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2000년 제00회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안 번호	안건명	심의의견	심의결과			
			원 안	조건부	재심의	부 결
1	STEM 빌리지 건립계획					
2						
3						
4						
5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함.

2020. . .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서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회피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회피 신청서 (2000년 제0회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안건

-
-
-

□ 회피사유

-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상기 안건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자진 회피하고자 합니다.

2020. . .

심의위원 : (서명)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 0000 사업 -
사업 계획서

0000. 00.

제출기관(부서)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음영이 없는 부분(흰 바탕)에 해당 내용을 기재(편집·수정 가능)
2. 음영 부분()은 편집·수정하지 않음

구 분	현 황	대 응
경사·고저		
지반상태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 등)	음영이 없는 부분 (편집 가능)	
부지정리 완료여부		
기타		

음영부분
(편집불가) ←

3. 신청서 분량(페이지)은 편집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나, 용지 규격(A4), 여백, 글자크기는 기존 양식을 유지
4. '사업계획서'와 '첨부자료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
 - 첨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1 사업추진 개요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목적	사업 추진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위치	00구(군) 00동 00번지 외 0필지(부지면적 : 0,000㎡)
	규모/용도	0개동, 지하0층/지상0층, 연면적 000㎡, 주용도
	사업기간	(작성기준) 사업추진방침 확정일 ~ 공사 준공일
예산 현 황	총 사업비	- 총 000,000백만원(국 000백만원, 시 000백만원, 구(군) 000백만원) · 설계 000백만원, 공사 000백만원, 감리 000백만원, 기타 000백만원 (기타 : 부지매입 000백만원, 기타부대비 000백만원)
	확보현황	신청일 기준 예산(사업비) 확보 관련 현황·계획·대책 등 기술
절 차 이 행 현 황	건축기획	[] 공공기관 (직접수행) [] 기본구상·계획·타당성 용역 [] 법 제22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
	사전이행	[] 사업추진계획(방침) [] 사업추진 TF팀 구성 [] 총사업비 심의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총괄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조사·평가· 협의 등	문화재·지반조사 사항, 교통·환경 등 각종 평가 사항,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 조사·평가·협의 사항 기재
사업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 사업추진 방침 결정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 · '20.0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승인 · '20.0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 	
향후계획		

※ 행정절차, 건축기획업무, 각종 조사협의·평가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의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사업추진 경위는 일자별로 기술

2 사업계획

1. 사업부지 현황

사업부지 개요	부지위치	○○구(군) ○○동(읍·면) ○○번지 외 ○필지	
	부지면적	0,000㎡(실사용 대지면적 0,000㎡)	
	소유권	[] 국유지 [] 사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기타	
	비고	소유권 확보현황, 미확보 시 대책 등 기재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지구	○○지역, ○○구역	
	건축물 용도별 면적	용도	면적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제1종 근·생(소매점)	㎡
		⋮	⋮
검토결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조, [별표○]에 따라 계획 용도의 건축물 신축 가능		
기타사항	국토법을 제외한 타법령에 의한 조건·제한·예외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조건사항 미 확보 시 대책 등을 기재		

※ 사업대상 부지가 1필지 이상(또는 일부)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편입토지조서 작성·제출

(편입토지조서 예시)

연번	위 치	면적	소유자	소유권 확보	비고
1		0,000㎡	국(기재부)	X	소유권확보 협의 중
2		0,000㎡ 중 00㎡	사유지	X	'00.00. 매매계약 체결예정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기재

※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해당 고시문, 고시도면, 시행지침 등 검토 후 작성

(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등

2. 부지 특성

◦ 지역여건

구 분	특 성
도시계획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부지에 복합형 기관(OO연수원, OOOO진흥원) 조성 예정 • 부지남측(OO로-주출입구)에 신규 도시계획도로 신설 중
공공시설 현황 (공원·녹지·문화재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북측 국민체육센터 입지로 계획시설과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사업부지 동측 친수공간(OO나무숲, 잔디구장 등)으로 연결되는 육교 위치
공공(건축)사업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북측 약 50m 지점의 OO로 변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OO로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 중
인구·가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군은 전국에서 4번째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 [참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통계주제도_노령화지수] • 사업대상지 인근은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밀집지역으로 향후 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 타	민원사항, 수요(동향) 파악사항 등 기재

※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도시계획 현황, 공공시설(공원·녹지·문화재 등 포함)과 연계 가능성, 인구·가구 특성, 인근 공공(건축)사업 추진현황 등 대상 사업과 연관된 대상지 특성을 기술

◦ 접근성

구 분	현 황	대응방안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O측 Om 도로(OO로, O차선), • 부지 O측 Om 도로(OO로, 보행자전용)에 접함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OO.OO.)
접 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버스 정류장으로부터 Om 이내 부지 진·출입구 위치 • 보행로, 횡단보도 위치 등 검토 	셔틀버스 운영 예정 횡단보도 신설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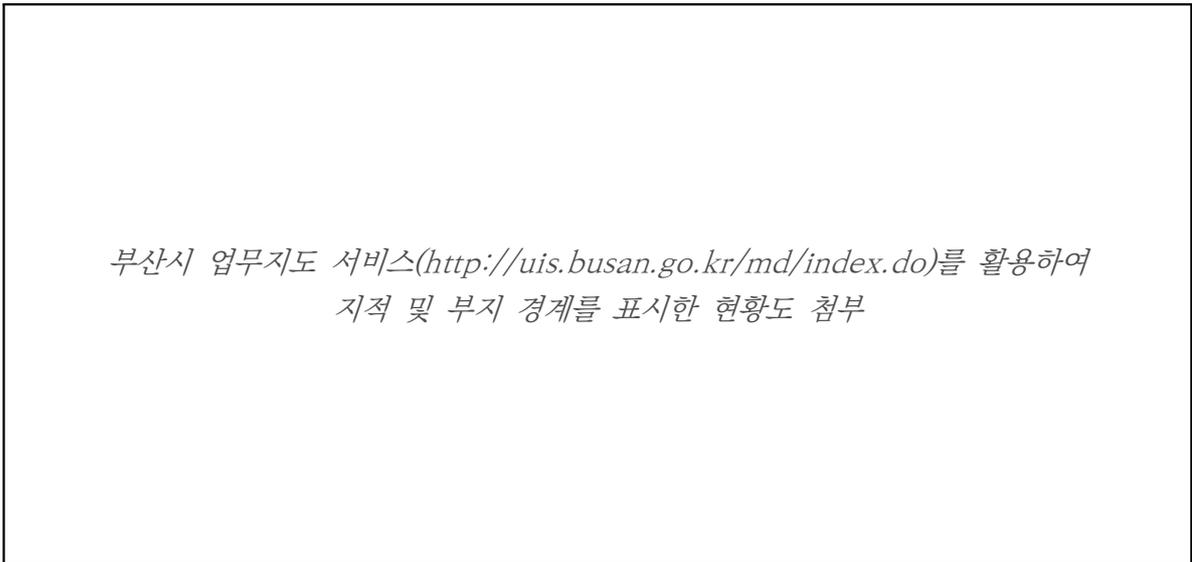
※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계획도로(개설시기)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근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기술

◦ 물리적 특성

구 분	특 성
부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조성, 지적정리(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필요성 등 검토 후 기재
경사·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특성조사의 고저구분 : 급경사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형상(표고차: 10~15m)을 하고 있으며, 부지 남동측 진입도로(+75)와 북쪽(+85)은 약 5m의 레벨 차이가 있음
지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지반,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 등 지반상태 기재 부지는 OO강변에 위치하여 지반은 대부분 연약지반이며, 지하 수위는 -2m 레벨에 분포하여 지하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됨
기 타	

※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고저구분 :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를 확인하여 기재

3. 부지 현황도



4. 건축규모

-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0,000m ²		용 도	업무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0,000m ²		건폐율	법정	00% 이하
				계획	00%
연면적	0,000m ² (용적률 산정 0,000m ²)		용적률	법정	000% 이하
				계획	000%
조경면적	법정	대지면적 00% 이상	공개공지 면적	법정	대지면적 00% 이상
	계획	0,000m ² (%)		계획	0,000m ² (%)
층 수	법정	지상 00층 이하	높 이	법정	00m이하
	계획	지상00층/지하0층		계획	00m

◦ 주차계획

구 분	내 용		
설치기준	업무시설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주차대수 산정 연면적	0,000㎡	용도별 주 차대수	업무시설 0,000㎡/100㎡=00대
			근·생 0,000㎡/100㎡=00대
주차대수, 주차장 규모	- 총 00대(법정 00대)/0,000㎡ • 지하 00대/0,000㎡ • 지상 00대/0,000㎡		

◦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 용도별

구분	세부시설	면 적 (㎡)	비 율 (%)	비 고 (산출근거 등)
업무시설	00실			1명 × 00㎡
	소계			
제1종 근·생	소계			
제2종 근·생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주차공간				00대 × 00㎡
합 계				

- 층 별

구분	층별	세부시설	면적(m ²)	비고	
지상층	1층				
		소계			
	2층				
		소계			
	3층				
		소계			
지상층 소계					
지하층	1층				
		소계			
	2층				
		소계			
지하층 소계					
합계					

5. 사업비용 산정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000.0	
	보상비		
	소 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000.0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전시공사비		
	소 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000.0	
	설계용역비	00. 0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관련	000.0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인증 비용
	평가 및 조사 관련	000.0	석면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기타>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소계			
D. 예비비			(A+B+C)의 00%
E. 총사업비		000. 0	A+B+C+D

- ※ 총사업비를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 구성내역에 대한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인증 관련 :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지능형건축물 등 각종 인증 비용을 책정
- ※ 평가 및 조사 관련 : 측량 및 지반조사, 석면조사, 정밀구조안전진단, 환경관련 평가, 교통관련 평가, 문화재관련 조사 등 각종 평가 및 조사 관련 비용을 책정
-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설계 경제성 검토(VE),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관련 등)은 <기타> 란에 줄을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기재한 후 작성

◦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만원/㎡)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산출근거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기타 예산편성 기준	특수요인 보정
000.0	000.0 (완공연도 '00~'00)	000.0 (000 예산편성 지침 / 000 매뉴얼)	0.0%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할증율 반영)

- ※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
- 공사비 검토 시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비교하고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 적용
-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할증율 또는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 설계비 검토 (단위 : 백만원)

설계비	산출근거				설계비 산정 공사비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인증관련 추가요율	특수요인 보정	
000.0	제[이]종 [이] 급	0.00%	0.0%	0.0% (전통양식설계)	000.0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을 기준으로 작성
- ※ 설계비 산정 시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요율을 기재하여 보정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원)

감리비	산출근거	
	감리방식	근거법령
000.0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건설사업관리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제2항 및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 감리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첨부

6.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 분		취득계획	추진근거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연면적이 3,000㎡ 이상이므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제로에너지건축물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000형 공기업 00시설 신축 건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연면적이 3,000㎡이상 신축 건물로 인증 의무 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0000가 신축하는 00시설로 인증 의무 대상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운영 예정

※ 인증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

7.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기 타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8. 향후 일정

구분	기간	세부일정
설계공모기간	'00.00.~'00.00 (00개월)	•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일반설계공모 기간 기준(132일 이상) 준용
설계기간	'00.00.~'00.00 (00 개월)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기본설계 0개월 • 실시설계 0 개월 • 설계경제성검토(VE) 0개월 •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0개월
공사기간	'00.00.~'00.00 (00 개월)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부지조성공사 0개월 • 공사기간 0 개월 • 시운전 0개월 • 개관목표 '00.00.

※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을 작성

9.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00청 00과
현황 및 계획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전문직렬(건축, 토목 등) 담당 <input type="checkbox"/>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input type="checkbox"/>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활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주민, 운영자, 00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공 후 시범운영 단계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기본계획안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외부전문가는 00분야 0명, 00분야 0명, 00분야 0명으로 구성 - 자문회의 월 0회 이상 개최, 운영비 000만원 확보 • 00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초기 기획업무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

※ 사업관리체계의 현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3 건축계획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동쪽의 자연경관(○○강 조망 가능)이 우수하므로, ○○동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유도 •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로)와 부지 계획고의 레벨 차이가 크므로 전면 도로에서 보행 접근이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자 등 ○○로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진입로 조성 필요 • 외부공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성 예정인 남측 ○○파크와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연결통로 조성과 편의시설 배치 등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
공공성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주변으로 ○○ 시설과 ○○ 관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가로경관과 방문객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보행 광장, 가로공원 등)를 확보
기타 특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 상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되,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층수, 배치, 동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제시

- ※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실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장은 최소 ○○석 이상 확보해야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 관람이 편한 창의적 좌석구조 및 동선으로 설계 •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설이므로 1층 로비에 외부인의 접견이 가능한 공간 마련 - ○○시설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야 함
공공성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접도된 북측과 서측 도로에 면한 저층부를 개방감 있게 조성하고 1층 공용공간에는 인접지역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고려
기타 특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여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

- ※ zoning, 동선계획,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주민 개방시설	외부조경 및 휴게공간과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 1층 홀·로비 개방 예정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input type="checkbox"/> 직접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탁운영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영주체	○○협동조합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콘텐츠 확보방안, 교류 협력계획 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기준

제정 2020. 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전검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토의 목적)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 품질,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및 품격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업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 사업계획”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획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합리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부산시 또는 구·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말한다.
3.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디자인관리”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건축의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공공건축의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공공건축의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공공건축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한다.
8.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대상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 대상은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5조(사전검토 제외 대상사업) 법 제22조의2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검토 신청서'라 한다) 및 [별첨 1]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및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제외대상 사업인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 사항이 있어 제10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서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별첨 1]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추진개요(사업개요, 예산현황, 절차이행 현황, 사업 추진경위, 향후계획)
2. 사업계획(사업부지 현황, 부지 특성, 부지현황도, 건축규모, 사업비,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설계용역 발주방식, 향후일정, 사업관리체계)
3. 건축계획(배치계획의 주안점,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② 사업계획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후 건축물의 입지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의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전검토의 철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보완자료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의견의 통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방법

제12조(자문위원단 구성·운영) 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영 제11조에 따르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받은 자문위원 업무를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 품위손상, 검토 대상사업 보안유지 위반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자문위원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계획 분야 외 도시계획, 시공, 토목, 구조, 설비, 조경 분야 등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검토 업무수행) ① 사전검토 접수 시 각 사업별 사전검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단 위원 중 순번제로 3인 이내로 선정하고, 해당 순번의 자문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검토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순번의 자문위원을 선정한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첨 2] 서식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당 분야에 대한 계획의 미비 사항,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전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전검토 업무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이하 '자문위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유지) ① 자문위원 등은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검토대상 사업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 등은 해당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제16조(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①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전에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청 시 영 제19조의4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첨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1. 신청인 개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부 처 명 :	자치단체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용 도	
주요내용 (요약)	1.사업의 내용,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및 특성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합니다.		
	2.발주방식 - 해당항목을 체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설계공모방식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협상에 의한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 공모방식 <input type="checkbox"/>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3.디자인관리방안 - 관련 주체 및 적용 단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합니다.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 및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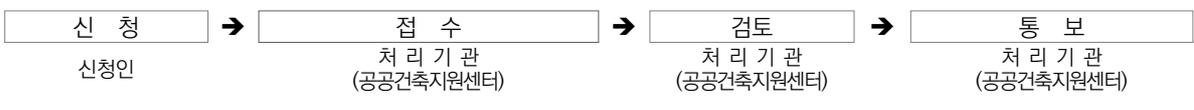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0000 사업 -
사업 계획서

0000. 00.

제출기관(부서)명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음영이 없는 부분(흰 바탕)에 해당 내용을 기재(편집·수정 가능)
2. 음영 부분()은 편집·수정하지 않음

구 분	현 황	대 응
경사·고저	음영이 없는 부분 (편집 가능)	
지반상태 (성토지반, 하천인접, 매립지·간척지 등)		
부지정리 완료여부		
기타		

음영부분
(편집불가)

3. 신청서 분량(페이지)은 편집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나, 용지 규격(A4), 여백, 글자크기는 기존 양식을 유지
4. '사업계획서'와 '첨부자료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
 - 첨부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1 사업추진 개요

1. 기본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 추진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위치	00구(군) 00동 00번지 외 0필지(부지면적 : 0,000㎡)
규모/용도	0개동, 지하0층/지상0층, 연면적 000㎡, 주용도
사업기간	(작성기준) 사업추진방침 확정일 ~ 공사 준공일

2. 예산현황

총 사업비	- 총 000,000백만원(국 000백만원, 시 000백만원, 구(군) 000백만원) · 설계 000백만원, 공사 000백만원, 감리 000백만원, 기타 000백만원 (기타 : 부지매입 000백만원, 기타부대비 000백만원)
확보현황	신청일 기준 예산(사업비) 확보 관련 현황·계획·대책 등 기술

3. 절차이행 및 추진계획

절차이행현황	건축기획	[] 공공기관 (직접수행) [] 기본구상·계획·타당성 용역 [] 법 제22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
	사전이행	[] 사업추진계획(방침) [] 사업추진 TF팀 구성 [] 총사업비 심의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총괄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조사·평가·협의 등	문화재·지반조사 사항, 교통·환경 등 각종 평가 사항,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 조사·평가·협의 사항 기재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 사업추진 방침 결정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 · '20.0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승인 · '20.0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00. :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
	향후계획	

※ 행정절차, 건축기획업무, 각종 조사협의·평가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의 수행 여부를 체크 하고, 사업추진 경위는 일자별로 기술

2 세부계획

1. 사업부지현황

가. 부지개요

부지 개요	부지위치	○○구(군) ○○동(읍·면) ○○번지 외 ○필지		
	부지면적	0,000㎡(실사용 대지면적 0,000㎡)		
	지역·지구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타법 :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소유권	[] 국유지	[] 사유지	[] 공유지
		[] 공기업	[] 민간	[] 기타
비고	•대지권 확보 상태, 확보 방안, 재산관리관(담당부서) 협의사항 등 (소유권 혼재 시 토지소유현황 자료 첨부)			
부지현황도				

※ 사업대상 부지가 1필지 이상(또는 일부)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편입토지조서 작성·제출

(편입토지조서 예시)

연번	위 치	면적	소유자	소유권 확보	비고
1		0,000㎡	국(기재부)	X	소유권확보 협의 중
2		0,000㎡ 중 00㎡	사유지	X	'00.00. 매매계약 체결예정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기재

※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해당 고시문, 고시도면, 시행지침 등 검토 후 작성

(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등

나. 부지특성

1) 입지여건

구 분	특 성
도시계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부지에 복합형 기관(〇〇연수원, 〇〇〇〇진흥원) 조성 예정 • 부지남측(〇〇로-주출입구)에 신규 도시계획도로 신설 중 • 사업부지 동측 친수공간(〇〇나무숲, 잔디구장 등)으로 연결되는 육교 위치
주변여건 (건축·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북측 약 50m 지점의 〇〇로 변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〇〇로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 중 • 부지 북측 국민체육센터 입지로 계획시설과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지역현안 (수요조사, 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〇〇군은 전국에서 4번째로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 [참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통계주제도_노령화지수] • 사업대상지 인근은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밀집지역으로 향후 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민원사항, 수요(동향) 파악사항 등 기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〇〇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 공장의 악취, 소음, 날림먼지 대책

※ 사업대상지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도시계획 및 대상 사업과 연관된 지역 특성을 기술

2) 물리적 특성

구 분	내 용			
대지조성	•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예정, 매입 예정			
	지반상태 (성토지반, 암반, 하천인접, 매립지 등)			
	<table border="1"> <tr> <td>예정(소요) 지하층수</td> <td>층</td> <td>[] 지반조사 완료</td> </tr> </table>	예정(소요) 지하층수	층	[] 지반조사 완료
예정(소요) 지하층수	층	[] 지반조사 완료		
경사·고저	•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형상(표고차: 10~15m)을 하고 있으며, 부지 남동측 진입도로(+75)와 북쪽(+85)은 약 5m의 레벨차이가 있음			
	<table border="1"> <tr> <td>구 분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td> <td>[] 현황측량 완료</td> </tr> </table>	구 분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 현황측량 완료	
구 분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 현황측량 완료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〇측 〇m 도로(〇〇로, 〇차선), •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〇〇.〇〇.)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보행 접근성, 진입도로 유무 등 • 진입도로 없음 → 도시계획도로 (〇〇.〇〇) 개설 예정 등 			
기 타	• 대응방안			

※ 급경사지, 암반, 매립지 등 지반상태에 따라 사업비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기획단계에서 현황측량·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계획도로(개설시기)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근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기술

2. 건축계획(규모)

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0,000m ²		소유권	소유권, 지적 정리 필요 등	
주용도	공공청사(0,000m ²)		세부도	노유자시설(0,000m ²), 근생(0,000m ²)	
건축면적	0,000m ²		건폐율	법정	00% 이하
				계획	00%
연 면 적	0,000m ² (용적률 산정 0,000m ²)		용적률	법정	000% 이하
				계획	000%
조경면적	법정	대지면적 00% 이상	공개공지 면적	법정	대지면적 00% 이상
	계획	0,000m ² (%)		계획	0,000m ² (%)
층 수	법정	지상 00층 이하	높 이	법정	00m이하
	계획	지상00층/지하0층		계획	00m
주차시설	설치 기준	업무시설 100m ² 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m ² 당 1대			
	법정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		
	주차장 규모				

2) 실별 규모(space program)와 산출근거

(1) 용도별

구분	세부시설	면적 (㎡)	비율 (%)	비고 (산출근거 등)
업무시설	00실			1명 × 00㎡
	소계			
제1종 근·생	소계			
	소계			
제2종 근·생	소계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주차공간				00대 × 00㎡
합 계				

(2) 층 별

구분	층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지상층	1층				
		소계			
		소계			
	2층				
		소계			
	3층				
소계					
지상층 소계					
지하층	1층				
		소계			
		소계			
	2층				
		소계			
	지하층 소계				
합계					

3. 배치 계획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동쪽의 자연경관(○○강 조망 가능)이 우수하므로, ○○동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유도 •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로)와 부지 계획고의 레벨 차이가 크므로 전면 도로에서 보행 접근이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자 등 ○○로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진입로 조성 필요 • 외부공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성 예정인 남측 ○○파크와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연결통로 조성 및 편의시설 배치 등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
공공성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주변으로 ○○ 시설과 ○○ 관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보행광장, 가로공원 등)를 확보 •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접도된 북측과 서측 도로에 면한 저층부를 개방감 있게 조성하고 1층 공용공간에는 인접지역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고려
기타 특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층수, 배치, 동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제시

※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을 기술

4. 공간 및 시설계획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실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장은 최소 ○○석 이상 확보해야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 관람이 편한 창의적 좌석구조 및 동선으로 설계 • 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시설이므로 1층 로비에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 마련 - ○○시설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야 함
실별계획 및 zo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실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장은 최소 ○○석 이상 확보해야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 관람이 편한 창의적 좌석구조 및 동선으로 설계
기타 특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여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

※ zoning, 동선계획,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을 기술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 분		취득계획	추진근거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연면적이 3,000㎡ 이상이므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제로에너지건축물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000형 공기업 00시설 신축 건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연면적이 3,000㎡이상 신축 건물로 인증 의무 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0000가 신축하는 00시설로 인증 의무 대상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연면적 10,000㎡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운영 예정

※ 인증 취득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

3 예 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000.0	
	보상비		
	소 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000.0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공사비 보정		
	소 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000.0	
	설계용역비	00.0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관련	000.0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인증 비용
	평가 및 조사 관련	000.0	석면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기타〉 설계 경제성 검토(VE) 및 설계의도 구현 관련		
	소계		
D. 예비비			(A+B+C)의 00%
E. 총사업비		000.0	A+B+C+D

※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인증 관련 :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지능형 건축물 등 각종 인증 비용을 책정

※ 평가 및 조사 관련 : 측량 및 지반조사, 석면조사, 정밀구조안전진단, 환경관련 평가, 교통관련 평가, 문화재관련 조사 등 각종 평가 및 조사 관련 비용을 책정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설계 경제성 검토(VE),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관련 등)은 〈기타〉란에 줄을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기재한 후 작성

2.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만원/㎡)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산출근거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	기타 예산편성 기준	공사비 보정
000.0	000.0 (완공연도 '00~'00)	000.0 (000 예산편성 지침 / 000 매뉴얼)	0.0%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할증을 반영)

- ※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작성
 - 공사비 검토 시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비교하고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 적용
-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할증을 또는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3. 설계비 검토 (단위 : 백만원)

설계비	산출근거				
	설계비 산정 공사비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인증관련 추가요율	특수요인 보정
000.0	000.0	제[이]종 [이] 급	0.00%	0.0%	0.0% (전통양식설계)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을 기준으로 작성
- ※ 설계비 산정 시 '공사비'라 함은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요율을 기재하여 보정

4.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원)

감리비	산출근거	
	감리방식	근거법령
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주감리 <input type="checkbox"/> 비상주감리 <input type="checkbox"/> 건설사업관리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제2항 및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 감리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 자료는 별도 첨부

5.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

구 분	계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사 업 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예산확보계획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사 및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단년 및 장기계속계약 검토자료는 별도 첨부

4 추진계획

1.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설계공모	<input type="checkbox"/> 2단계 설계공모	<input type="checkbox"/> 제안공모
	<input type="checkbox"/> 제한공모	<input type="checkbox"/> 지명공모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입찰 <input type="checkbox"/> 협상에 의한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2. 향후 일정

구 분	기 간	세부일정
설계공모기간	'00.00.~'00.00 (00개월)	•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일반설계공모 기간 기준(132일 이상) 준용
설계기간	'00.00.~'00.00 (00 개월)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기본설계 0개월 • 실시설계 0 개월 • 설계경제성검토(VE) 0개월 •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0개월
공사기간	'00.00.~'00.00 (00 개월)	• 발주 전 준비기간 0개월 • 부지조성공사 0개월 • 공사기간 0 개월 • 시운전 0개월 • 개관목표 '00.00.

※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을 작성

3.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00청 00과
현황 및 계획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전문지렬(건축, 토목 등) 담당 <input type="checkbox"/>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input type="checkbox"/> 총괄계획가(MP) 또는 전문가 등 활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주민, 운영자, 00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공 후 시범운영 단계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기본계획안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외부전문가는 00분야 0명, 00분야 0명, 00분야 0명으로 구성 - 자문회의 월 0회 이상 개최, 운영비 000만원 확보 • 00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초기 기획업무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

※ 사업관리체계의 현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 직접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탁운영 [] 기타()
운영주체	○○협동조합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컨텐츠 확보방안, 교류협력계획 등)	

5.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기대효과 등)

첨부자료 목록표

구 분		첨부자료 항목	첨부자료
1. 사업 추진개요	1. 사업개요, 예산현황, 절차이행 현황, 사업추진경위,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방침 보고서 - 총사업비 관리 관련 자료 - 투자심사자료 및 예산승인 자료 - 중기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자금운용계획 - 용역 보고서(타당성, 마스터플랜수립, 기본계획(구상) 등) - 전문가 자문 의견서 - 문화재 조사보고서 - 교통영향평가(교통성평가) 자료 - 환경영향평가(환경성평가) 자료 - 교육환경영향평가 자료 -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1.1 사업추진 방침 보고서(필수) 1.2 투자심사의뢰서(필수) 1.3 타당성조사 보고서 1.4 기본계획 보고서(필수) 1.5 마스터플랜 보고서
2. 사업계획	1. 사업부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확인서(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 고시도면 -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시행지침, 고시도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결정도면 -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건축행위 허용기준) - 편입토지조서 - 건축물 대장(부지 내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2.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필수) 2.1.2 지구단위계획 고시문(해당시 필수) 2.1.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해당시 필수) 2.1.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해당시 필수)
2. 사업계획	2. 부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인근을 포함한 수치지형도(CAD파일) - 사업대상지 인근 문화재 분포 현황도 (문화재보존관리지도(http://gis-heritage.go.kr/re) 참조) - 사업부지 인근 공공(건축)사업 추진 관련 자료 - 사업부지, 접근로, 인근 공공시설 등 현황사진 - 지질조사 및 지반조사보고서 - 토지특성조사표 - 설문조사, 언론기사 등 지역여건 관련 자료 	2.2.1 수치지형도 2.2.2 문화재보존관리지도(해당시 필수) 2.2.4 사업부지 인근 사업추진 현황(해당시 필수) 2.2.5. 현황사진(필수) 2.2.6. 토지특성조사표
	3.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 자료(시설 설치기준, 유사사례 분석, 수요조사 자료) 	2.3.1 면적산출근거자료(설치기준, 필수)
	4.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산출근거(조달청 공사비 분석 자료, 예산편성 기준자료) - 설계비 산출자료 - 감리비 산출자료 - 부대비 산출자료 	2.4.1 조달청 공사비 분석 자료(필수) 2.4.2 20**년 시설예산 기준단가(필수) 2.4.3. 설계비 산출내역서(필수) 2.4.4. 감리비 산출내역서(필수)
	5. 설계 발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계획 보고서 	2.5.1 발주계획 보고서 2.5.2. 발주계획 검토자료
	6.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례 조사 등 일정검토 자료 	2.6.1 사업 일정계획 검토서
	7. 사업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팀, 자문위원회 등 추진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7.1 TF팀 운영계획
	3. 건축계획 (배치계획·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시설운영·활용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지침서 - 과업지시서 	3.1. 설계(공모)지침서 3.2. 과업지시서

※ 첨부자료는 사전검토 신청 시 완비하여 제출하며, 첨부 자료가 누락 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요청할 수 있음

[별첨 2] 사전검토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서 (자문위원 작성용)

○ : 적정, √ : 보완필요, △ : 참고, × : 의견없음(또는 해당없음)

검토항목	검토의견	
① 사업개요		
사 업 목 적		•
절 차 이 행 현 황		•
② 입지여건(사업부지 적합성)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 위 제 한		문화재, 도시계획시설, 각종영향평가 포함 검토사항
시 설 수 요 등		•
접 근 성		•
물 리 적 특 성		•
③ 건축계획		
법령 및 관련기준 적 합 성		•
층수 및 연면적 등		•
공 간 계 획	설계의 주안점	•
	건축물 배치	•
	내·외부 동선	•
	외 부 공 간	•
	조 닝(zoning)	•
	실 별 규 모	•
	공용면적비율	•
	주 차 계 획	•

○ : 적정, ∨ : 보완필요, △ : 참고, × : 의견없음(또는 해당없음)

검토항목		검토의견	
	공공성 확보		•
	기타 특수조건		•
건축물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지능형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기타패시브계획 등 검토사항

4] 사업비 ▶ 사업비검토서 참조

대지비			•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
	기존시설철거비		•
	건축공사비		•
설계비	설계공모비		•
	용역비	비용산정	•
		설계대가기준	•
		추가요율 (BIM 등)	•
부대비	감리·건설사업관리		•
	인증관련		예비인증, 본인증, 수수료 등
	평가 및 조사관련 (측량·지반조사비 등)		•
	기타부대비		•
	기타 검토사항		설계의도구현, 설계경제성검토, 설계적정성검토, BEMS 등
재원조달(예산확보방안)			

5] 사업기간 산정

설계공모기간		•
설계기간		•

○ : 적정, V : 보완필요, △ : 참고, × : 의견없음(또는 해당없음)

검토항목	검토의견
공 사 기 간	•
㉞ 사업관리	
발주방식 적정성	•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
시설운영·활용계획	•
㉟ 기타사항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기대 효과 등)	•
검 토 결 과 총 평	

상기와 같이 00000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토자 : (서명)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중

[별첨 3] 보안각서 서식

보안각서

○ 대상사업명 :

○ 해당분야 :

본인은 상기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수행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보안 사항 위반에 따른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하



2020. 00.

『00000 0000 건립』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견본)
[일반 설계공모]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257
2. 설계공모 운영	258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263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266
5. 계약에 관한 사항	271
6. 기타 사항	272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274
2. 기본 설계지침	278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282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0000 0000 건립』일반 설계공모

1.2. 설계공모의 목적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분야 국가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자산(인력, 장비, 기술 등)과 산업체를 접목하고, 전문 인력을 한 곳에 집적시켜 기업 글로벌 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해양신산업 창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0000 0000 건립』을 위함.

1.3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0000 0000 건립	
위 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연면적합계		± 5% 범위 내 조정가능
총 수		총수 조정가능
주 용 도		
총예정사업비	백만원	
예정공사비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천원	(각종 예비인증비,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일반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조직

- 1) 설계공모 주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총괄건축기획과)
(담당자 000: 051-888-0000, E-Mail: park0830@korea.kr)
- 2) 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설계공모 운영, 질의응답 자문,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등 설계공모 전 과정을 운영한다.
- 3)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공모안을 분석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2.3 설계공모 홈페이지

-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san.go.kr/compe/notice> (공지사항 페이지)
- 2) 홈페이지 이용 : 설계공모 참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참가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전달방식을 정한 사항 외에는 메일로 전달한다.

2.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가 등록	2020.00.00.() 10:00~17:00	접수처 : 총괄건축기획과(시청 18층) 접수방법 : 인편으로만 접수 (온라인 및 우편등록 불가)
설명회 개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미개최
질의접수	2020.00.00.() 09:00~17:00	질의서 양식에 의한 E-mail 서면질의 (1사 1회)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질의회신	2020.00.00.() 18: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 발송
작품제출	2020.00.00.() 10:00~17:00	접수처 : 총괄건축기획과(시청 18층) 인편제출(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기술검토	2020.00.00.() ~ 00.00.()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사항 검토
1차 심사	2020.00.00.() 14:00 ※ 2차 심사 대상자 통지 2020.00.00.() 22:00까지	장소 : 부산시청 12층 회의실 설계설명서 심사(비공개) 6작품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PT심사 대상 5개 이내 작품선정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우선 통지
2차 심사 (1차심사 선정작품)	2020.00.00.() 14:00	장소 : 부산시청 12층 회의실 PT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0.00.00.()	설계공모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작품반환	2020.00.00.()	총괄건축기획과 사무실(시청 18층)
시상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compe/notice>

※ 응모작품이 5개 이내일 경우 1차 공모심사 대상 선정 없이 2차 작품심사

※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참가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메일로 전달한다.

2.5 언어 및 계량단위

1)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영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참가등록

1) 응모자격

- (1)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 날짜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 (2)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3)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관련 건축사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외국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 국가간 상호 FTA 양허기준에 의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상업적 주재)만이 국내에서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당선 시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5) 심사위원·운영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련 있는 관계자는 응모 및 계약 할 수 없다.

(6) 유의사항

가.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경우,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야 하며(공동응모자 포함),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기피·회피하여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귀속 외, 사업지연에 따른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 응모 신청서 등록 이후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당선된 후 계약은 공동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참가등록 일시: 2020.00.00.() 10:00~17:00까지
- 3) 참가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해야하고, 온라인과 우편, 팩스접수는 불가.
(담당자 000: 051-888-0000, E-Mail: park0830@korea.kr)
- 4) 참가등록 장소 : 부산광역시청 18층 총괄건축기획과
- 5) 구비서류
 - (1) 참가등록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2)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3)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미등록 하였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
 -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경우) 각 1부(미등록 하였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
 - (5) 서약서 1부(서식 제2호)
 - (6)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제3호)
 - (7)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 (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제1-1호)
 - (9) 공동응모 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서식 제4호)
 - (10)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 동일회사 복수인원 참가시에 한함) 1부(서식 제5호)
 - (11)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서식 제8호)
 - (12)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9호)
 - (13) 보안각서 1부(서식 제10호)
 - (14) 청렴서약서 1부(서식 제12호)
 -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발주기관에서 직접 확인)
- 6) 참가등록 자격제한: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 7) 유의사항
 - (1) 공동 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한다.
 - (2) 사본 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3)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가 날인해야 한다.

- (4)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2.7 설명회 개최

- 1) 일시 / 장소: 미개최
- 2) 미개최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 질의접수 및 응답 기간을 통하여 서면으로 질의 바랍니다.

2.8 질의 접수 및 응답

- 1) 질의기간: 2020.00.00.() 09:00~17:00까지(해당기한 내 등록에 한함)
- 2) 회신기간: 2020.00.00.() 18:00까지(설계공모 홈페이지 일괄게재 및 메일 발송)
※ 질의에 대한 답변(회신)은 본 설계공모규정 및 설계지침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 3) 질의방법: 서면질의서(서식 제6호)를 E-mail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등록업체별 1회에 한해 질의할 수 있다. 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전화)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담당자 박문교: 051-888-4272, E-mail: park0830@korea.kr)

2.9 작품제출 및 방법

- 1) 제출기한(해당기한 내 접수 및 도착분에 한함) : 2020.00.00.() 10:00 ~ 17:00까지
- 2) 장소 :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기획과(시청 18층)
- 3) 작품 제출방법
 -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접수증을 지참,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 (2)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서류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 (4) 참가자는 본인이 선택한 고유번호(Pin)를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하며, 고유번호(Pin)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등)도 할 수 없다. (단, 설계설명서 1부 표지만 고유번호(pin)를 표기하고 나머지 14부의 표지는 고유번호(pin)를 표기하지 않는다.)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격(mm)	수 량	비 고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A4(210×297)	1식	참가등록 시 교부
응모작품 제출서	A4(210×297)	1식	[서식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210×297)	1식	[서식2-2]
설계설명서	A3(420×297)	15부	쪽 이내 (별첨 8 참조)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A4(210×297)	1식	[서식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A4(210×297)	1식	[서식13]
USB	-	1식	설계설명서 파일 포함 (PDF 형식으로 포함)

※ 모형은 제출하지 않음, 조감도나 투시도는 설계설명서의 내용물로 제출가능

※ 2차심사(공개 프리젠테이션)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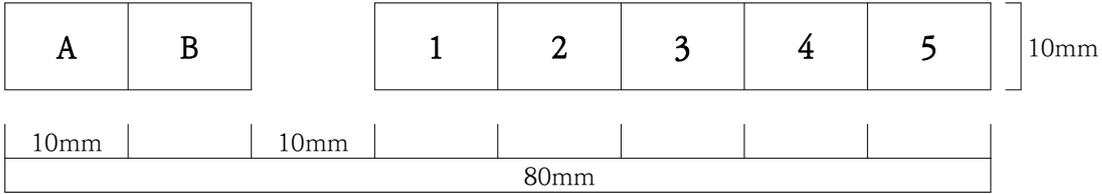
3.2 작성요령

1)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2)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제출물의 표지에는 고유번호(Pin)를 기입한다.
(단, 제출하는 총15부의 설계설명서에 한하여 1부의 표지에만 고유번호(pin)를 표기하고, 나머지 14부의 표지에는 고유번호(pin)를 표기하지 않는다.)
- (3)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2) 고유번호(Pin)

- (1) 고유번호(pin)는 참가자가 제출하는 설계설명서 15부 중 1부, USB 겉면에만 기재한다.
- (2) 참가자가 임의의 알파벳 2자(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제외)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하여 기재한다.
- (3) 고유번호(Pin)는 아래와 같이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바탕체(13p)로 한다. 단, USB에는 겉면 크기에 맞게 글씨크기 등 조정가능



〈고유번호 양식 : 예시〉

- (4) 고유번호는 다른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포함할 수 없다.
- (5) 고유번호 박스는 제출도서 좌측하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출도서 좌측하단 끝에서 위로 20mm, 우측으로 20mm 지점부터 배치(일치)시킨다.
- (6) 모든 제출도서의 고유번호는 위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3) 설계설명서

- (1) A3(420mm×297mm)크기의 백상지(120g/m²이하)에 가로로 작성하며, 칼라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불가)
- (2) 인쇄방법은 전산출력으로 하되 단면으로 인쇄하여 가로 좌철 한다. 제출도서 제본은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 (3) 전체 매수는 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로 작성하여 총 15부를 제출한다.
- (4)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3컷 이내**,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2면 이상, 단면도 2면 이상, 기타 사항(p.20 2.3.1) (2),(3),(4),(5)에 관한 사항) 1면 이상
- (5)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 (6) 설계설명서의 글자체, 글자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차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 (7) 설계설명서는 별첨 설계설명서 서식에 따른다.
- (8)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9)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참고사례 1〉

자료제공: 이한건축사사무소



〈참고사례 2〉

자료제공: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도 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시 평면도(또는 key plan)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하며, 기준1 범위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4) USB

- (1) 설계설명서(도면포함) 파일은 PDF파일 형식(1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 (2) 설계설명서의 파일명은 고유번호(pin)로 한다.(예 : AB123456.pdf)
- (3) 설계설명서 파일은 출력인쇄하여 제출한 설계설명서와 동일해야 한다.
- (4) 파일 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300dpi 이상, A3 size)

5) 주의사항

- (1)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할 수 있다.
- (2) 설계설명서의 규격·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1)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참가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기술검토 사항

구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규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여부			-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여부			
	예정공사비 초과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업체에 메일이나 유선 또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분야	성명(소속, 직위)
심사위원(5)	위원장: 위 원:
예비심사위원(1)	

2) 심사위원장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1) 심사 개시 전 기술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 (2)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청을 위한 조연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4.3 심사기준

- 1)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현장답사와 설계작품의 도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 (1) 1차: 2020.00.00.() 14:00~ (장소: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서면 심사(비공개)]
 - ① 심사위원은 기술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 ②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2) 2차: 2020.00.00.() 14:00~ (장소: 부산시청 12층 회의실)
공개 프리젠테이션(PT) 심사(발표자만 참석 가능)
 - ① 심사위원은 발표자와 프리젠테이션에 관해 질의응답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각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투표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3)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 (4)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심사 대상작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 작품설명(2차)
 - (1) 작품설명은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공개 발표로 진행한다.

(2)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 ①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에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② 발표자는 심사당일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하거나 재직기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 ③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작품설명 등 심사과정은 SNS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 발표자 및 심사 관계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실격 고려 항목

(1) 실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 ①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②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③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④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건축계획에서 과제 누락, 법규위반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 ⑤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 ⑥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4) 처벌조항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4 입상작의 종류와 시상내용

1) 입상작

(1) 입상작은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2)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① 4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② 3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③ 2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④ 1인인 경우 :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 보상비 예산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 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1)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청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1) 당선이후 조건

- (1) 당선자는 발주청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발주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 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급되어진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 (3)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위 실격고려 항목의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4)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저작권 및 출판 전시

- (1) 참가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 (2) 참가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참가작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1)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2)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발주청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4) 공모운영은 설계공모운영위원회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시 총괄건축기획과에서 하며, 공모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준공(과업지시서 포함) 등은 부산시 건설본부(또는 관련기관)에서 진행한다.
-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 1) 계약의 당사자(외국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의 경우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는 계약당시 건축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건축사로서 계약일 이전까지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당사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자격(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록자, 정보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기술사사무소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분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을 영위하는 자와 각각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또는 설계업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되어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1)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2)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 1)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대가는 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2) 입상작 이외의 제출도서의 반환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참가자가 반출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 3)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처가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이러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3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1)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2) 당선작에서 4.3 심사기준 3)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4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 1)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 2) 계약 후, 발주처의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6.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1) 작품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 2)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시상 전 : 입상결정 취소
 -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6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1) 위 치:

-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2) 사업규모

(1) 대지면적: m²

(2) 건축예정 규모 및 용도

(가)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0,500m²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수는 조정가능하며, 총 연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주용도 :

(3) 예정공사비: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 계 비: 천원(부가가치세, 손해 보험료, 각종 예비인증비 포함)

※ 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치도

1.1 사업추진배경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동삼혁신지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해양관련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양수산 R&D 혁신지구 형성을 위해 0000 0000 건립을 추진

1.2 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부지 현황도

1.3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 시설 연면적: m²[순면적: m², 공용면적: m²(면적비율 %)]

구분	실명	수용 인원	단위면적 (A)	실수 (B)	면적 (AxB)
산 학 연 입주영역	사무실			1	1,116.00
	CO-WORKING Lounge	60	720.00	1	720.00
	회의실 (소)	4	18.00	4	72.00
	회의실 (중)	8	36.00	4	144.00
	회의실 (대)	16	90.00	1	90.00
	세미나실(IR실)	적정인원	216.00	1	216.00
	교육실		72.00	1	72.00
	마케팅 지원실		36.00	1	36.00
	소 계				
시제품 제작 영역	3D프린터실		90.00	1	90.00
	Machine실		90.00	1	90.00
	Maker Space		126.00	1	126.00
	VR실		36.00	1	36.00
	사진인화실		18.00	1	18.00
	녹음실		18.00	1	18.00
	관리실	2	18.00	1	18.00
	창 고		12.00	1	12.00
	소 계				
연구개발 영역	연구개발 1실		684.00	1	684.00
	연구개발 2실		540.00	1	540.00
	연구개발 3실		288.00	1	288.00
	기자재 창고		216.00	1	216.00
	시제품보관창고		360.00	1	360.00
	소 계				

구분	실명	수용 인원	단위면적 (A)	실수 (B)	면적 (AxB)
관리 편의시설 영역	체력단련		90.00	1	90.00
	샤워/탈의		36.00	1	36.00
	게스트룸		42.00	1	42.00
	무인우편·택배 보관실		18.00	1	18.00
	기계/전기실		420.00	1	420.00
	경비실/안내데스크		18.00	1	18.00
	소 계				
산학연 관리운영 영역	단체장실	1	36.00	1	36.00
	사무실	10	126.00	1	126.00
	ACCELERATOR 사무실		36.00	1	36.00
	회의실		18.00	1	18.00
	창고		18.00	1	18.00
	휴게실		18.00	1	18.00
	소 계				
공용영역	주 차 장		1,930.00	-	1,930.00
	복도,계단,화장실		2,732.00	-	2,732.00
	소 계				
총 합계					

- 건축물의 층수는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부지여건 및 구조, 경제, 기능, 확장성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제안하며, 각 건물별로 적절한 기초 및 구조방식을 제시할 것.
-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을 하며,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용된 규모범위(연면적의 $\pm 5\%$)와 예정 공사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편의시설 등)이 가능하다.

2. 기본 설계지침

2.1 설계 개념

- 1) 해양신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동삼혁신지구 내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간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추진체계와 공간 조성
- 2)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클러스터의 선도적인 앵커시설인 0000 0000 건립 필요

2.2 기본방향

- 1) 0000 0000가 동삼혁신지구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디자인을 갖도록 계획한다.
- 2) 기 조성된 인근의 건축물 및 조성 예정인 문화공원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3) 0000 0000는 해양신산업 창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로서 시설, 장비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교육 등 소프트웨어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시설계획이 되어야 한다.
- 4) 운영계획의 유동적인 측면과 공간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계획의 유연성, 확장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5) 건축연면적은 제시한 면적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6) '동삼혁신지구' 전체 단지에 대한 기존의 단지계획을 재검토한 후 배치 및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2.3 설계지침일반

- 1) 일반사항
 - (1) 모든 설계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 기준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별표2] 2020년 기준 30% 이상이고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1++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패시브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배치 및 동선계획

- (1) 시설의 배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한다.
- (2) 시설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 (3) 장래 해양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공간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설의 증축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한다.
- (4) 각 시설의 배치는 운영자 및 일반 방문객들의 동선과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한다.
- (5) 인근 공공건축물, 문화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외부공간(옥외 휴게공간, 조경, 지상주차장 등)을 계획하도록 한다.
- (6)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7) 주차면은 법정 주차대수의 1.5배 이상을 계획하도록 한다.
- (8)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은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9) 화물차량 동선은 일반차량(직원, 방문객) 동선과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10) 장비 반출입, 유지관리, 서비스 및 하역을 위한 별도의 동선을 계획하도록 한다.
- (11)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하도록 한다.
- (12) 현재 계획대지의 지장물 및 수목들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본 건립사업으로 인한 '동삼혁신지구'의 토지이용 및 동선 계획에 대한 변경을 전제로 하여 배치 및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평면계획

- (1) 각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2)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계획의 유연성과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듈계획을 하도록 한다.
- (3) 지상 1층에서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은, 다양한 지역주민이 별다른 출입절차 없이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주민개방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4) 방문객 및 근무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휴게공간을 각층의 중앙 혹은 단부 및 로비, 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5)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입면계획

- (1) 입면 위주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를 지양하도록 한다.
- (2) 건물의 외관은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입면계획으로 공사품질,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도록 한다.
- (3)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심미성을 반영하며 현대적 감각의 미관처리 및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 (4)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입면 및 매스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5)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에너지절약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입면 마감의 색상과 재질에 어울리는 창호색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 (6) 해안가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염해 및 해풍에 유리한 마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 (7) 에너지효율을 위하여 커튼월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5) 단면계획

- (1)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운영·관리·업무 등에 있어서는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 (2)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높이와 폭을 산정 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3)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2.4 세부설계지침

1) 산학연 입주영역

- (1) 사무실은 해양관련 스타트업, 중소·중견 기업, 연구소 기업 등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향후 입주 기업의 수에 따라 분리·결합 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2) Co-Working Lounge는 업무, 회의, 홍보, 전시, 세미나, 카페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공간으로 사무실과 연계하여 계획해야 하며 시설 이용 증대를 위해 1층에 설치하여 외부에서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3) 세미나실은 적정인원(216㎡)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홍보활동에 필요한 이벤트 행사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옥상정원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시제품 제작영역

- (1)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기 교육 공간 및 Maker Space를 조성하여 기업에서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산학연 입주영역의 사무실 및 연구개발 영역과 인접하여야 하며 시제품 반입 등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한다.
- (2) Machine실을 비롯한 3D프린터실 등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소음 및 공기오염 처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연구개발 영역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 및 기술성과를 이전 받을 수 있고, 공동연구,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수산기자재, 수산관련서비스, 기타(무인자율이동체, 해양방위기술, 해양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해양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어떤 업종이 입주하더라도 활용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3) 연구개발1실은 크레인(3Ton)의 설치를 고려하고 9M 이상의 층고를 계획하도록 한다.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1) 서식

- (1) 참가등록신청서(서식 제1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제1-1호)
- (2) 서약서(서식 제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2-2호)
-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제3호)
- (4)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제4호)
- (5) 대표건축사 선임계(서식 제5호)
- (6) 질의서(서식 제6호)
- (7)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제7호)
-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8호)
- (9) 사용인감계 신고서(서식 제9호) ※ 인감(법인) 증명서 포함
- (10) 보안각서 1부(서식 제10호)
- (11)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서식 제11호)
- (12) 청렴서약서(서식 제12호)
-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제13호)

2) 별도 제공자료

- (1) 동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2) 타당성 용역 보고서
- (3) 지반조사 용역 보고서
- (4) 대상지 현황 사진
- (5) 설계설명서 서식자료

[서식 1] 참가등록신청서

참가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휴대전화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or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or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0000 0000건립」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 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첨부 : 설계공모 참가등록 관련 제출서식 각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는 반드시 첨부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 (대표자)</p> <p>부산광역시장 귀하</p>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확인 후 신청 가능함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0.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p>상기인을 당 업체(개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응모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p> <p style="text-align: right;">업체명 : 대표자 : (인)</p> <p>부산광역시장 귀하</p>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p>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p> <p style="text-align: right;">업체명 : 대표자 : (인)</p>			

-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or 위임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위임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개인의 경우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재직기간 등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 or 건축사 구성원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00 000 건립’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 . .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부산광역시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
 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6] 질의서

- 0000 0000 건립 -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

- 응 모 자 성 명 : (인)
- 사무소(법인)명칭 :
- 사무소(법인)주소 :
- 전화번호 (FAX)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7]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응 모 작 품 제 출 서

접수번호		※심사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p>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에 공모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p> <p>붙임. 1. 2.</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인)</p> <p>부산광역시장 귀하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p>			

-----①----- 절 취 선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고유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서식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0.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9] 사용인감계 신고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부산광역시(총괄건축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0]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의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 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것 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 켜올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0년 월 일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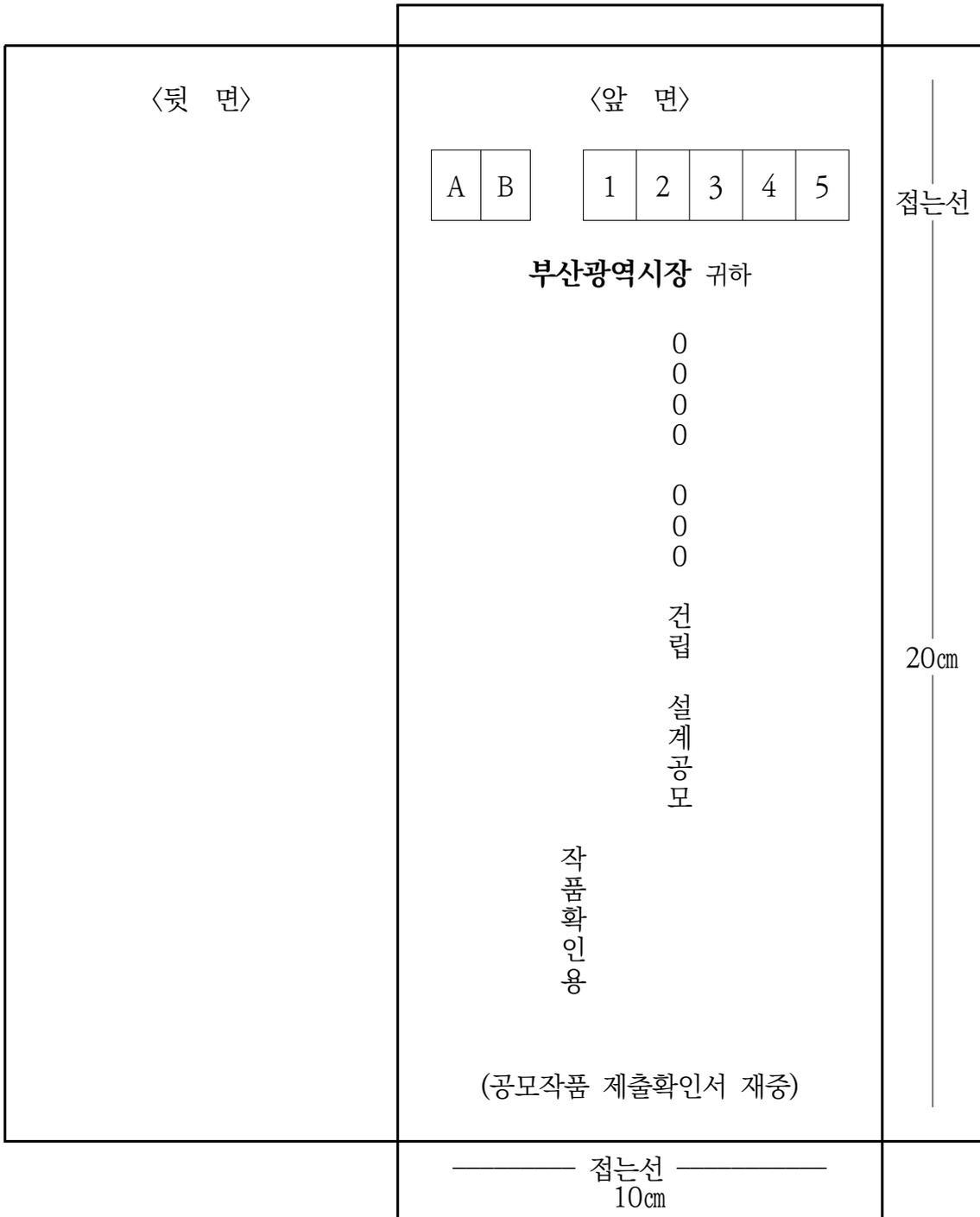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작성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1]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서식 12] 청렴서약서

청 렬 서 약 서

□ 공모명 :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0000 000 건립』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0. . .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 기파·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파·회피 신청서

 사업명 : 0000 0000 건립 설계공모

 기파·회피 위원

성명	소속	기파·회피 사유

2020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